

연구보고 2012-04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

- 보육유형, 보육교직원, 보육비용을 중심으로

권미경 도남희 황성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OECD는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사업’을 통해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이 영유아의 발달은 물론 부모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질 높은 영유아 대상 서비스의 제공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영유아 대상 서비스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OECD 회원국의 최근 노력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사의 확보, 보육비용의 공적 확대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OECD 회원국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한 보육시설의 확충하고 다양한 요구를 지닌 보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한다. 둘째, 보육을 담당하는 성인의 자질과 능력이 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OECD 회원국은 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차세대 구성원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은 영유아 대상 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 현황을 고찰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이용, 보육교직원 자격과 관리와 보육비용 지원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정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OECD 회원국 전반의 자료를 나열하기보다는 주제별로 우수한 보육정책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국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그 보육정책 현황과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현 단계를 OECD 회원국과 비교 점검하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12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요 약

1. 서론

-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육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음.
-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육 정책 분야별로 성과를 거둔 국가를 선별하여 고찰함.
 - OECD 회원국 전반의 경향과 우리나라, 호주, 일본, 스웨덴을 중심으로 보육 서비스 시설의 유형과 이용에 대해 파악함.
 - OECD 회원국 전반의 경향과 우리나라, 영국과 핀란드를 중심으로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양성과 보수교육, 근무여건에 대해 검토함.
 - OECD 회원국 전반의 경향과 우리나라,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보육비용의 지원 유형과 현황에 대해 검토함.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문헌 및 자료, OECD 보육·유아교육관련 통계자료 및 보고서, 보건복지부 보육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정리 분석함.
 - 온라인에서 사례 국가의 보육 주무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하였음.

2.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이용

가. OECD 회원국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 유형은 기관보육, 가정 보육, 취학전 프리스쿨

의 세 가지로 구분됨.

-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 행정전달체계는 연령별 이원체제, 통합 일원화 체계, 중복 평행체제의 세 가지로 구분됨.
- OECD 회원국의 0~2세 아동은 기관보육, 부모협동 보육, 가정 보육 등의 공식보육과 비공식 보육모두 이용 가능함. 3~5세의 경우 데이케어 센터, 프리스쿨 프로그램 또는 초등학교 등록 가능함. OECD 국가 반 이상의(80%)가 프리스쿨에 등록함. 0~2세의 평균 등록률은 30%이고, 3~5세의 평균 등록률은 77%로 나타남.
- OECD 국가들은 지난 2년간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제공함.
 - 질에 대한 목표 규정, 교육과정과 학습기준 개발, 교사 자격기준, 교육 및 근무여건 개선,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 자료수집, 연구 및 모니터링

나.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유형은 기관보육, 가정보육, 학령 전 학교(유치원, 프리스쿨)로 나뉘며, 공급주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등으로 구분되어짐.
-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행정전달체계는 중복 평행체계로서 3세 이상의 유아의 교육은 교육부, 0~6세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함.
- 국공립 어린이집 5.3%, 법인 어린이집 3.7%,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은 35.5%, 가정어린이집이 52.0%로 공공성을 가지는 어린이집의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9.0%)이며, 보육 이용 아동수를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9.7%, 법인 및 법인 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2.6%, 민간 어린이집은 가정 어린이집과 함께 75.6%임.
-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는 법적 규정, 보육과정, 지도와 점검, 평가 등을 통한 질 관리가 되고 있음.

다. 호주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 2000년대 이후는 영유아들에게 최고의 출발이 가능하도록 건강, 돌봄과 가족지원 등 한 단계 나은 서비스 제공함.
 - 조기학습체계 초안 검토와 시행, 확정, 국가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원주민과 소외지역에 교육 지원, 국가적 품질 표준체계 완성하여 적용 시작함.
- 교육과 보육이 일원화된 체계로서 교육·고용·노사관계부처가 그 전의 두 부처의 역할을 조직개편으로 조정함.
- 종일제 보육, 가정 보육, 방과 후 보육, 일시 보육, 가정 내 보육 등임.
-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비공식 보육은 감소하고 공식보육이 증가하는 추세임.
- 국가인증 위원회를 통해 종일제 보육, 가정 보육, 방과 후 보육을 관리해 오던 보육품질 보장 체계가 국가품질 체계로 대체됨.
 - 국가적 품질 체계는 안내 지침, 질 영역, 표준과 요소로 구성됨.

라. 일본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엔젤 플랜을 통해 개선을 시도함. 신엔젤 플랜은 소자녀화 대책의 구체적인 실시 계획임.
- 평행 이원화된 체계로서 유치원은 교육성이, 보육소는 후생노동성이 관장함.
- 인가보육시설과 인가 외 보육시설로 구분되며, 인가보육시설 중 공영보육 시설 감소하는 추세, 민영 보육시설은 증가추세임. 공영보육시설은 81.9%가 시정촌에서 설치 운영하고 민영보육시설은 89.6%가 사회복지 법인에 의해 운영함.
-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영아 24.0%, 유아 42.4%로 조금씩 보육소 이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임. 대기 아동 수도 증가함.
- 일본 보육소 최저기준으로 전국에서 동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함. 2년에 1회 이상 법적 규정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여 지도·점검함. 보육소 보육지침을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여 자기평가, 기관자체평가, 제 3자 평가를 실시함.

마. 스웨덴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 공보육을 통한 가장 진보적인 제도를 발전시켜옴.
 - 출산율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양성 평등, 아동의 지위
- 보육서비스의 유형은 기관보육과 가정보육으로 두 가지로 나뉘고, 연령과 내용구분에 따라 피르스콜라라 불리는 유아학교, 개방형 유아학교, 초등학교를 위한 레저타임센터, 개방형 레저타임센터로 구분됨.
- 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취학전 교육과정을 초·중등학교들의 교육수준과 연계하게 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바. 요약 및 시사점

-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새롭게 제기되는 보육수요자의 욕구와 질적인 향상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야함.

3. 보육교직원의 자격과 관리

가. OECD 회원국 보육교직원 자격과 관리

- OECD 회원국의 영유아 대상 서비스 교직원의 유형을 보육교사, 유아교사, 가정보육사, 전문교육사, 보조교사 등으로 대략 다섯 가지로 구분함.
- OECD 회원국의 영유아 대상서비스 교직원의 자격기준으로는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3~5수준을 요구함.
- 자격취득의 준비교육인 양성교육은 자격기준과 밀접한 관련을 지녀, 자격기준에 따라 교육연한과 시간, 그 운용 방법에 차이를 보임.
- OECD 회원국들은 직접적으로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보수

교육 이수 시 생기는 보수의 손실분만큼을 보상하거나, 더 상위 자격을 얻을 기회부여, 이수 참여위한 시간 제공, 급여를 인상함.

-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교사의 근무환경을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OECD의 회원국들은 연령별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음.
- 문화 이해와 다문화 가정 부모와의 의사소통, 영유아를 위한 다문화 배려 등에 대한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 교사의 노력이 필요함.
-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교사의 평균연령이 증가하는 추세로 가정보육을 중심으로 한 보육교직원의 연령이 유치원의 교사 보다 더 높은 경향임. 유아교육과 보육교사의 여성편향성이 심각함.

나. 우리나라 보육교직원 자격과 관리

- 보육교사의 자격 부여가 학점 이수를 기준으로 하여, 대학교와 대학의 관련학과 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육교사가 배출됨. 어린이집 원장과 1급 교사 자격의 발급은 지속적인 감소추세, 2급 교사 자격의 발급은 증가 추세임.
- 보육교사 양성교육은 1992년 10개 과목 30학점에서 시작하여 2005년 12과목 35학점 이상의 요건으로 강화되었고, 2014년 17개 과목, 51학점으로 대학양성과정의 학점수가 상향 조정될 예정임.
-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상위 등급의 자격(3급→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으로 구분함. 갱신 없이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함.
-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교사의 평균 연령 또한 지나친 고령화를 염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교사의 여성편향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임.

다. 영국 보육교직원 자격과 관리

- 영국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한 영유아 대상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함.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가 보육시설 관장하

며 1999년 이후 질적 관리를 위한 독립기관으로 교육표준청(Ofsted) 설치됨.

- 영국의 보육 서비스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수(무급 포함)는 2006년 347,300명에서 2010년 434,100명으로 약 24% 증가함.
- 보육과 유아교육 교직원의 자격기준은 자격과 교육과정 관리국(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QCA)에 의해 인정되는 등급에 따라 8개 등급으로 구분함.
- 교사 교육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영유아 대상 서비스 교직원의 질 관리와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관련 인력개발위원회(Children's Workforce Development Council: CWDC)를 운용함.

라. 핀란드 보육교직원 자격과 관리

- 현재 0~6세까지 아동의 보육·교육 사회보건사업부에서 관장함. 2001년 유아교육에 대한 개혁 이후에 취학 전 6세 아동의 유아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함.
- 보육과 유아교육(ECEC)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2년부터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가정책에 대한 정부 결의'를 제안 추진 중임.
- 일반적으로 12명의 영유아를 3명의 교사가 팀으로 협력하여 보육.
- 보육교사는 다른 OECD 회원국에서처럼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3수준의 최소 자격기준임. 핀란드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현재 통합되지는 않았으나 교사의 양성과정은 통합 또는 협력 운영함.
- 교사의 자격 강화를 위한 노력, 양질의 인력공급을 위한 노력, 이직율을 줄이려는 노력, 교직원의 리더쉽 기술 개발, 유아교육과 보육 기관 교직원의 질 관리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
- 보육 분야 교직원의 다양한 시험을 통합하고, 실무교사(practical nurse)와 가정보육사(childminder) 교육과정 개정함.

마. 요약 및 시사점

- OECD 회원국은 유아교육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강화를 위해 노력 중임.
- 영국은 영유아 대상 서비스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육과 유아교육을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전문제도를 마련함.
- 보육교직원 전문성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할 만함.
-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참여를 증진할 동기의 부여가 필요하며 보수교육의 내용은 사회의 변화와 교직원의 필요를 반영해야함.
- 부모와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기능하는 보육교사의 역량강화가 요구되며, 보육교직원의 지속적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갱신 기준의 마련이 요구됨.
- 보육교직원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며, 보육교사 근무여건의 지역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질관리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보육비용의 지원

가. OECD 회원국 보육비용 지원

- 만 0~5세 아동을 위한, OECD 회원국의 보육비용 예산은 GDP 대비 스웨덴(1.1%), 영국(1.1%), 프랑스(1.0%), 한국(0.4%), 일본(0.3%)으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은 0.6%였음.
- OECD 국가들의 만 3~5세 아동 1인당 평균 3,591달러, 만 0~2세는 2,549달러의 정부 보육비용이 지불되었음.
- 보육비용 지원제도는 크게 3가지, 현금 지원, 시설을 통한 서비스 지원, 조세혜택 지원으로 구분됨. 현금 지원은 양육·자녀수당, 시설을 통한 서비스

지원이란 만 0~5세 아동을 위한 보육·유아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보육료 보조, 조세혜택 지원이란 가구의 세금을 일부 제하여 주는 일종의 과세혜택이 일반적임.

- OECD 평균 GDP 대비 현금 지원 비율은 1.22%, 시설 서비스 지원은 0.78%, 조세혜택은 0.25%임.

나. 우리나라 보육비용 지원

- 최근 5년 동안 GDP 대비 보육비용 예산은, 2007년 0.23%, 2008년 0.29%, 2009년 0.34%, 2010년 0.48%, 2011년 0.53%로 증가 추세임.
- 보육사업 예산의 약 80%는 아동의 보육료 지원비 항목임.
- '시설을 통한 서비스 지원'의 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조세 지원'과 '현금 지원' 순서임.

다. 프랑스 보육비용 지원

- 초기의 빈민층 구제를 위한 복지성격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돕는 역할로서의 보육지원제도 성격을 띠.
- 프랑스는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구분됨. 보육서비스 기관은 전국적 조직인 가족수당지급처(CNAF)의 가족수당기금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되어, 이를 이용하여 시설을 건립하거나 유지 및 비용을 사용함.
- 최근 4년 동안 프랑스의 보육비용 예산은 해마다 평균 5.81% 상승함.
- 보육비용 지원제도 중 현금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원 대상 자격은 국적에 상관없이 부모가 0세 이상 21세 미만인 자녀와 함께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음. 가계소득과 자녀수에 따라서 수당의 유형을 결정 후 차등적으로 지급함.

□ 보육비용 지원제도 중 조세혜택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녀 수, 자녀 연령 등에 따라 조세 지원 차등적으로 적용됨. 이전에는 무조건적인 복지혜택 및 조세 지원이었으나, 현재에는 조세혜택 수혜자의 근로참여를 유도하는 근로 장려세제로 전환. 2002년부터 22.8%가 신청.

라. 영국 보육비용 지원

□ 2010~2011년까지 영·유아 양육 위하여 20억 8800만 파운드(약 3조 7715억 원) 지원(3.6%)됨.

□ 보육비용 지원제도 중 현금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자녀를 대상으로만 제공되던 대상제한이 모든 자녀에게 확대됨. 부모 소득과 저축 등에 상관없이 만 1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제공.
- 2011년 4월부터, 첫 번째 자녀에게 매주 20.30 파운드(약 3만 6천원), 그 외에 자녀에게는 매주 13.40 파운드(약 2만 4천원)가 지급됨. 그러나 2013년부터는 고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기존의 제공되었던 아동수당혜택이 없어질 것임.

□ 보육비용 지원제도 중 시설을 통한 서비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부의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비용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이고, 2010~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4배가 높은 비용(약 1,445억 원)이 지원, 2011~2012년에는 약 1,264억 원이 지원됨.

□ 보육비용 지원제도 중 조세혜택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997년에 종결된 바우처 제도가 아닌, 일부 기업을 통한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 바우처 제도임. 고용인과 고용주 간에 계약을 통해 급여명세표와 함께 보육 바우처가 제공됨.
- 아동세액공제(CTC)와 근로세액공제(WTC)가 있으며, 영국은 개인단위의 조세지원방식이었으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가족단위의 공제혜택으로 확대되고 있음.

마. 스웨덴 보육비용 지원

- 2010년도에 683억 SEK(약 11조원)이 취학 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을 위하여 사용됨. 만 1~5세 아동의 약 83%가 다니는 피르스콜라(Preschool)에 532억 SEK(약 8조 6천억원)이 사용됨.
- 보육비용 지원제도 중 현금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정 내 총 소득과 양육시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 부담금을 책정하였으나, 비용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1999년 정액체제를 도입하였으며, 첫 번째 자녀에게 매달 700 크로나(11만 5천원), 두 번째 자녀는 매달 500 크로나(약 8만원), 세 번째 자녀는 매달 300(약 5만원) 이상의 부모 부담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제한함.
 - 보편적 가족수당으로의 정액수당 제도가 있으며 매달 약 130 SEK(약 19만원)가 제공되며, 가족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국가보조가 부가적으로 제공됨.
- 보육비용 지원제도 중 시설을 통한 서비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아학급(preschool class)의 경우 2008년을 기준으로, 총 비용의 65.9%는 교사 인건비 지원항목, 20.3%는 시설 유지비와 같은 항목에 소요됨.

바. 요약 및 시사점

- 보육시설 이용 시 기관 이용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선 논의 필요함.
- 아동·양육수당 제도와 관련하여 예산처 및 관련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기, 중기 과제로의 구분을 통한 접근이 필요함.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부모의 근로시간과 자녀 수, 가족의 소득수준에 맞게 보육료 지원제도의 차등 지급 원칙 고려 필요함.
- 근로세액공제 등의 모의 취업률 상승시키며 보육비 부담 경감시켜주는 제도의 확대운영을 고려 필요함.

5. 맺는 말

- 우리나라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 목표와 규정 설정, 교육과정과 학습수준 개발 및 실행, 교사 자격 기준 개선, 교육 및 근무여건 개선,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 자료수집과 연구 그리고 모니터링 활용에 적극적으로 노력 필요함.
- 보육교사의 자격요건과 승급요건의 강화, 자격갱신 제도의 도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함. 보육과 유아교육 교사의 양성과정이 통합되었을 때의 장점 분석할 필요 있음.
- 아동수당 보장 기간의 확대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가구 소득·자녀 수·부모들의 근로시간을 고려한 차등적 보육료 지급 정책이 고려되어야 함. 출산율 제고와 모의 취업률을 동시에 상승 시킬 수 있도록 근로세액공제 확대적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2
3. 연구 방법	5
4. 용어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6
II.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이용	8
1. OECD 회원국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8
2.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17
3. 호주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23
4. 일본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29
5. 스웨덴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36
6. 요약 및 시사점	43
III. 보육교직원의 자격과 관리	45
1. OECD 회원국 보육교직원 자격과 관리	45
2. 우리나라 보육교직원 자격과 관리	53
3. 영국 보육교직원 자격과 관리	58
4. 핀란드 보육교직원 자격과 관리	72
5. 요약 및 시사점	81
IV. 보육비용의 지원	86
1. OECD 회원국 보육비용 지원	86
2. 우리나라 보육비용 지원	91
3. 프랑스 보육비용 지원	97
4. 영국 보육비용 지원	104

5. 스웨덴 보육비용 지원	112
6. 요약 및 시사점	116
V. 맺는 말	118
참고문헌	121
부록	127
부록 1. 싱가포르 보육교직원 자격과 관리	129
부록 2.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관련 자료	136
부록 3. 보육교직원 관련 자료	139
부록 4. 보육비용 관련 자료	148

표 차례

<표 I-1-1> 보육 서비스 유형 (Typology of Childcare)	9
<표 II-1-2> 만 6세 미만 아동의 정규 보육 및 유치원 등록율(2008)	11
<표 II-1-3> 3세 미만 종일제 주당 참여시간	13
<표 II-1-4> 유아 보육 및 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정책적 목표	14
<표 II-1-5> OECD 주요 국가 영유아대상 서비스기관 필수 인가요건	15
<표 II-1-6> 영유아 당 최소 공간	16
<표 II-2-1> 설립 유형별 어린이집(2000~2011)	17
<표 II-2-2> 설립 유형별 보육영유아 수(2005~2011)	19
<표 II-2-3>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2011)	20
<표 II-2-4>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20
<표 II-2-5>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참여율, 인증률	22
<표 II-3-1> 지역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4
<표 II-3-2> 호주 종일제 보육서비스 체계	25
<표 II-3-3> 지역별 및 보육서비스 유형별 이용 영유아 수(2011)	26
<표 II-3-4> 만 0~4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2002~2011)	26
<표 II-3-5> 연령별 보육서비스 이용률(중복응답)(2011)	27
<표 II-4-1> 일본 인가 보육소 수 변화 추이(2005-2010)	31
<표 II-4-2> 일본 인가 보육소 설치 및 운영 주체	32
<표 II-4-3> 일본 인가 외 보육시설 현황(2010. 3)	32
<표 II-4-4> 일본 보육소와 대기 영유아 수	33
<표 II-4-5> 일본 인가 보육소 이용률	33
<표 II-4-6> 일본 인정아동원 현황	34
<표 II-5-1> 보육서비스 유형	38
<표 II-5-2> 피르스콜라 아동 수 변화(2005~2010)	39
<표 II-5-3> 가정보육 아동 수 변화(2005~2010)	39
<표 II-5-4> 교육적 보육 이용 아동 수(2009~2010)	40
<표 II-5-5> 피르스콜라의 이용 아동 수	40
<표 II-5-6> 유아학급의 이용 아동 수(2005~2010)	41

<표 III-1-1> OECD 회원국 보육분야의 교직원 유형	45
<표 III-1-2> OECD 회원국 영유아 대상서비스 교직원의 필수 국제표준교육 분류(ISCED) 수준	46
<표 III-1-3> OECD 회원국의 영유아 대상 서비스 교사 양성교육의 분리 여부	48
<표 III-1-4> OECD 회원국 영유아 대상 서비스 교직원의 보수교육 유형 및 구조	49
<표 III-1-5> 보수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와 유아교육 교사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종류	49
<표 III-1-6> 유아교육과 보육 교직원 유형에 따른 자격 갱신 기준	50
<표 III-2-1> 어린이집 인력 구성 현황	53
<표 III-2-2>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증 발급현황	54
<표 III-2-3> 보육교사 양성교육	55
<표 III-2-4> 원장과 보육교사의 남녀 비율	57
<표 III-3-1> 영국의 보육서비스 유형	60
<표 III-3-2> 영국의 유형별 보육시설 수	62
<표 III-3-3> 영국의 보육시설 유형별 교직원 수	64
<표 III-3-4> 영국의 보육교직원 연령 분포	65
<표 III-3-5> 보육과 유아교육 교직원의 자격 기준	66
<표 III-3-6> 영국의 보육과 유아교육 교직원의 유형	66
<표 III-3-7> 유급 육아지원인력 소지 자격	68
<표 III-3-8> 보육 교직원의 시간당 평균 임금	69
<표 III-3-9> 영국의 보육 교직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2010)	70
<표 III-3-10> 영국의 보육 유형별 보육 교직원 임용률, 이직률, 임용증가율	70
<표 III-4-1> 핀란드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서비스 기관 유형	75
<표 IV-1-1> OECD 회원국의 보육비용 및 국내 총생산(GDP) 대비 비중(2007)	86
<표 IV-1-2> OECD 회원국의 아동 1인당 공적 보육비용	87
<표 IV-1-3> OECD 국내 총생산(GDP) 대비 보육비용 지원 비율(2007)	89
<표 IV-2-1> GDP 대비 보육 서비스 예산 변화(2005~2011)	91
<표 IV-2-2> GDP 대비 보육사업 예산 비율(2010, 2011)	92

<표 IV-2-3> 전체 보육서비스 예산 하위 항목별 비율(2011, 2012)	92
<표 IV-2-4> 보육료지원 단가(2007~2011)	93
<표 IV-2-5> 만 0~2세 연령별 보육비용 구성	94
<표 IV-2-6> 보육료 지원(2012)	95
<표 IV-2-7> 보육료 지원 아동 규모(2011)	96
<표 IV-2-8> 자녀양육에 대한 조세혜택 지원(2009~2010)	96
<표 IV-3-1> 프랑스의 보육 및 교육시설 유형	99
<표 IV-3-2> 프랑스 보육비용 예산(2008~2011)	100
<표 IV-3-3> 프랑스의 영유아 대상 혜택(2012)	101
<표 IV-3-4> 프랑스의 영유아 대상 혜택	102
<표 IV-3-5> 보육기관 자유선택 보조수당 차등 지원	102
<표 IV-3-6> 프랑스 PPE 근로장려세제 소득액 제한선(2012)	103
<표 IV-4-1> 영국의 보육 및 교육 서비스 비용(2008~2011)	105
<표 IV-4-2> 영국의 보육·교육 기관 1개소 당 정부 지원비용(2006~2010) ·	105
<표 IV-4-3> 영국 이동수당 금액	107
<표 IV-4-4> 영국의 보육·교육 기반시설 및 교육과정을 위한 비용	108
<표 IV-4-5> 자녀수에 따른 아동 및 근로세액공제 금액(2012~2013)	110
<표 IV-5-1> 스웨덴 연간 교육비(2005~2010)	112
<표 IV-5-2> 스웨덴 기관별 보육비용(2008)	113
<표 IV-5-3> 스웨덴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보육료 비용(2011)	114
<표 IV-5-4> 스웨덴의 유아학급 비용(2008)	115

그림 차례

[그림 II-1-1] 만 0~2세 영유아의 정규 보육시설 등록율(2008)	12
[그림 II-1-2] 만 3~5세 영유아의 학령 전 교육 프로그램 등록율(2008)	12
[그림 II-1-3] 만 3세 미만 영유아의 종일제(full-time equivalent) 프로그램 등록율	13
[그림 III-1-1] 0~3세 영유아를 위한 정규보육 서비스에서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51
[그림 III-2-1] 보육교사 및 원장의 자격증 발급 추이(2007-2011)	54
[그림 III-3-1] 영국 유형별 보육시설 수 변화 추이(2006~2010)	62
[그림 III-3-2] 영국의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연령별 이용률 분포	62
[그림 III-3-3] 영국의 보육시설 유형별 교직원 수의 변화(2006~2010)	64
[그림 III-3-4] 영국의 보육시설 유형별 교직원 연령 분포(2010)	65
[그림 III-3-5] 영국의 보육 교직원 시간당 평균 임금 변화(2006~2010)	69
[그림 III-4-1] 북유럽 국가의 만 3세 이하 정규보육 등록율 추이	74
[그림 IV-1-1] OECD 회원국의 보육비용 지원방법 종류	88
[그림 IV-1-2] OECD 국내 총생산(GDP) 대비 보육비용 지원 비율(2007)	90
[그림 IV-4-1] 영국의 보육재원 및 부담	106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1> 싱가포르의 영유아 교사자격	132
<부록 표 2-1> 만 6세 미만 아동의 정규 보육 및 유치원 등록율(2008)	136
<부록 표 2-2> 만 3세 미만 아동의 종일제 프로그램 등록율과 주당 참여시간	138
<부록 표 3-1> OECD 회원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교직원의 필수 국제표준교 육분류(ISCED)	139
<부록 표 3-2> OECD 회원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교사 양성교육의 운용 ...	141
<부록 표 3-3> OECD 회원국 교직원 보수교육 유형 및 구조	142
<부록 표 3-4> 보수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대상 서비스 교직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종류	143
<부록 표 3-5> 보육분야 교사의 자격기준과 주 근무처 (Qualifications of certified childcare workers and main place of work)	144
<부록 표 3-6>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 기준	146
<부록 표 3-7>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근거	146
<부록 표 3-8> 보육교사 보수교육 유형과 대상 및 교육기간	147
<부록 표 3-9> 북유럽 국가의 만 3세 이하 아동의 정규 보육 이용률 추이 (1995~2008)	147
<부록 표 4-1> OECD 회원국 보육비용 국민 총생산(GDP) 대비 비중(2007)	148
<부록 표 4-2> OECD 회원국의 아동 1인당 공적 보육비용	149
<부록 표 4-3> OECD 회원국의 연령에 따른 아동 1인당 공적 보육비용(2007)	150

부록 그림 차례

[부록 그림 1-1] 싱가포르 영유아 교사자격관리위원회 구성	130
[부록 그림 1-2] 싱가포르 영유아교사 양성 경로(2009년 1월~ 2012년 12월 31일)	13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가족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 양성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 양질의 보육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반영하여 최근 보육정책과 현장의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현황과 추이를 국가 간 정리하고 비교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 보육의 핵심 정책인 아이사랑플랜(2009~2012)은 국내외 보육환경 변화에 따라 보육료 지원 확대, 양육수당, 보육 전자바우처 제도 등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으로 추진되어왔고 2012년 그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아이사랑플랜이 종료함에 따라 제2차 보육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 제도화 수준을 비교하여 계획 수립을 지원할 기초자료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질 높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제공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육은 주요한 정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관심만큼 변화가 많은 각국의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최근 OECD 국가들도 최우선 국정과제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제안하였다(OECD, 2012).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더욱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2년 5세 누리과정, 3, 4세 누리과정의 준비 등 공통과정이 현장에서 시행되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두 서비스 주체 간의 교사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육을 담당하는 성인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사와 보육과 교육의 질에 대한 많은 연구들(Eeva, Elina, & Janniina, 2012 Fukkink &

Lont, 2007; Leseman, 2009)은 교사의 교육수준과 연수를 통해 길러진 교사의 역량이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요인임을 강조한다. OECD의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 보고서 또한 교사의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011년 OECD 회원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전략과 과제를 논의한 *Starting Strong III*(OECD, 2012)에서도 교사의 자격기준과 교사 교육 및 근무여건의 개선을 질 향상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 우수한 역량을 지닌 보육교직원과 건강한 보육정책을 지닌 국가들의 사례를 확인 분석함으로써 그 정책적 묘안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정부는 출산율 증가와 여성의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또 자녀 보육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 예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과 더불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비용 관련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보편주의적이며 지속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보육비용 지원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선진국형 복지국가 혹은 보육제도로 전환되어가는 과도기적 어려움이라는 견해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반된 관점들 속에서,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보육비용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면밀히 고찰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육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수 국가의 자료를 서술하기보다는 보육 정책의 중심영역인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보육교직원의 자격과 관리, 보육비용 지원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두어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성하고자 한다. 즉 국가별 접근이 아닌 정책 분야별로 우수한 보육정책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국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그 보육정책 현황과 성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보육을 중심으로 OECD의 국제적 지표 자료(OECD, 2011; OECD 2012)와 최근의 국가별 자료를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제시한다.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보육교직원 자격과 관리, 보육비용 지원이라는 세 가지 중심주제별로 먼저 OECD 자료를 토대로 관련 정책의 국제적 기준과 경향을 살핀다. 두 번째로

는 우리나라 보육정책과 현황을 확인하고, 다음으로는 선정한 3개 사례국가의 관련 정책을 검토한다. 특히 사례 국가의 경우는 현재 정책이 구성되기까지 토대가 되는 보육정책의 변화와 보육 전반의 주요 지표 현황을 먼저 확인하고, 각 중심주제별 차별화된 노력을 찾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 보육정책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한다. 주제별 연구내용과 국가선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유형, 행정전달체계, 보육서비스의 이용 현황, 질 관리 등의 주제를 통해 각 나라의 구체적인 노력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호주는 유아보육과 교육이 일원화된 체계를 유지하여 왔고, 투자를 확대하여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가가 인증하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 체계는 우리나라 평가인증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국가이며, 최근 지속적인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국가적 품질기준을 마련하고자 장기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문화권의 나라이며, 출산율 저하, 대기 이동 수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간 보육서비스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민간 시설에 대한 질 관리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과 비교할 때 유용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공보육을 통해 세계에서 매우 진보적인 보육제도를 발전시키고 모든 아동에게 보육을 제공한다는 보편주의 보육이념과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나라이다. 게다가 취학 전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하고 공보육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성장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보육을 한 단계 비약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나. 보육교직원 자격과 관리

보육교직원의 질 향상 노력으로의 보육정책들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OECD 전반의 경향과 우리나라의 현황 자료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양성과 보수교육, 근무여건이라는 동일 기준으로 검토한다. 보육교직원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제

공할 사례국가로 영국, 핀란드를 선정하여 각국의 보육현황과 정책을 보육교직원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영국은 최근 보육과 유아교육 인력과 관련한 정책의 변화가 있었고, 그 기초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보육과 유아교육 설치와 운영, 제정 및 인력 현황에 대한 자료를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라는 제목으로 매년 정리,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과 경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2011년 9월 공개된 2010년 자료(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0)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Nutbrown Review)를 2012년 5월 발표하였다. 이는 영국 보육과 유아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교육, 자격, 보수에 대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담고 있다. 핀란드는 북유럽의 주변 국가들과 더불어 일찍부터 다면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온 나라이다. 특히 가족중심적인 성향이 강하여 가정 내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육아지원정책을 구성해온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핀란드는 2012년 3월에 OECD 보육과 유아교육 질 향상을 위한 중심 주제를 교사의 자격기준, 교육 및 근무여건 개선으로 정하여 심층 분석한 국가별 보고서(OECD, 2012)를 제출하였다. 이는 그동안 언어 차이로 접근이 제한적이던 핀란드 보육과 유아교육의 현주소를 심층 조망할 수 있는 자료로 이에 기초하여 교사에 대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싱가포르는 OECD의 회원국은 아니나 보육과 유아교육이 이원화된 상태에서 1999년 이후 교사교육을 중심으로 통합된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교사양성 및 자격에 대한 통합사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 보육비용 지원

보육비용의 지원을 보육예산과 보육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보육비용 지원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OECD 회원국 중 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보육비용 지원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세 국가 모두 OECD 회원국의 평균을 넘어서는 높은 출산율, 높은 자녀 양육비용 지원비, 높은 여성 취업률의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목표임과 동시에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에 이를 먼저 실현한 국가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에 적절한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국가 선정의 또 다른 이유는, 선정국들은 현 우리나라 보육과 유아교육의 행정체제와 다르다는 점에서, 보육비용의 정책과 제도가 어

떠한 보육·유아교육 행정체제 속에서 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육·유아교육 행정체제는 교육과 보호의 개념이 초기부터 통합되어 발달하고 진행되어 온 통합 일원화형, 아동의 연령에 따라 이원화된 행정체제 속에서 각자 발달되어 온 연령별 분리이원체제, 교육과 보육이 중복 이원화되어 발달되어 온 중복 평행체제(나정, 2001)로 구분할 때, 스웨덴과 영국은 통합 일원화형 국가로 만 0~5세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를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연령별 분리이원체제로, 만 0~2세 아동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만 3~5세의 경우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만 0~5세 아동을 교육부와 복지부가 같이 중복적으로 관리하는 중복 평행체제 국가로 분류된다. 선정국가 간의 차이점 내지 유사점을 인식하며 저마다의 보육비용 지원정책과 제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올해부터 만 5세 누리과정 도입되고, 내년부터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계획 중인 우리나라에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 분석 비교 연구이다.

첫째, 보육관련 정책을 보육서비스 유형과 운영, 보육교직원 자격과 관리, 보육비용 지원으로 구분하고 각 소주제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국제적 보육 현황의 파악을 위해 OECD의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 통계 자료(OECD Family Database, Education at a Glance 2011)와 보고서(Doing better for Families, 2011; Doing better for Children, 2009; Starting Strong III, 2011)를 수집하고 정리 분석하였다. 사례국가의 자료는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OECD의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 국가보고서인 'Quality Matt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Finland, 2012; Korea, 2012; England, 2012)'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셋째, 온라인에서 사례 국가의 보육 주무부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하였다.

나. 자문회의

우리나라의 보육현황 파악을 위해 보육전문직 공무원과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세 차례의 회의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문헌분석을 기초로 한 연구이나 국가별 단순한 현황자료의 나열이 아닌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4. 용어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가. 용어의 정의

보육서비스의 내용은 국가마다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보편적인 보육서비스로서 세 가지를 의미한다. 기관보육시설은 기관 중심의 보육시설로 4세 이전의 가정 밖의 인증된 탁아소, 유아원, 놀이그룹, 부모들이 운영하는 집단 등을 의미한다. 가정보육시설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육하고자 하는 아동의 가정, 또는 자신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취학 전 프리스쿨(유치원)은 기관 중심 또는 정규학교에 연계하여 제공되는 기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초등교육(의무교육)의 준비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보육 교직원 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 외 육아지원인력에 해당하는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등을 포괄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으로의 보육교직원은 보육의 질관리 측면의 주 대상으로 논의되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로 제한하여 논의한다.

보육비용 지원제도는 만 0~5세 연령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국가의 지원제도를 의미한다. 현금지원 은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원되는 양육수당을 뜻한다. 시설을 통한 서비스 지원은 보육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보육서비스 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이며, 조세지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정액세 감면 지원제도를 의미한다.

나. 제한점

국제 비교 연구를 진행하면서,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OECD 회원국을 비롯하여 연구대상 국가의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여부에 따라 통계자료의 구성방식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분야를 제외한 보육분야의 자료에 국한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가마다 통계자료의 구축 방식의 차이로 인해 정확하게 동일한 시점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가능한 한 근황을 비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로 OECD의 최근 자료와 각국 관련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OECD의 2011년, 2012년 통계자료도 2008년 또는 2009년 자료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연구대상 국가의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보완하였으나, 자료 간 기준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셋째,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 연구이나 비회원국인 싱가포르를 대상국가로 추가하여 부록에 그 내용을 담았다. 보육과 유아교육이 분리된 상황이나 교사의 양성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싱가포르의 영유아 대상 교사의 양성과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언어의 차이로 인한 정보 접근성이 사례국가 선정과 자료수집 범위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캐나다, 미국, 독일, 벨기에 등 보육행정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편차가 커서 국가를 대표하는 정책을 찾기 어려운 경우는 심층연구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II.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이용

본 장에서는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유형과 운영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호주, 일본, 스웨덴의 보육정책 변화와 행정전달체계를 개괄 하고 각 나라의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이용 현황,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통해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OECD 회원국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가. 보육서비스 유형

정규교육을 제외한 OECD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는 기관 보육, 가정 보육, 프리스쿨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기관보육(Center-based day-care)은 인가를 받은 가정 밖 보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탁아소(nurseries), 보육센터(daycare centers), 놀이학교(playschools)와 부모협동그룹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는 4세 이전, 프리스쿨 가기 전 영유아에게 제공된다. 기관 중심의 보육은 주로 공식보육으로, 보육서비스 주무부처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가정보육(Family day care: FDC)은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제공되는 돌봄을 말한다. 이는 보육을 제공하는 사람의 가정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육을 원하는 영유아의 가정에서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정보육은 보통은 출생 시 또는 한 살부터 보육을 시작하게 되며, 대개는 3-4명 정도가 부모나 친인척, 조부모, 전문적 베이비시터에 의해 양육이 행해지게 된다. 학령 전 프로그램(프리스쿨, 유치원: Pre-school, early education programmes)은 기관 중심 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초등교육 준비를 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격을 갖춘 교사가 감독하고 50%이상의 교육적 내용을 포함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종일반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방과 후 보육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몇몇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시간제로 유치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왔으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개선하기도 한다. 일부 국가들은 1~2년의 프리스쿨 과정을 초 등교육과정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도 한다.

〈표 1-1-1〉 보육 서비스 유형(Typology of Childcare)

	시설보육 (centre-based care)		가정보육 (family day care)		학령 전 학교 (pre-school)		의무 교육
공공							
민간							
아동 연령	0	1	2	3	4	5	6
호주	인가 받은 시설 및 가정 보육 시간제(주당 20시간) 또는 전일제(주당 최대 50 시간)				예비학교/pre-school: 초등학교와 연계(전일제 및 방과후 보육 제공)		의무 교육
핀란드	가정보육: Perhepäivähoito 지자체 운영 아동발달센터: Päiväkoti 전일제: 주당 50시간 미만						pre-school: Esiopetus
프랑스	시설보육: Crèche(전일제) 가정보육: Assistant maternelles(전 일제)		pre-school: École maternelle				의무 교육
독일	시설보육 Crèche: Krippen		pre-school: Kindergarten				의무 교육
이탈리아	Crèche: Asili nidi -시간제(주당 20시간) -전일제(주당 50시간 이하)		pre-school: Scuola dell'infanzia				의무 교육
일본	시설보육 가정보육		유치원				의무 교육
한국	시설보육		유치원 학원(pre-school)				의무 교육
스페인	시설보육: Educación Preescolar		pre-school: Educación infantil (초등학교와 연계)				의무 교육
스웨덴	pre-school: Forskola, 전일제(주당 30시간) 가정보육: Familie daghem(대체로 지방에서 운영)						pre-school: Förskoleklass (시간제)
영국	탁아소, 부모 (childminders), playgroup		-놀이그 룹, 탁아 소, 유아 교육기관		예비학교 (초등학교 연계)		의무교육

자료: OECD(2012).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Indicators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내용을 축소 정리함.

나. 보육서비스 행정전달체계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의 정책은 각국의 역사와 사회, 경제, 문화적 토양 위에서 결정되고 실현된다. 각 국의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 정책은 역사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형성된 아동관을 반영하여, 영유아대상 서비스 제공의 주무부처도 국가마다 다른 행정체계를 구성하여 왔다. 그러나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의 정책이 교육과 보호, 그리고 사회적 기능이 통합된 총체적인 정책일 때 질이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된 국가들의 경우에는 보육과 유아교육, 다양한 연령집단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OECD는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구분하여 3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연령별 분리 이원체제로서, 교육부는 3세 이상, 복지부는 3세 미만을 책임지는 경우로,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통합 일원화 체제로서 하나의 주무 부처가 0~6세 영유아대상 서비스를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중복 평행체제로서 미국, 캐나다, 일본과 한국이 이에 해당된다(나정, 2001; OECD, 2006).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국가에서는 모든 기관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영유아 보육과 교육 정책을 총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질적인 격차가 줄어들어 따라 영유아기 경험의 연속성이 증대되고, 연령 및 시설별 서비스 수준의 연계가 보다 수월해 질 수 있다.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과 영국 등은 하나의 부처가 영유아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보육과 유아교육 주무부처가 교육부인 나라의 경우는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과 스웨덴 등이며, 사회복지부가 맡고 있는 나라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와 일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육 서비스의 공급은 국가들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다.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과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사립기관이 우세하다.

다. 보육서비스 이용

보육서비스의 이용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앞서 보육서비스의 유형에서 보았듯이 0~2세의 어린 영아는 보육센터, 또는 부모 그룹, 보육모의 집에서 돌보는 등록된 보육모, 영유아의 집에서 돌보는 보육모 등 공식적 보육 제공과 비공식적 보육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한편, 3~5세인 경우는 정규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어떤 국가는 4~5세가 되어 초등학교 프로그램에 등록하기도 한다. 또는 방과 후 학습에 참여하기도 한다.

OECD 회원국의 보육 참여를 살펴보면, 0-2세의 보육 및 교육 등록율은 약 17%에서 46%정도로 국가 간 편차가 크다. 회원국의 반 이상에서 3-5세 영유아의 80%이상은 영유아 대상 서비스 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 만 6세 미만 아동의 정규 보육 및 유치원 등록율(2008)

국가	만 0-2세	만 3-5세
프랑스	42.0	99.9
스페인	37.5	98.5
이탈리아	29.2	97.4
독일	17.8	92.7
영국	40.8	92.7
스웨덴	46.7	91.1
일본	28.3	90.0
한국	37.7	79.8
핀란드	28.6	74.2
호주	29.0	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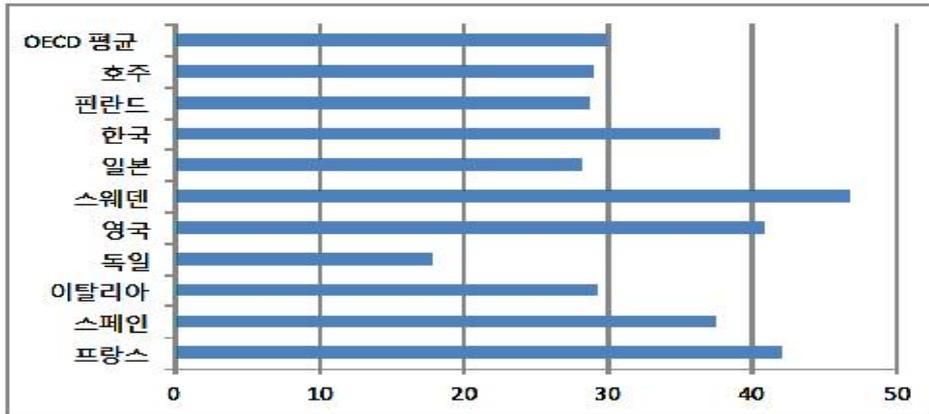
주: 3세 미만은 2005년, 3세 이상은 2008년도 자료임.
 자료: OECD(2012) family database-indicators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함. 원자료는 부록으로 제시함.

OECD 회원국에서 만 3세 미만 영아 다섯 명 중 한 명은 정규 기관에 등록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록 표 2-1 참고). 오스트리아, 체코 공화국,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태리, 멕시코와 폴란드의 영유아의 등록 비율은 10%도 안 되지만, 북유럽 국가에서는 40%, 덴마크(62%)와 아이슬란드(59%)는 거의 60%에 달한다. 이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가장 적절한 형태로 발달되어온 결과로 보육의 공공성, 부모의 양육체계,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상, 가족 구조와 문화 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영유아가 기관에 머무는 시간도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보육이용시간은 영유아의 발달 결과와 어머니의 노동 시장 참여와 관련이 된다.

대부분의 보육이 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되거나, 가정에서 가족이 아닌 양육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멕시코와 미국 등에서 정규적인 보육은 보고가 덜 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낮은 보고율로 인해 실제보다 등록률이 낮게 평가되기 쉽다. [그림 II-1-1]과 [그림 II-1-2]는 0~2세와 3~5세의 평균 이용현황을 보여준다. OECD 국가 3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참여율은 약 30% 정도이다. 한편, 칠레, 체코 공화국,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이 연령대의 이용률은 10% 이하이나,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공식보육 이용률이 50%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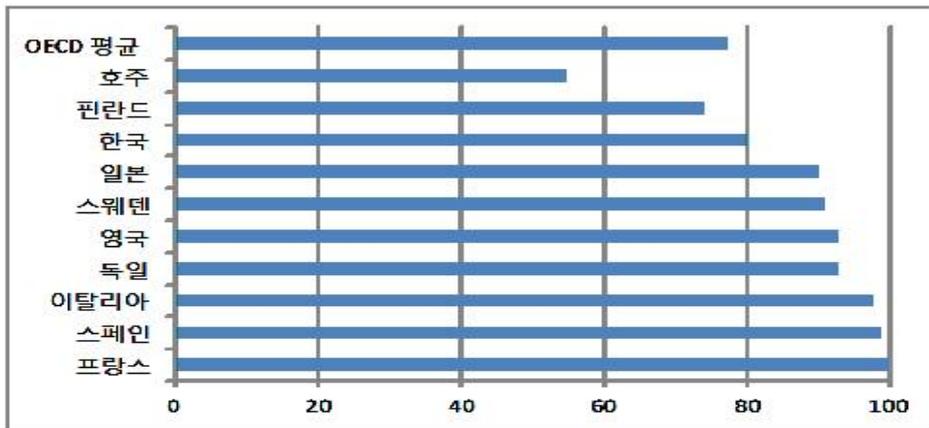
한편, 2008년 기준으로 학령 전 프로그램(pre-schools) 시설을 이용하는 3세 이상의 영유아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3세 미만의 참가율보다 훨씬 높다.

OECD 국가 중 2/3는 적어도 70%의 유아가 등록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하는 벨기에,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등의 등록율은 매우 높으며, 그리스, 폴란드, 스위스와 터키 등의 나라에서는 등록율 50% 정도이다.



자료: OECD(2012). family database-indicators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함.

[그림 II-1-1] 만 0~2세 영유아의 정규 보육시설 등록율(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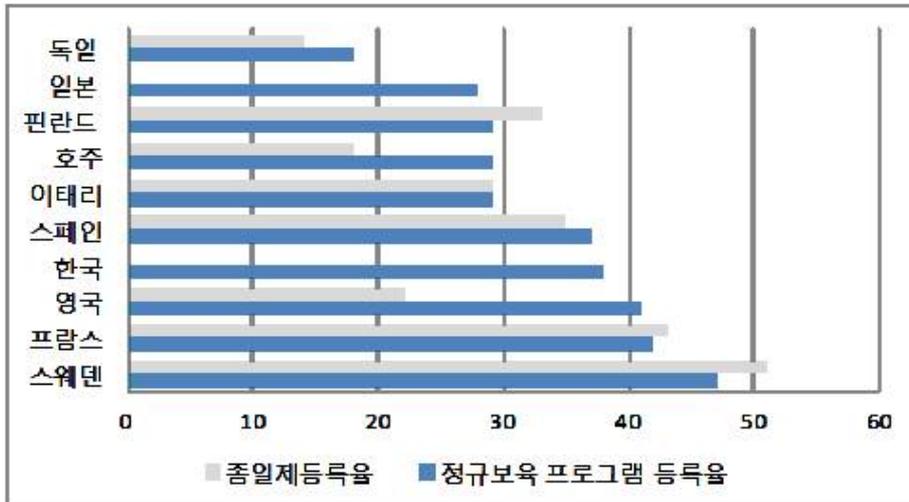


자료: OECD(2012). family database-indicators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함.

[그림 II-1-2] 만 3~5세 영유아의 학령 전 교육 프로그램 등록율(2008)

종일제 등록율은 주당 30시간의 정규 보육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들의 비율을 말하며, 이는 일반 정규 보육프로그램 등록율과 다르다. 즉, 영국의 보육프로그램

램 등록율은 41% 정도이나 종일제 등록율은 22%로 나타난다. 종일제 비율을 확인하면 [그림 II-1-3]과 같다.



자료: OECD(2012). family database-indicators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함.

[그림 II-1-3] 만 3세 미만 영유아의 종일제(full-time equivalent) 프로그램 등록율

3세 미만 보육서비스의 주당 참여시간을 <표 II-1-3>을 통해 살펴보면, 핀란드가 34시간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스웨덴과 프랑스가 30시간 이상, 그 다음 이태리와 스페인 등이 28시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상대적으로 16~18시간으로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주당 참여시간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록 2 <부록 표 2-2>에 OECD 전체 회원국의 자료를 담았다.

<표 II-1-3> 3세 미만 보육서비스 주당 참여시간

단위: 시간

국가	스웨덴	프랑스	영국	한국	스페인	이태리	호주	핀란드	일본	독일
주당평균 참여시간	33	31	16	-	28	29	18	34	-	23

자료: OECD(2012). family database-indicators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함.

라. 보육서비스 질 관리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질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정책지향성의 질, 구조적 질, 교육 개념과 실천, 상호작용 또는 과정의 질, 운영의 질, 영유아성취의 질이나 수행 기준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모와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 및 참여와 관련된 기준도 보육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에 포함되고 있다(OECD, 2006). Bennett(2008)은 '영유아기 서비스를 위한 15개의 지표'를 제시하면서, 사회가족 맥락, 영유아기 제도에 대한 관리와 감독, 접근 기회, 프로그램 질 등의 4개 영역, 15개 지표를 세분화하였다. 특히, 영유아기 제도에 대한 지표에는 주무부처의 일원화 여부, 통합된 국가 정책과 계획 수립,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평가의 투자 여부, 영유아보호와 법 제정 여부, 공적투자 비율(GDP대비)을 포함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질에 관해서는 서비스를 위한 국가교육지침 유무, 교직원 지원 여부, 교직원 자격과 근무 조건, 영유아 대 성인 비율 등을 세부지표로 강조한다. OECD에서는 지난 2년간(2010~2011)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보육 질 향상을 위해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다섯 가지 제안은 질에 대한 목표와 규정 설정, 교육과정과 학습기준 개방 및 실행, 교사 자격기준, 교육 및 근무여건 개선,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 자료수집, 연구 및 모니터링 등이다(OECD, 2012).

〈표 11-1-4〉 유아 보육 및 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정책적 목표

국가	법적규제	준거/교수법/ 교육과정/ 취학 준비도	모니터링 및 평가	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형평성 유지
호주	●	●	●	●	-
핀란드	●	●	●	●	-
독일	-	●	-	●	-
이탈리아	-	●	●	●	-
일본	●	●	●	●	-
한국	●	●	●	●	●
스페인	●	●	-	●	●
스웨덴	-	●	●	●	-
영국	-	-	-	●	-

자료: OECD Network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s "Survey for the Quality Toolbox and ECEC Portal"(2011)의 자료를 재구성함.

다양한 기준과 지표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OECD(2006, 2012)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모든 서비스 기관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는 서비스 질에 대한 정의와 질적 수준의 보장을 위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 교직원, 부모, 영유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규제는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한 국가 내에서도 서비스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적절한 수준의 규제는 건강과 환경, 프로그램 기준을 정의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국가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구조적 투입(공적 자금, 시설, 교구, 교사 기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다(OECD, 2008).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질 목표와 규정 설정이 필요하며, 규정 설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최소 기준을 명료화할 수 있다. 즉,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실내·외 공간, 교사 자격 기준과 교사와 영유아 또는 교사와 부모의 접촉빈도와 같은 구조적 지표 등을 고려할 수 있다(OECD, 2012).

〈표 II-1-5〉 OECD 주요 국가 영유아대상 서비스기관 필수 인가요건

	보육시설	가정보육	공립유아기관
호주	3 수준	2/3 수준	4 수준
오스트리아	3 수준	2/3 수준	4 수준
벨기에	4 수준	2/3 수준	4 수준
캐나다	2/3 또는 4 수준	1/2 수준	4 수준
헝가리	4 수준	3 수준	4 수준
아일랜드	2 수준	1 수준	4 수준
한국	2 수준	2 수준	4 수준
포르투갈	3 수준	1 수준	4 수준
스웨덴	4 수준	4 수준	4 수준

주: 1수준: 초기 건강검진 및 안전 점검 등록
 2수준: 매년 건강검진 및 안전 점검 등록
 3수준: 매년 건강검진 및 안전 점검 등록, 공식적인 교육과정 또는 발달 프로그램, 교직원의 최소자격 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름
 4수준: 매년 건강검진 및 안전 점검 등록, 교육과정 또는 질에 관한 기준, 교직원 자격 기준, 현직 직무연수와 인증된 감독기관에 의해 정기적으로 교육감독 실시

자료: OECD(2008). Start strong II에서 재인용함.

이러한 대표적인 구조적 지표의 하나의 교사 비율의 최소 기준은 중요하다. 유치원과 프리스쿨의 영유아들은 보육기관에 있는 3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교사 비율보다는 높다. 일반적으로 OECD 19개 회원국 평균을 살펴보면, 한 명

의 유치원 교사(학령 전 학교)는 평균 18명의 영유아들을, 한 명의 보육교사는 평균 7명의 영유아들을 담당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 한편, 가정보육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다른 구조적 지표의 하나인 실내·외 공간을 살펴 보면, 일반적인 영유아 1인당 유치원이나 프리스쿨과 보육센터보다는 가정보육의 요구 공간이 가장 넓다. OECD에서 규정하는 영유아 1인당 실내 공간은 유치원과 프리스쿨은 2.9m², 보육 센터는 3.6m²이다. 한편 영유아 1인당 실외 공간은 유치원이 7m², 보육센터는 8.9m²이다. 실내 공간 규정보다 실외 공간의 경우는 국가별 편차가 크다.

〈표 II-1-6〉 영유아 당 최소 공간

국가	실내 공간			실외 공간	
	보육 시설 ¹	유치원/ 취학 전 학교 ²	가정 보육	보육 시설 ¹	유치원 / 취학 전 학교 ²
호주	3	3	-	-	-
핀란드	7	3	-	-	-
독일 베를린	3	3	-	6	6
이탈리아	7.5	1.96	5	2	2
일본	1.65	3.71*	-	3.30*	2.92~4.00*
한국	2.64	-	-	3.5	3.42*
스페인	2	2	-	-	-
터키	-	-	-	-	2
스코틀랜드(UK)	3.7	-	-	-	-

주: 1) 유보 통합이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보육 시설이라 함은 가장 어린 나이의 영유아(대체로 만 0~3세)를 수용하는 기관을 일컫음.

2) 유보 통합이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유치원/ 취학전 학교라 함은 대체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연령까지의 영유아를 수용하는 기관을 일컫음.

3) *김은영·김진경·최경숙·조운주·조혜주·안 진(2009). 유치원과 보육시설 시설·설비 기준 개발 연구 참고

자료: OECD Network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s "Survey for the Quality Toolbox and ECEC Portal"(2011). 자료를 재구성함.

마. 소결

OECD 국가들마다 보육 서비스의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며 보육 및 조기 교육 서비스의 질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단일 지표는 없기 때문에 국가 간 보육 및 조기교육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배화옥, 2007). 이러한 질 관리를 위한 최소 기준 설정 시에 질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서비스 제

공을 위한 재원 확보, 다른 규제 하에 있는 다양한 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 지역적 요구와 제한점 고려, 최소 기준의 이해, 민간 기관 규제 관리 등이 실현 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정부 보육사업 현황을 2011년 보육 통계와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육 정책의 개요,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행정전달체계, 보육서비스의 이용 현황, 질 관리를 위한 체계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 보육서비스 유형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인 기관보육과 가정보육으로 나눌 수 있다. 어린이집 종류는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등의 유형을 규정하고, 보육 수요와 공급을 위하여 중앙 및 각 지방정부가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표 II-2-1〉 설립 유형별 어린이집(2005~2011)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 개인	가정	직장	부모 협동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263	42
2006	29,233	1,643	1,475	1,066	12,864	11,828	298	59
2007	30,856	1,748	1,460	1,002	13,081	13,184	320	61
2008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350	65
2009	3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370	66
2010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9	401	74
2011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449	89
(비율)	(100.0)	(5.3)	(3.7)	(2.2)	(35.5)	(52.0)	(1.1)	(0.2)

자료: 보건복지가족부(각년도). 2012 보육통계.

2011년도 기준 시설유형별 보육 구성을 보면 전체 어린이집 39,842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116개소와 법인어린이집 1,462개소 등 공공성을 가지는 어린이집의 수는 전체 어린이집의 9.0%로 낮은 비율이고,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이 대다수이다. 2011년 12월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14,134개소로 35.5%이고 가정어린이집이 20,722개소로 52.0%이다. 민간어린이집은 2010년 19,369개소에서 345여개 증가하였고, 가정어린이집은 2010년 19,369개소에서 1,353여개 정도가 증가하였다(표 II-2-1 참조). 국공립어린이집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이나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와 그 보호자를 지원하고자 한다. 최근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편은 아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남녀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으로,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민간어린이집은 인가제이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사전상담제도를 두어서 지역 보육수요에 따라 시·군·구가 어린이집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공동주택 의무보육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설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어린이집 설치 운영지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하위법령으로 정한 설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나. 보육서비스 행정전달체계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실행과 관련한 체계는 앞서 OECD분류에 의하면 중복 평행체계로서 교육부는 주로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교육을 맡아왔고, 0~6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보육의 전달체계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시·도청, 시·군·구청의 가족지원, 주민생활, 여성보육 등의 부서로 이어진다. 2010년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한국보육진흥원이 보육시설 평가인증국, 보육인력개발국을 통해 보육업무를 지원하면서 위탁사업인 중앙보육정보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보육시설평가인증국은 전국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업무를 맡아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일부 책임지고 있으며 보육인력개발국은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을 포함하여 보

수교육 등 종사자 관련 업무 일체를 지원하고 있다.

다.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보육 영유아는 2011년 12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약 13만 4천여명 정도로 전체 보육 영유아의 9.7%이고 법인 및 법인 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약 16만 명으로 12.6%,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이용은 민간어린이집 70만 6천여명과 가정어린이집 30만 8400여명으로 모두 101만 5천명으로 현 이용비율은 75.6%이다.

〈표 II-2-2〉 설립 유형별 보육영유아 수(2005~2011)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 개인	가정	직장	부모 협동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12,985	933
2006	1,040,361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4,538	1,238
2007	1,099,933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5,124	1,444
2008	1,135,502	123,405	113,874	53,818	615,647	210,438	16,809	1,491
2009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2,996	236,892	18,794	1,655
2010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21,901	1,829
2011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4,987	2,286
(비율)	(100.0)	(9.7)	(8.8)	(3.8)	(53.2)	(22.4)	(2.0)	(0.2)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2012 보육통계.

이러한 보육 이용 영유아 정원은 162만 1948명에 현원 134만 8729명으로 정원 대비 현 이용비율은 83.2%이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90.8%로 가장 높고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률이 76.8%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II-2-3 참조).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을 살펴보면, 만 2세 미만 영아는 전체 영아 136만 7천명 중 73만 9332명으로 54%가, 3세~5세 유아는 총 82.0%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0~5세 영유아 전체로는 약 277만7천명 중 68.3%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만 2세의 기관 이용률이 0~5세 전체 기관 이용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II-2-4 참조).

〈표 II-2-3〉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2011)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 개인	부모 협동	가정	직장
정원	1,621,948	157,478	141,966	61,708	862,104	2,726	363,430	32,536
현원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2,726	308,410	24,987
(비율)	(83.2)	(90.8)	(79.4)	(82.1)	(82.0)	(83.9)	(84.9)	(76.8)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통계.

〈표 II-2-4〉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단위: 명, %

구분	인구수1) (A)	어린이집2) (B)	유치원 (C)	계 (B+C)	비율 (B/A)	비율 (B+C/A)
0세	451,579	146,666	-	-	32.5	-
1세	470,224	249,787	-	-	53.1	-
2세	445,437	342,879	-	-	77.0	-
0~2세 소계	1,367,240	739,332	-	-	54.1	-
3세	466,807	272,034	133,986	406,020	58.3	87.0
4세	494,388	182,999	196,602	379,601	37.0	76.8
5세	448,774	137,349	233,724	371,073	30.6	82.7
3~5세 소계	1,409,969	592,382	564,312	1,156,694	42.0	82.0
0~5세 전체	2,777,209	1,331,714	564,312	1,896,026	48.0	68.3

주: 1) 인구수는 2011년 12월 주민등록인수임.

2) 어린이집 자료는 2011년 12월, 유치원 자료는 2011년 4월 통계로 5세 이상아는 제외하였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유치원현황(2011년 4월).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2011년 12월 기준).

라. 보육서비스 질 관리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는 법적 규제에 의한 질 관리, 보육과정을 통한 질 관리, 지도·점검을 통한 질 관리, 평가 인증을 통한 질 관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법적 규제

법적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질 관리는 국가수준의 법규에 근거한 질 관리와 시·도 차원의 질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수준의 질 관리는 영유아보육법, 건축법 등의 설치·인가 및 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법에 근거한 내용을 말한다.

시·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질 관리는 중앙의 보육사업 안내를 토대로 수립된 시·도별 보육계획과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내용들이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설치 시에 인가 절차가 있으며, 인가 신청은 지역의 보육 수요 등 지역 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설치 전 상담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원 책정과 시설 면적 등에 대한 산정을 하게 된다. 어린이집 정원은 시설 규모에 따라 50인 이상과 50인 미만으로 나누어지며, 영유아 1인당 전용면적은 4.29m², 보육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2.64m² 등을 준수해야 한다.¹⁾ 또한 운영에 있어서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하게 하여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만 0세반, 2:6, 만 1세반 2:10, 만 2세반 2:14 등을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2) 보육과정

영유아가 배워야 할 보편적 보육내용을 국가차원에서 제공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 질을 유지한다는 취지 아래 개발되었다. 특히, 2004년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표준보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을 여성가족부 장관의 의무로 규정하여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표준보육과정은 법적 필요 외에도 시대적, 문화적으로 국가수준의 보육과정 개발에 대한 요구와 양육의 사회화에 대한 합의로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을 통해 보육이념과 보육목적을 토대로 목적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였고 평가에 반영하였다. 연령별로 나누어 보육과정을 구성하고, 같은 연령 집단 내에서도 수준을 나누어 발달적 개인차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표준보육과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각 영역별 목표와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였으며,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활용을 돕고자 교사지침서를 영역별, 연령별로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2; 장명림·김은영·박수연·김은기·이일주, 2009). 2011년 5세 누리과정 제정과 2012년 3-4세 누리과정 제정으로 인해 2012년 현재 그에 따른 0-2세 보육과정의 개정이 준비 중이다.

3) 지도 점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가 영유아보육법령을 준수하고 사업지침을 따르도록 지도하고, 어린이집

1)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사업 안내 내용에서 발췌함.

운영의 어려움 상담과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법 제 41~4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내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지도·점검은 관계공무원이 점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인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거나, 교차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장명림 외, 2009).

4) 평가 인증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 인증제도는 평가인증지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도록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였다. 평가인증제도는 2003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모형을 개발,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2005년도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06년도부터 본격 시행하여 2009년까지 1주기를 마친 상태다(장명림 외, 2009). 2010년 2주기 평가인증은 평가지표의 축소, 달성도 높은 항목 통합, 항목신설 등의 변경을 추진하였고, 법적 기본사항(설치기준,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확인을 추가하였다. 또한 평가인증 신청에서 인증 결정에 이르는 기간을 단축하고 인증의 객관성 및 기준 점수를 강화하였으며, 각 지역의 사전조력 인프라를 통해 인증어린이집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였다. 평가인증 3주기를 시작하는 2012년에는 향후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 사후관리 강화, 인센티브 연계 등을 통해 평가인증 제도가 더욱 효율적인 어린이집 품질 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012년 6월 기준으로는 어린이집의 81.2%가 평가인증을 받았다. 시설 유형별로는 법인어린이집의 인증률이 102.8%로 가장 높고, 국·공립 어린이집(95.3%), 민간어린이집(8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2-5〉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참여율, 인증률

단위: 개소, %

구 분	합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전체(A)	39,842	2116	1462	449	20,722	89	15,004
인증(C)	32,342	2017	1503	289	16,304	38	12,191
인증률(C/A)	81.2	95.3	102.8	64.4	78.7	42.7	81.3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2).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3. 호주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가. 보육정책 개요

1) 보육정책 변화

1992년에 설립된 정부위원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COAG)가 중심이 되어 보육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위원회는 중앙과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관련부서를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각 지방정부의 장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정부위원회는 상호협력을 요하는 중요한 국가적 정책 포럼을 개발하고 점검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위한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 to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국가적 질 관리 어젠더(National Quality Agenda), 조기 학습 체계(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EYLF), 국가적 초기 인력 전략(National early Years Workforce Strategy)등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위원회의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는 개혁들은 어린이들에게 인생에서 가능한 최고의 출발을 하도록 하며 건강, 돌봄, 교육과 가족 지원과 같은 한 단계 나은 영유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2008년 11월과 12월에 조기 학습 체계(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EYLF) 초안에 관한 검토가 행정수도에서 진행되었다. 그 후 2009년 2월과 4월에 걸쳐 호주의 29개 지역에서 시행되어 일련의 기준들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2009년 7월에 확정하였다. 2008년에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국가적 품질 어젠더(National Quality Agenda)에 관한 의견들을 모으기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었고, 유아교육의 질을 위한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 to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적 파트너십(National Partnership Agreement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NP)을 체결하여 정부가 5년에 걸쳐 9억 7천만 달러를 지원하여 원주민과 소외 지역 영유아들이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에는 국가수준의 초기 발달 전략(Early Childhood Development Strategy)을 개발하기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모였다. 마침내 2012년 1월부터 국가적 질 표준체계(National Quality Standard)가 완성되어 모든 종일제 시설, 가정 보육시설, 방과후 보육과 유치원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2) 행정전달체계

현재 호주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연방정부 담당 부처는 교육·고용·노사관계부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DEEWR)이다. 2009년 이전 각기 보육은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유아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담당하던 것을 조직개편으로 한 부처로 조정된 것이다. 특히, 교육, 고용 및 직장 관계 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는 유아 교육과 보육 사무처(Offi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OECECC)는 모든 호주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접근성이 있으며 저렴한 양질의 유아 교육을 제공하고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1) 보육서비스 유형

호주의 보육서비스 유형은 종일제 보육, 가정보육, 방과후 보육, 일시 보육, 가정내 보육(In-Home Care) 등이 있다. 종일제 보육은 보통 영유아 센터로서 건물에서 제공되는 센터 중심의 보육을 말하며, 인증된 서비스이므로 보육급여와 보육료 환불제도의 자격을 갖게 되며, 일정 기준의 질적 수준을 갖고 있다. 종일제 보육은 만 0세에서 만 5세의 영유아가 하루에 보통 8시간 이상을 보육하는 기관으로 종일제, 또는 시간제 이용이 가능하다.

〈표 11-3-1〉 지역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단위: 명

서비스 유형	주요도시지역	지방/소외지역	전체
종일제 보육	426,160	160,770	585,000
가정 보육 /가정 내 보육	65,820	47,290	112,720
일시보육	4,700	2,890	7,580
방과 후 보육	226,180	62,510	288,090
전체	705,390	263,250	963,870

주: Offi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2012). Child Care update, p. 1,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가정보육은 자격을 가진 보육모가 자기 집에서 소수의 영유아를 돌보는 것으로서, 가정보육센터로 지칭되는 관리 기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한편, 가정내 보육(In-Home Care)은 서비스 제공자가 영유아의 집을 방문하여 보육하는 서비스로, 가정내 보육센터의 관리를 받는다. 주로 농촌·산간지역에 살거나, 부모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장애영유아를 돌보고 있거나, 부모가 아프거나 또는 미취학 영유아가 2명 이상일 경우에 이용한다. 이외 소외지역 보육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탄력적 서비스(Flexible Services), 원주민 영유아를 위한 다기능 원주민 영유아 서비스(Multifunctional Aboriginal Children's Services), 이동 서비스 등이 있다. 일시보육은 취학 전 영유아가 서로 어울리면서 사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센터에서 한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방과 후 보육은 주로 만 5~12세의 초등학교 학생에게 등교 시간 전, 방과 후, 학교가 쉬는 기간 중에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의미한다.

호주 보육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주 및 지역정부에 기초한 인가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에서 종일보육시설 60.7%, 방과 후 보육시설 29.9%, 가정보육시설 11.9%, 일시보육시설 0.8%로, 전체 보육의 26.1% 정도이다. 또한, 전체 프리스쿨의 33%정도는 정부 시설이고 그 외는 비정부시설로 약 67%정도로 민간의 비중이 높다. 종일제 시설만 보면 2009년 이전의 경우 정부가 설치한 시설은 3%정도이고 22~26%가 지역사회 및 비영리이며 75% 이내가 개인 시설이었다. 호주 어린이집의 독특한 요인은 전체 종일제 어린이집의 약 33%를 차지하던 영리어린이집 ABC 그룹이 2009년에 해체(goodstart sale)되고 상호는 유지한 채 다수가 비영리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는 여러 지역의 컨소시엄 형태 비영리 유한회사로 전환 운영하게 되어, 개인이 운영하던 보육서비스가 75%에서 64%로 11%정도 감소하고 지역사회 및 비영리 보육서비스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II-3-2〉 호주 종일제 보육서비스 체계

단위: %

구분	2004-5	2008-9	goodstart sale 이후
정부	3	3	3
지역사회 및 비영리	26	22	34
개인	71	75	64

자료: Offi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Child Care(2010). State child care in Australia. 2010 Report on Government Services, Jurisdictional data and Departmental projections.

2) 보육서비스 이용

호주의 대표적 지역별, 보육서비스 유형별 이용 영유아 수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종일제 보육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으로 방과 후 보육, 가정 보육의 순서로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많다. 전체 8개 지역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뉴 사우스 웨일스(NSW, 32.1%)의 공식보육의 이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퀸즈랜드(QLD, 24.8%), 빅토리아(VIC) 23.1% 순이다.

〈표 11-3-3〉 지역별 및 보육서비스 유형별 이용 영유아 수(2011)

단위: 명(%)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ew South Wales	Northern Territory	Queensland	South Australia	Tasmania	Victoria	West Australia	전체
종일제 보육	11,360	193,520	4,420	151,280	38,320	11,620	128,070	47,550	585,000
가정 보육	1,320	37,410	670	23,820	8,020	5,300	29,040	7,200	112,720
일시 보육	220	2,810	0	980	150	140	2,350	950	7,580
방과후 보육	7,360	84,120	3,350	70,390	30,580	7,060	68,660	16,750	288,090
총계 ¹	19,880 (2.0)	308,940 (32.1)	8,280 (0.8)	239,450 (24.8)	74,220 (7.7)	22,760 (2.3)	222,440 (23.1)	69,580 (7.2)	963,870

주: 한 개 이상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중복응답하였기 때문에 각 서비스의 합과 응답자 수를 의미하는 총계의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Offi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Child Care(2012). Child Care Update.

〈표 11-3-4〉 만 0~4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2002~2011)

단위: %

구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
보육이용률	56	60	59	55
공식보육만	19	21	21	24
비공식보육만	24	24	26	18
두 가지 이용	12	13	13	12
미이용	44	40	41	45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2). Child Care, June 2011.

보육서비스 이용은 0~3세아의 경우 이용률이 55%이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보육이용률을 볼 때, 비공식보육의 이용은 감소하고 공식보육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보육 이용률을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공식보육서비스에서 종일제 이용률이 높으며, 만 5세 이후는 방과 후 보육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만 0~4세 까지의 어린 연령대에서는 가정 보육의 이용률도 10% 이상이다.

〈표 II-3-5〉 연령별 보육서비스 이용률(중복응답)(2011)

단위: %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공식보육서비스						
방과후 보육	0.0	0.0	0.0	0.0	4.7	63.3
종일제 보육	86.4	83.5	83.2	88.4	83.3	32.1
가정보육	13.6	13.0	14.5	10.1	11.3	7.4
일시보육	0.0	4.8	4.4	3.7	3.1	0.0
비공식보육서비스						
조부모	78.7	83.1	81.9	72.6	72.7	68.9
비동거부모	5.9	7.8	7.9	15.4	16.0	20.5
친척	18.3	15.4	12.0	18.0	13.1	15.0
타인	10.2	10.8	12.0	14.5	14.4	16.8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ustralia, June 2011

다. 보육서비스 질 관리

호주의 보육 서비스 질 관리를 보면, 법적 규제에 따른 질 관리도 있으며, 이에 따른 감독, 평가를 함께 하는 질 관리를 하고 있다. 국가 보육 인증 위원회(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NCAC)를 통해 종일제 보육, 가정 보육, 방과 후 보육을 관리해 왔던 이전의 보육품질 보장 체계(Child Care Quality Assurance Systems: CCQA)는 2011년 12월까지 임무를 마치고 2012년 1월 부터는 국가 품질 체계(National Quality Framework)로 대체되었다.

1) 법적 규정

국가 품질 체계 하에서 보육서비스 기관에 대한 품질 등급의 검토는 먼저 주와 지방규제 당국에 의해 수행되고, 호주 보육 품질 기관(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ACECQA)에서 두 번째 수준의 검토를

담당하게 된다. 호주의 국가적 질관리 체계를 보면, 안내 지침, 질 영역, 표준과 요소들로 나뉘어서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의 질 영역은 교육적 프로그램과 실제,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물리적 환경, 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자격 등의 교사 배치, 영유아와의 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협조적 파트너십, 리더십과 서비스 관리 등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2) 보육과정

호주 정부는 조기 학습 체계(the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EYLF)를 개발하여 영유아들의 잠재력을 확장하고 미래 학업 성취의 기초를 발달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려는 교육자들을 돕고자 한다. 조기학습체계는 출생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들의 학습을 증진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원칙, 실제와 발달결과들을 설명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놀이중심의 학습, 초기 문해와 수를 포함한 의사소통과 언어의 중요성, 사회·정서적 발달을 강조한다. 평가인증도 프로그램과 평가, 유아들의 경험과 학습 등에 관한 교육과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OECD, 2012).

3) 지도·점검

새로운 국가적 질 체계의 실행과 관리를 위해 호주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질 관리 위원회(the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ACECQA)를 수립하였다. 호주는 ACECQA를 통해 모든 보육 서비스를 아우르는 국가적 질 아젠다를 공표하고 비주류 서비스까지도 국가적 질 체계와 규정들이 실행되는 것을 점검하고자 한다(OECD, 2012).

4) 평가 인증

2006년부터 통합된 평가인증제도는 17개 영역, 61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모든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으나 2012년 개혁 이후는 7개 영역의 23개의 준거 당 2~6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평가 인증도 4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미흡)으로 이루어졌으나 2012년 국가 품질 체계가 실행되면서 각 영역별 등급은 최우수(Excellent), 우수(High Quality), 보통(National Quality Standard), 노력 중(Operating level), 불충분(unsatisfactory)의 5단계로 나누어 공개하게 되었다.

라. 소결

호주의 보육서비스는 종일제 보육, 방과후 보육, 가정 보육, 일시 보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 유형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공립 시설보다는 개인이나 민간 보육서비스가 발달한 나라이다. 또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공급 속에는 특수 영유아, 소외지역의 영유아와 원주민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위한 접근성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평가인증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호주 보육시설 인증제도를 국가 인증으로 만들어 보육 품질의 향상에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좀 더 세분화된 평가 등급을 제시하고 국가 품질 체계로 전환하여 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4. 일본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가. 보육정책 개요

1) 보육정책의 변화

일본의 보육정책은 1990년대 이후 출생률은 낮아지고 급속한 고령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1994년 12월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으로 보육, 고용, 교육, 주택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인 '엔젤플랜'을 발표하였다. 엔젤플랜은 문부(교육)성, 후생성, 노동성, 건설성 등 4개 부처의 합의 하에 만들었고, 이어서 엔젤플랜을 정비하여 1999년에는 대장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건설성, 자치성의 6부처가 합의한 '소자녀화대책의 구체적인 실시계획'(2000~2004년도의 5개년 계획)인 신엔젤플랜을 제시하였다. 신엔젤플랜에서는 엔젤플랜의 계획을 한층 심화하여 보다 많은 보육소를 설립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용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보육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일시 보육, 질병 중인 영유아보호, 영유아건강지원, 다기능 보육소 등 다양한 시설과 함께 이용시간대를 다양화하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녀양육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1월에는 새로운 위원회를 통해 영유아와 보육의 미래(Vision for child and childcare vision)비전을 수립하였다. 이어

서 영유아 보육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마련을 위한 기본 계획을 시도하고 있다.

2) 행정전달체계

일본의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지원기관은 유치원과 보육소가 있으며, 유치원은 학교 교육기관으로, 보육소는 영유아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정착되었다. 이에 대한 관할 부처도 교육성과 후생노동성으로 나누어 각각 유치원과 보육소를 관장하는 이원화된 행정 체계 내에서 영유아를 교육·보육하고 있다. 보육 및 자녀양육지원 서비스는 후생노동성의 고용균등·아동가정국 주도 하에 국가 중앙차원, 도도부현, 시구정촌 차원의 3단계 전달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차원의 보육 및 자녀양육 지원서비스는 후생노동성의 고용균등·아동가정국에 의해 전달된다. 담당부서인 고용균등·아동가정국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보육 및 자녀 양육문제를 고용정책과 연관시켜 가정을 단위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하며 이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상시 다른 부서와의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보육소 서비스 제공과 보육소 입소에 관한 내용을 책임진다(홍금자, 2006). 도도부현의 첫 전달체계는 동경도를 지칭하는데, 동경도에는 23개구를 포함하는 시로서의 기능과 광역 행정단위이다. 도도부현에서 보육 및 자녀양육 전달과 관련된 상부체계는 보건복지국으로서 그 아래 소자사회대책부가 있다. 소자사회대책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계획과, 지원책, 자녀양육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현(縣) 차원의 전달체계는 도도부현보다 작은 지역을 의미하고, 보육 및 양육 관련 서비스는 건강복지국의 하부체계와의 연계로 진행한다(홍금자, 2006). 시정촌은 보육이 필요한 부모와 영유아들에 대해 입소신청을 받고 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적절한 보육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시정촌은 보육소 입소, 최저기준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재원 확보가 주된 업무이다.

나.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1) 보육서비스 유형

일본의 보육시설은 보통 인가 보육시설과 인가 외 보육시설로 구분된다. 인가 보육시설의 경우 대부분 지방정부와 사회복지법인이 공급 주체로서 종일제를 기본으로 운영하며 시간제보육, 야간보육, 영아보육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

스를 제공한다. 또한 인가 보육소는 취업모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기 영유아가 해소되는 지역의 시설에는 미취업모의 자녀도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유해미·유희정·장경희, 2011). 일본의 보육체계는 공보육체계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주로 공영보육시설 주를 이루어 왔다. 최근 공영 보육시설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민영 보육시설은 지난 6년간(2005~2010)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다음 <표 II-4-1>에 잘 나타나 있다. 2010년 일본의 인가 보육시설 23,068 개소 중 46.7%(10,766 개소)가 공영 보육시설이고 53.3%(12,302 개소)가 민영 보육시설이다.

<표 II-4-1> 일본 인가 보육소 수 변화 추이(2005-2010)

단위: 개소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시설수	22,624	22,720	22,838	22,898	22,250	23,068
공영	11,752	11,510	11,240	10,935	10,380	10,766
민영	10,872	11,210	11,598	11,963	11,870	12,302

자료: 日本 保育研究所(2011). 保育白書 2011.

일본 인가보육소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시정촌이 운영하는 공영 보육시설은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민영 사회복지 법인, 학교 법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민영 보육시설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영시설은 81.9%가 시·정·촌에서 설치, 운영한다. 2010년 기준으로 민영 보육시설은 89.6%가 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그 이외의 시설도 8.6%가 법인이 설치하였으며 1.4%만이 개인이 설치자이다. 일본 보육소 시설 설치, 운영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주체는 대기 영유아가 많은 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주식회사, 기타 법인, 농협 등에 한정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2000년까지는 민영 시설들이 소수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부터 2008년 4월까지 8년 동안 민영화 시설은 약 1,772건으로 공립시설의 약 13.9%가 민영화되었으며, 특히 498개소는 법인으로 되었다(保育研究所, 2010; 서문희·양미선·송신영, 2011, 재인용).

〈표 II-4-2〉 일본 인가 보육소 설치 및 운영 주체(2007-2010)

단위: 개소

전체	시정촌	사회 복지 법인	사단 법인	재단 법인	학교 법인	종교 법인	NPO	주식 회사	개인	기타	계
2007	11,603	10,163	4	227	171	277	54	118	212	19	22,848
2008	11,328	10,417	20	220	227	266	59	149	201	22	22,909
2009	11,008	10,703	11	210	266	268	66	157	190	46	22,925
2010	10,766	11,026	6	197	321	260	66	215	176	35	23,068

자료: 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2011). 保育白書 2011.

인가 외 보육시설을 살펴보면, 베이비호텔 1,695개소에 30,712명, 기타 인가 외 시설 5,705에 148,964명의 아동이 취원 중이다. 이들은 총 7,400여개소로 약 18만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보육인 사업소 내 보육시설 3,988개로 58,222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에는 인가 외 보육시설이 전체 7,284 개소이고, 1776,421명인 것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감소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표 II-4-3〉 일본 인가 외 보육시설 현황(2010. 3)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보육영유아수
베이비호텔	1,695	30,712
기타 인가 외 보육시설	5,705	148,964
계	7,400	179,676
사업소내 보육시설	3,988	58,222

자료: 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2011). 保育白書 2011. p.248

2) 보육서비스 이용

일본의 보육소는 앞서 보았듯이 2000년대 이후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0년 보육소는 23,068개소, 2,157,890명의 정원에 이용 영유아 수는 2,080,114명으로 나타났다. 대기 영유아가 26,275명으로 나타나 대기 영유아 수는 2005년 이후로 계속 증가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보육소 부족으로 보육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가 발생하여, 일본 보육에서 대기 영유아수를 줄이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표 II-4-4〉 일본 보육소와 대기 영유아 수

단위: 개소, 명

년도	시설 수	정원 수	이용 영유아 수	대기영유아	
				구정의	신정의 ²⁾
2005	22,570	2,052,635	1,993,796	43,434	-
2006	22,699	2,079,317	2,004,238	-	19,794
2007	22,848	2,105,254	2,015,337	-	17,926
2008	22,909	2,120,934	2,022,227	-	19,550
2009	22,925	2,132,081	2,040,971	-	25,384
2010	23,068	2,157,890	2,080,114	-	26,275

자료: 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2011). 保育白書 2011. 통계자료, p.242

2011년 인가보육시설 이용률은 영아 24.0%, 유아 42.4%로 전년 대비 조금씩 증가한 셈이다. 즉, 앞서 대기 영유아 수가 해소가 일본 보육의 당면과제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영유아의 보육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II-4-5 참조). 이러한 대기영유아 해소 방안으로 일부 시정촌에서는 가정보육모 제도를 지방정부 사업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기준으로 보육시설이나 보육실을 인증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시설인 인정아동원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지역에 따라서 개인에게 민간보육소를 인가하기도 한다(유해미·유희정·장경희, 2011).

〈표 II-4-5〉 일본 인가 보육소 이용률

단위: 명(%)

구분	2011	2010
3세 미만	773,311(24.0)	742,085(22.8)
0세아	105,366(9.8)	99,223(9.2)
1~2세	667,945(31.0)	642,863(29.5)
3세 이상	1,349,640(42.4)	1,338,029(41.7)
전체	2,122,951(33.1)	2,080,114(32.2)

자료: 후생노동성(2011). 보도자료.

2) 대기영유아수의 신정의란 구정의를 새롭게 한 것으로서 ① 입소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있음에도 특정한 보육소를 희망하는 경우, ② 인가보육소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보육실 등의 인가 외 보육소, 가정보육시설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인정아동원’은 유치원 또는 보육소 등이 각각의 고유한 역할 이외에 서로의 교육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법적 시설을 의미한다. ‘인정아동원’은 설치자가 다른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상호 제휴·협력하는 ‘유보(幼保)제휴형’, 유치원이 보육 기능도 함께 가지는 ‘유치원형’, 보육시설이 유치원의 기능을 함께 가지는 ‘보육소형’, 그리고 지방의 특성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소 기능을 공동으로 가지는 시설을 새로이 마련하는 ‘지방재량형’의 4가지 유형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인정아동원을 통해 모든 보육소와 유치원을 통합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지만, 인정원의 설치 수는 증가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활성화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였다(유해미·유희정·장경희, 2011).

〈표 II-4-6〉 일본 인정아동원 현황(2008-2011)

단위: 개소

	인정 건수	공·사 구분		유형별			
		공립	사립	유·보제휴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재량형
2008	229	55	80	104	76	35	14
2009	358	87	271	158	125	55	20
2010	532	122	410	241	180	86	25
2011	762	149	613	406	225	100	31

자료: 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2011), 保育白書 2011.

다. 보육서비스 질 관리

일본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는 법적 규정을 통한 질 관리와 평가에 의한 질 관리를 실시하여 왔다.

1) 법적 규정

일본의 보육소 최저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나 동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보육시설 최저기준은 설치, 설비 등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력 배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대기 아동 문제의 해법을 보육소 최저기준을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보육소 최저기준

을 폐지하고 지방 조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관련법령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기준 완화는 보육의 거실 면적 기준 완화를 허용하는 것과 같이 어린이의 안전, 성장과 발달을 큰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후생노동성, 2012).

2) 보육과정

보육과정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의 영역을 살펴 보면, 일반적 규정, 아동발달, 탁아 교육 내용, 계획과 평가 보육, 건강과 안전, 부모와 교직원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유치원 교육과정 내용과 5개 영역은 동일하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교육과정 개혁을 위해 유치원 교육과 탁아 보육의 준거를 검토하여 2008년에 개정하였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최소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내용을 일반화하였다(OECD, 2012).

3) 지도·점검

법적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복지법인 감사요강, 일반감사요강, 특별 감사요강」에 기초하여 2년에 1회 이상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의 내용은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보육아동을 받아들이는 체제, 직원의 취업·노동 조건, 건물·설비의 관리, 비상재해, 위해 관리, 보육 내용, 재무관리 등이다. 이를 통해 법적 규정의 실행 여부를 지도하고 점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유해미·유희정·장경희, 2011).

4) 평가

평가에 의한 질 관리로서 제3자 평가제도가 있다. 제 3자 평가제이란 정부가 선정한 제 3자 평가기관이 후생노동성의 평가기준에 보육소 자체평가, 이용자 조사, 평가조사자의 현지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평가는 2003년까지 주로 자기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보육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자기평가를 위한 리스트'로 만들어 각 보육소에 배부하고 원장과 보육교사 등이 각각 기록한 것을 평가 근거로 활용해 왔다(유해미·유희정·장경희, 2011; 윤혜경, 2008). 2008년 제 3자 평가의 체계구조를 활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이루고자 하였다. 평가 내용은 '보육소보육지침'을 근거로 복

지서비스의 기본방침과 조직, 조직의 운영관리,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실시의 3개의 기준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에서 착안한 55개의 공통 항목과 시설 종류별로 설치되는 34개의 항목을 합한 89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윤혜경, 2008). 이 제도는 외부기관이 개입되어 직원들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을 검토하게 된다는 점은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대변하지 못하고, 평가 방법이 너무 근시안적이라는 것, 공보육 체계를 유지하던 보육을 시장화하려 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윤혜경, 2008)는 것이다. 이어 2005년부터 수정된 신기준에 의해 개선은 되었으나 2006년 이후로 발전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유해미·유희정·장경희, 2011).

라. 소결

일본의 보육서비스는 인가 보육소가 인가 외 보육소의 3배에 이르며, 종일제 외에 시간제 보육, 야간 보육, 영아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보육 서비스는 공보육적인 요소들이 많았으나, 최근 민영 보육 시설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기 아동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서 보육을 시장화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해석되며, 보육의 질 관리에 관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을 규정화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자기 평가와 제 3자 평가를 통해 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5. 스웨덴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가. 보육정책 개요

1) 보육정책의 변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로서 공보육을 통해 가장 진보적인 보육제도를 발전시킨 나라이다. 가족의 형태 변화를 반영하여 동거법을 통과시키고 형제자매들의 관계를 보완하기 위해 혼합연령반도 구성하였다. 부모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가족지원정책과 보육제도를 발달시켜왔던 초기의 입장에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공보육체계로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권정윤·한유미, 2005). 1990년대 후반 출산율의 회복과 경기가 살아나면서 1~5세 아동을 위한 유아학교는 교육제도로 전환하였고 유아학교를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질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전개해 왔다. 2001년 이후는 유아학교법과 학교법의 통합 방안을 연구하였고 2003년에는 만 4세와 5세 아동에게 보편적인 무상 유아교육을 연간 525시간 제공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후에는 유아학교 교직원 증가를 위한 특별교부금이 할당되었다(박창현·박선영·김영주·윤경옥, 2010).

2) 행정전달체계

스웨덴은 1996년 만 1~6세 아동의 보육업무와 유아교육을 보건사회부에서 교육과학부로 이관하고 1998년에 관련법규를 사회사업법(Social Service Act)에서 학교법(School Act)으로 변경하여,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구분을 없애고 1998년부터 국가수준의 보육목표와 지침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 퍼르스콜라에서 보육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문무경, 2006). 1998년부터 교육부 소관인 국립교육원(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에서 영유아 기관 평가, 연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국립학교진흥원(National Agency for School Improvement)을 두어 종전에 국립교육원에서 하던 지원 활동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권정윤·한유미, 2005; 문무경, 2006).

기본적인 보육정책은 국가에서 수립하지만,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감독 등 실질적인 보육업무는 289개의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역할은 아동들이 빠른 입소를 도와주며, 지역 내의 보육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지자체는 원장을 임명하고 보육 교사를 양성, 재교육하고, 재정적 지원과 부모부담 보육료를 결정하고 보육시설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들에 관여한다(권정윤·한유미, 2005).

나.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1) 보육서비스 유형

스웨덴 보육 서비스는 교육법에 의해 공보육이 보장되어 부모가 일과 학업을 할 수 있고 아동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1~12세 아동들에게 유아학교 활동(Preschool Activiires)과 보육을 제공한다. 최근 유아학교 활동과 보육이 급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유아학교 활동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유아학교, 교육적 보육(Pedagogical care), 개방형 유아학교로 이루어져 있다. 피르스콜라로 불리는 유아학교는 1살부터 5세 까지 정규교육을 시작할 때까지의 교육 활동을 제공하며, 개방형 프리스쿨은 미취업모 가정의 자녀를 위한 것이고 교육적 보육은 가정보육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여러 가지 교육적 보육의 하나를 의미한다(Skolverket, 2012). 스웨덴의 보육서비스 유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동이 공립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유아학교 이용 아동이나 가정보육 이용 아동의 다수가 공공서비스이고 사립서비스 이용 아동은 소수이다. 2008년 현재 시설은 유아학교 74.9% 레저타임센터 87.2%가 공립시설이고 아동은 각각 82.0%, 90.9%가 공공시설을 이용한다. 가정보육도 아동의 82% 이상이 공공서비스 이용자이다(표 II-5-1 참조). 전반적으로 공보육 이용률이 높다.

〈표 II-5-1〉 보육서비스 유형

단위: %

구분	수(비율)		
	유아학교	가정보육	레저타임
시설	9,949(100.0)	-	4,299(100.0)
공립	7,447(74.9)	-	3,748(87.2)
사립	2,503(25.2)	-	551(12.8)
아동	432,621(100.0)	22,762(100.0)	346,130(100.0)
공립	355,616(82.2)	18,743(82.3)	314,776(90.9)
사립	78,007(18.0)	4,019(17.7)	31,354(9.1)

자료: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2009). Children, pupil, and staff National Level. Report 331. <http://www.skolverket.se/2.3894/publicerat>

2) 보육서비스 이용

가) 피르스콜라(förskola: Preschool)

초등학교나 유아학급에 다니기 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육시설로 종일제이다. 대상연령은 만 1~6세이며 일하는 부모에 맞추어 운영된다. 대부분 1~4개의 학급이 있으며, 각 학급의 평균 인원은 15명이다. 각 학급에는 일반적으로 2명의 정교사와 1명의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정교사의 경우 적어도 1명은 유아교사 자격 소지자이다(문무경, 2006). 주요 프로그램은 비형식적 활동, 놀이중심 활동, 자연친화적 활동, 부모의 적극적 참여이다(권정운·한유미,

2005). 최근 지역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2010년 전체 프리스쿨의 19%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학급 평균 인원은 16.9명이고 56%는 17명, 21명 이상도 18%로 보고된다(Skolverket, 2012).

〈표 II-5-2〉 프리스쿨라 아동 수 변화(2005~2010)

단위: 명

연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만7세	총계
2005	8	42,866	81,997	83,479	84,208	84,562	1,612	217	378,954
2006	10	44,538	85,618	88,373	89,528	86,436	1,530	198	396,231
2007	11	49,326	88,217	92,057	93,954	91,441	1,591	344	416,941
2008	6	50,270	93,470	94,065	97,045	95,820	1,571	339	432,586
2009	7	52,068	95,138	99,063	98,886	98,916	1,621	381	446,080
2010	15	53,171	97,436	101,846	103,451	100,243	1,499	335	457,996

주: 만 0, 6, 7세에 대한 데이터도 있으나, 주요 대상 연령은 만 1~5세임.

자료: Sveriges officiella sttistik(2012). Statistical Yearbook of Sweden 2012. (Table 22.8)

나) 가정보육(Familjedahem: Family daycare)

보육시설의 대안적인 형태이며, 대상연령은 만 1~12세 아동이며, 운영시간은 부모의 근무시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된다. 아동보육사의 가정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보육사 자녀도 함께 돌보는 경우가 많다. 공·사립 가정 보육모에 의해 지원되고 공립가정보육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고용되고 급여를 받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취학 전 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보육 이용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권정윤·한유미, 2005; 문무경, 2006).

〈표 II-5-3〉 가정보육 아동 수 변화(2005~2008)

단위: 명

연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6세	만 7~9세	만 10~12세	총계
2005	22	4,109	7,183	6,828	6,022	5,435	977	1,987	527	33,090
2006	2	3,622	6,728	6,584	5,970	4,955	865	1,610	454	30,790
2007	-	3,590	5,869	5,932	5,469	4,728	649	1,297	353	27,887
2008	2	3,047	5,469	5,098	4,844	4,302	571	1,107	263	24,703

자료: Sveriges officiella sttistik(2012). Statistical Yearbook of Sweden 2012. (Table 22.8)

다) 교육적 보육(Pedagogisk omsorg: Pedagogical care)

만 1~12살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아동의 미래 학습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현재의 학습과 발달을 도와주는 시설이다. 2009년 7월 1일 스웨덴 교육법에 의거해 가정보육(Family daycare)의 개념을 교육적 내용(Teaching)으로 전환하면서 교육적인 내용을 강조하게 되었다. 시설 종사자의 가정 혹은 다양한 복합형 가정보육시설에 등록된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의미가 포함된 활동을 제공한다(Skolverket, 2012).

〈표 II-5-4〉 교육적 보육 이용 아동 수(2009~2010)

단위: 명

연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6세	만 7~9세	만 10~12세	총계
2009	-	2,793	4,848	4,774	4,175	3,800	487	943	294	22,114
2010	3	2,610	4,488	4,391	4,031	3,298	455	872	290	20,438

자료: Sveriges officiella sttistik(2012). Statistical Yearbook of Sweden 2012. (Table 22.8)

라) 개방형 프리스콜라(Oppen förskola: Open preschool)

개방형 프리스쿨은 전업부모나, 가정보육모와 그들의 아동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 기관으로 부모나 가정보육사가 양육하는 아동들에게 사회적, 교육적 자극을 제공한다. 처음에 개방형 프리스쿨을 가기 전에 기다리는 곳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시간제로 운영되고, 시설마다 주 이용 횟수와 운영시간이 다르나 점차 운영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비취업·육아휴직 및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적 네트워크 역할을 하기도 한다(권정윤·한유미, 2005; Skolverket, 2012).

〈표 II-5-5〉 프리스콜라의 이용 아동 수

단위: 명

구분	시설	공립	사립
2008	97,587	89,452	8,135
2009	100,283	91,590	8,693
2010	103,529	94,002	9,437

자료: Sveriges officiella sttistik(2012). Statistical Yearbook of Sweden 2012. (Table 22.8)

마) 유아학급 (förskoleklass: Preschool class)

유아학급은 공립학교 체계에서 자발적인 학급이며 만 6~7세를 위해서 개설되었으나, 주로 만 6세(98%)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내용은 다른 학교의 내용과 유사하다. 지자체는 모든 6세 아동에게 525시간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2011년도 전국에서 유아학급은 가능하며, 2010년에 등록한 아동은 103,500명이며 전체 유아학급에 등록한 아동의 95.8%이다(Skolverket, 2012).

〈표 II-5-6〉 유아학급의 이용 아동 수(2005~2010)

단위: 명

연도	만5세	만6세	만7세	총계
2005	853	86,443	1,111	88,407
2006	794	89,968	1,138	91,900
2007	963	91,261	1,169	93,393
2008	1,001	95,185	1,401	97,587
2009	1,001	98,178	1,104	100,283
2010	922	101,563	1,044	103,529

주: 만 5, 7세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나, 주 대상 연령은 만 6세임.
 자료: Sveriges officiella sttistik(2012). Statistical Yearbook of Sweden 2012. (Table 22.8)

다. 보육서비스 질 관리

스웨덴에서 보육시설은 다른 정규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체계 안에 포함되고 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교육법은 부모가 1~12세 아동에게 보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2003년 이후는 4~5세의 모든 아동에게 연간 525시간 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강조한다. 또한 교육법은 보육시설의 운영과 규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처음에는 권고의 형식을 띄웠으나 최근에는 공립과 사립의 질을 같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권정윤·한유미, 2005).

1) 법적 규정

먼저, 법적 규정에 의한 질 관리를 위해서 스웨덴은 교육법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지표를 다루고 있는 특별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경력교사의 필요성, 집단의 크기와 구성 등에 대한 적절한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물과 특수한 요구를 가진 아동들에 대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보육과정

1998년에는 초·중등학교들의 교육수준과 독립된 국가수준의 취학 전 교육과정을 최초로 만들었다. 이는 보육의 지위를 초·중등학교 수준과 동등하게 만든 것이며 보육의 질을 높이기 된 계기가 되었고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도 가능하게 되었다(권정운·한유미, 2005; OECD, 2012). 중앙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목표를 제시하고 지방단체는 중앙의 결정 사항을 실행한다.

3) 지도·점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스웨덴의 국가정책은 교육연구부가 결정하고 국립교육원의 중앙과 지방수준에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이 실시된다. 국립교육원은 공교육과 피르스콜라와 방과 후 보육 서비스에 관한 전체 평가, 자료수집 및 관리와 감독을 담당한다. 또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으며 직무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제와 감독을 한다(문무경, 2006; 장명림 외, 2009).

4) 평가

또한 관리와 감독 외에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 체계를 2003년부터 의무화하여 6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기관 자체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국가수준의 평가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평가 내용은 결과영역, 활동영역, 상태영역 세 가지로 구분 평가한다(장명림 외, 2009).

라. 소결

스웨덴의 보육서비스는 보육과 교육이 일원화된 체계 속에서 보육과 교육이 완전히 통합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육정책의 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에서 큰 틀은 제공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즉각적인 보육 수요에 대처하고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결정하고 담당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공립으로 운영되어 사립시설의 이용율은 소수로 나타났으며 일찍이 공보육의 체계를 갖추고 공공 보육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지원을 도와주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저출산 문제,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력 단절 해소, 국민의 기본권, 아동의 인권 존중 등 사회적, 행정적, 여성학적, 교육적, 경제적 관점 나아가 한 인간의 전 생애 발달의 관점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의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보육의 문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재정 투자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며 유능한 미래의 국가인력을 확보하려는 사회적 투자의 가치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OECD는 최우선 국정 과제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미래의 투자라는 인식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이용에 관한 세 나라의 내용의 요약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현실과 질적인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나라의 보육 정책은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그 나라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선택하게 되고,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한다는 것이다. 호주는 보육의 인프라가 견고하지 않은 나라로서 평가를 발달시켜오고 있고, 일본은 공적보육에 기초하였으나 최근에는 보육을 시장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공보육에 충실하나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0년대 이후로 기관보육을 이끌어 왔고 보육에 대한 책임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3·4세 영유아 무상보육과 교육, 양육수당의 논의에 이르는 영유아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할 때, 그동안 양적 확대를 지속해 온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향점으로서 공보육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의 취업과 양육의 병행을 지원할 수 있고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러 국가들의 보육서비스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시설보육 수준이나 이용율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육서비스의 다양성이나 탄력적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더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국가들도 종일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유사하나 야간 보육, 일시 보육, 가정 보육 등에 대한 규정과 운영 내용에 있어서는 훨씬 탄력적이다.

셋째, 민간 위주의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급구조를 바

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스웨덴은 보육시설의 많은 부분을 공공부문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 보육시설에도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와 감독도 함께 진행하였다. 보육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임과 주도적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서비스의 이용 가능성과 비용 적절성을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충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북부 유럽의 보육서비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공공부문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더라도 국가적인 보육 품질 체계는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민영화된 보육 시설이 많고 질 관리가 어려울 때 국가적인 보육 품질 관리를 통한 규정 제공, 인센티브의 제공과 모니터링을 한다면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평가인증제도와 서울형 어린이집 또는 지방형 공인 어린이집의 경우는 민간공급이 많은 현실에서 적절한 질 관리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보육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현재의 보육서비스를 돌아보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의 방향성을 새로이 정립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방향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새롭게 제기되는 보육 욕구와 질적인 향상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III. 보육교직원의 자격과 관리

본 장에서는 OECD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 회원국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책 현황 및 개선 노력을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육교직원의 상황을 비교한다. 또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국가로 영국과 핀란드 보육현황과 보육정책을 보육교직원 중심으로 고찰한다. OECD 회원국은 아니나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 교사교육이 통합 운영되는 싱가포르 사례를 부록에 소개한다.

1. OECD 회원국 보육교직원 자격과 관리

가. 보육교직원 유형

OECD 회원국의 영유아 대상 서비스 교직원은 보육교사(Child care worker), 유아교사(유치원 또는 preschool 교사), 가정보육사(Family and domestic care worker), 전문교육사(Pedagogue), 보조교사(Auxiliary staff) 등으로 대략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보육 관련 교직원 유형은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OECD 회원국 보육분야의 교직원 유형

명칭	내용
보육교사 (Childcare wor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의 자격은 국가에 따라 또 서비스에 따라 다름 - 일반적으로 보육교사는 상위중등교육이나, 직업교육수준의 직업훈련학위를 소지함 - 많은 국가에서 중등교육 후 1~2년간 고등교육수준의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전문교직원들이 있기도 함
가정보육사 (Family and domestic care wor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을 방문하거나 자가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 - 인증되거나 등록된 보육모 가정이나 아동 가정 같이 가정(home setting)에서 근무 - 유치원 입학 전 연령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보육유형
보조교사 (Auxiliary sta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수준에서 훈련된 많은 유형의 보조교사들이 근무 - 일반적으로 보조교사에게는 정식자격을 요구하지 않음 - 북유럽 국가들에서 근무하는 보조교사의 경우는 2년 정도 상위중등 직업교육을 받기도 함

자료: OECD Network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s "Survey for the Quality Toolbox and ECEC Portal", June, 2011; OECD Family Database, 2010.

나. 보육교사 자격기준

양질의 보육경험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지의 사실이다. 교사의 자격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소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뜻한다. 보육과 유아교육교사 자격기준으로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³⁾ 3~5수준을 보편적으로 요구한다. <표 III-1-2>는 OECD 회원국의 보육과 유아교육 교사에게 적용하는 국가별 자격기준을 보여준다. 전체 OECD 회원국의 자료는 <부록 3>에 수록하였다. 영유아 대상 서비스가 보육과 유아교육으로 이원화된 국가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부분 교사의 최소 자격기준이 5수준으로 3수준을 요구하는 보육교사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III-1-2〉 OECD 회원국 영유아 대상서비스 교직원의 필수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수준

	보육교직원	유아교육 또는 유아교육과 보육통합 교직원	의무교육						
	유아 연령								
국가	0	1	2	3	4	5	6	7	
호주	보육교사(4)/ 어린이집 원장(5)								
	유치원 교사(5A) Preschool/Kindergarten Teacher								
핀란드	유치원의 보육교사(직원의 2/3는 최소 3수준을 갖추어야함)								
	유치원교사(5B) Kindergarten Teacher						유치원 교사(5B) pre-primary		
독일	보육교사(3) Childcare Worker								
	교사(4A) Pedagogue								
	유아교사 또는 사회 교사 Pedagogue for childhood or social pedagogue(5)								

3)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 0수준(Level 0): 취학전 교육(Pre-primary education)
- 1수준(Level 1): 초등교육 또는 기초교육 1단계
- 2수준(Level 2): 전기 중등교육 또는 기초교육 2단계
- 3수준(Level 3): 후기 중등교육
- 4수준(Level 4): 중등교육 후 비고등교육
- 5수준(Level 5): 제1차 고등교육
- 6수준(Level 6): 제2차 고등교육

(표 III-1-2 계속)

국가	유아 연령							
	0	1	2	3	4	5	6	7
이탈리아	교육자(어린이집)(5B) Educator			유치원교사(6) Pre-primary Teacher				
일본	보육교사(5B) Nursery Teacher			유치원교사(5B) Kindergarten Teacher				
한국	보육교사(3) Child care Worker			유치원교사(5) Pre-primary Teacher				
스페인	유아교사(5B) Early education teacher			유치원교사(5A) Preschool Teacher				
스웨덴	보육교사(3) Child minder			유치원교사(5A) Preschool Teacher				
영국 (스코틀랜드)	보육종사자(5) Child care Practitioner			유치원 교사(5) Preschool Teacher				

자료: OECD Network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s "Survey for the Quality Toolbox and ECEC Portal", June, 2011.

위 자료를 축소 편집함. 원자료는 부록 3에 수록함.

다. 보육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

1) 양성교육

보육과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취득 준비교육이 양성교육이다. 이는 자격기준에 따라 교육연한과 시간, 그 운용 방법에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통합된 공통 양성과정을 지닌 국가에서는 보육과 유아교육 교사 모두에게 동일한 양성과정 안에서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국가별 교원양성 통합유형에 따라, 근무하는 현장 상황에 맞게 양성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으로 전공을 구분하여 선택할 수도 있다(최윤경·문무경·원종욱·김재원, 2011). 또한 네덜란드, 호주,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유아교사와 초

등교사의 양성교육이 통합되거나, 통합 운용하며 세부전공을 선택하기도 한다. <표 III-1-3>은 OECD 회원국의 보육과 유아교육 교사 양성교육의 분리 여부를 보여준다. 교사 양성교육이 통합 운영되는 국가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보육교사와 유아교육교사의 양성과정은 분리 운용됨이 보편적이다. OECD 회원국의 교사용형에 따른 교육주체와 교육시간 등 양성교육 운용현황을 <부록3>에 소개한다. 교사 양성교육이 다양하게 마련될수록 학습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표 III-1-3> OECD 회원국의 영유아 대상 서비스 교사 양성교육의 분리여부

통합	분리
체코, 덴마크, 핀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호주, 벨기에, 브리티시컬럼비아(캐나다), 독일, 헝가리, 한국, 매니토바(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프린스 에드워드 섬(캐나다), 슬로베니아, 스코틀랜드(UK)

자료: OECD Network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s "Survey for the Quality Toolbox and ECEC Portal", June, 2011.

2)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보수교육을 통해 현장 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의무화함으로써 교사 직무에 대한 유능감과 자신감을 함양할 수 있다. OECD 회원국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정부와 고용주, 대학/전문대학 비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수교육을 한다. 또한, 보수교육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더 많은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III-1-4>는 OECD 회원국 보수교육 유형을 보여준다.

보수교육은 세미나, 워크숍, 현장 지도, 정식 연수 코스 등의 형태로 정부나 고용주, 학교, 비정부 기관 등에서 제공한다. 주제도 교육과정, 모니터링, 건강, 의사소통, 교수방법 등 다양하다. 세미나, 워크숍, 정식훈련 과정 같은 면 대 면 교육과 사이버 공간을 통한 온라인 교육 등이 진행된다. 유형마다 장단점이 있어 교사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더 효과적인 유형이 있는데, 온라인 보수교육은 교사가 가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세미나와 워크숍은 단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집합보수교육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직접 학습에 참여함으로 효과가 높다.

〈표 III-1-4〉 OECD 회원국 영유아 대상 서비스 교직원의 보수교육 유형 및 구조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훈련 프로그램 형태 및 구조	세미나/워크숍	호주, 핀란드, 프랑스 지역(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코틀랜드(UK), 스페인	호주, 핀란드, 프랑스 지역(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코틀랜드(UK), 스페인
	현장 멘토링	호주, 핀란드, 플랑드르 지역(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코틀랜드(UK), 스페인	호주, 핀란드, 조지아(미국), 이탈리아, 일본, 스코틀랜드(UK), 스페인
	온라인 교육	호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호주, 이탈리아, 한국, 스코틀랜드(UK), 스페인
	정식 교육과정	호주, 핀란드, 영국(UK), 프랑스 지역(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코틀랜드(UK), 스웨덴	호주, 영국(UK), 핀란드, 이탈리아, 스코틀랜드(UK), 스웨덴

자료: OECD Network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s "Survey for the Quality Toolbox and ECEC Portal", June, 2011. 위 자료를 축소 편집 함. 원자료는 부록에 수록함.

OECD 회원국들은 교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교육 이수 시 생기는 급여 손실분을 보상하거나, 더 상위 자격을 얻을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수 참여 위한 시간 제공하고, 승진이나 급여를 인상하는 등 다면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보육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이수비용에 대한 지원, 더 상위 자격을 얻을 기회부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가 참여하도록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 등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기회는 보육 교사나 가정 보육모보다 유아교육 교사에게 더 많이 있다. <표 III-1-5>에서와 같이 핀란드,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5〉 보수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와 유아교육 교사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종류

	교육 비용 지원		부분 급여 지급		상위 자격 통로		학업 휴직		급여 인상 /승진	
	보육	유아 교육	보육	유아 교육	보육	유아 교육	보육	유아 교육	보육	유아 교육
호주	●	●								
영국	●	●								●
핀란드	●	●	●	●	●	●	●	●		
독일							●	●	●	●

(표 III-1-5 계속)

	교육 비용 지원		부분 급여 지급		상위 자격 통로		학업 휴직		급여 인상 / 승진	
	보육	유아 교육	보육	유아 교육	보육	유아 교육	보육	유아 교육	보육	유아 교육
이탈리아							●	●		
일본	●	●		●		●		●		
한국	●	●								●
네덜란드	●	●	●	●	●	●	●	●	●	●
스페인	●	●			●	●	●	●	●	●
스웨덴	●	●	●	●	●	●	●	●		

자료: OECD Network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s "Survey for the Quality Toolbox and ECEC Portal", June, 2011.

위 자료를 축소 편집함. 원자료는 부록에 수록함.

3) 자격 갱신

교사의 자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주요 방법으로 국가마다 자격 갱신 기준이 다르다. <표 III-1-6>에서와 같이, 유아교육교사에 대해서 자격 갱신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많은 반면,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갱신을 위한 기준이 없는 국가도 많다.

<표 III-1-6> 유아교육과 보육 교직원 유형에 따른 자격 갱신 기준

	유치원/ 취학전 교육 교사	보육 교직원	가정 보육사
5년 이상마다	플랑드르 지역(벨기에), 일본		
5년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캐나다), 미국(조지아, 매사추세츠,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브리티시컬럼비아(캐나다), 스코틀랜드(UKM)	독일
4년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프린스 에드워드 섬(캐나다)
1년마다			매니토바(캐나다)
갱신기준 없음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한국, 매니토바(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한국, 멕시코, 매니토바(캐나다), 일본	핀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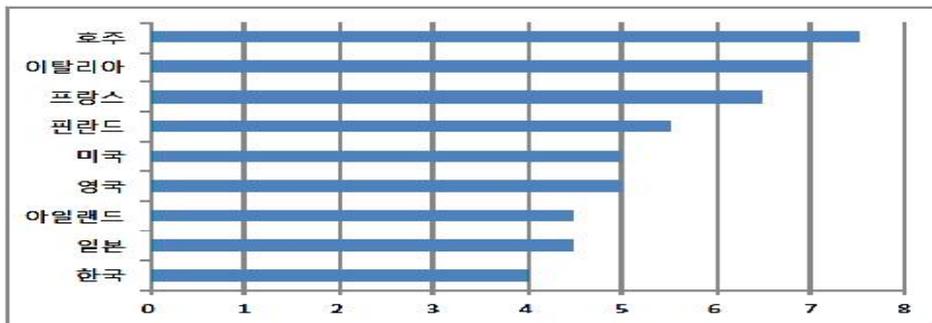
자료: OECD Network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s "Survey for the Quality Toolbox and ECEC Portal", June, 2011.

라. 근무환경

교사 근무환경의 지표로 교사 대 아동비율, 보육 현장의 다문화 경향, 교사 연령과 성비를 살펴본다. ‘급여’ 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한 교사 근무환경 지표가 될 수 있으나 국가별 비교를 위해 유사한 기준으로 구성된 자료를 찾기 힘들다.

1)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교사의 근무환경을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이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낮을 경우 더 많은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영유아와 교사 모두에게 양호한 환경으로 여겨진다. 0~3세를 기준으로 정규 보육서비스의 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 비율을 확인하면 [그림 III-1-1]과 같다.



자료: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의 자료를 재구성함.

Data for pre-school drawn from the EDU database - MH, April 2009

[그림 III-1-1] 0~3세 영유아를 위한 정규보육 서비스에서 교사 1인당 아동비율

2) 다문화 배경을 지닌 아동에 대한 배려

세계화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선택과 이동과 자유로워지면서 OECD의 많은 국가에서 1990년~2010년 사이 다문화 배경을 지닌 가정과 영유아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육 현장에서 교사에게 새로운 역량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 이해와 다문화 가정 부모와의 의사소통, 영유아를 위한 다문화 배려 등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보수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고령화 문제와 여성 편향성

OECD 회원국의 보육과 유아교육교사 연령 분포는 30세 이하부터 50세 이상까지 다양하다.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고령화 추세에 따라 그 평균연령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가정보육을 중심으로 한 보육교사 연령이 유치원교사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자교사의 비율이 극히 낮다. OECD의 자료를 중심으로 유아교육부터 대학까지의 전체 교직 근무자 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이 66%이다. 그러나 더 어린 연령의 아동을 대하는 교사일수록 여성 편향성이 심각하여 취학 전 아동의 수준에서는 97%에 달한다.

마. 소결

Starting Strong III(2011)와 또 연이어 발간되고 있는 국가별 보고서(핀란드, 2012; 영국, 2012; 한국, 2012)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보육 교사의 자격과 관리의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이 공통으로 당면하는 과제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자격기준 강화가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이다. 보육과 유아교육분야에서 교사 자격기준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재정비가 요구되어, 한 국가 안에서 점진적으로 자격을 동일하게 하고 양성과 보수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질의 교사를 공급하고 이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낮은 임금과 사회적 지위, 과도한 업무량, 경력 향상의 기회부족 등이 보육교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공통된 이유이며 보육분야에서 교사의 이직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지속적인 평생교육으로의 교직원 전문성의 유지, 개발과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는 교직원의 리더십 개발이 필요하다. OECD의 많은 국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교사를 위한 전문성 개발의 기회를 마련하나 그 이수 비율은 높지 않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홍보가 부족하여 교사들이 그 기회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참여 후의 혜택이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넷째,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교직원의 질에 대한 관리를 고려할 때 사립기관 교사의 질 관리문제가 쉽지 않은 과제이다. 공립기관의 수준으로 사립기관 교사의 급여나 혜택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보육교직원 자격과 관리

가. 보육교직원 현황

우리나라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사의 재직인원수는,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에 원장 39,546명, 1급, 2급 3급을 포함하는 보육교사 180,245명으로 파악된다(보건복지부, 2011.12.31). 보육교사의 급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보육교사 중 1급 교사가 82,649(45.9%)명으로 가장 많고, 2급 교사는 81,638(45.3%)명, 3급 교사는 15,958명으로 전체 보육 교직원의 약 8.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사 1급과 2급의 비율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표 III-2-1〉 어린이집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계(전국)							
	총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248,635	22,229	17,491	120,503	82,911	485	5,016	
원장	39,546	2,099	1,459	14,897	20,557	88	446	
보육교사	1급	82,649	10,407	7,531	40,515	21,832	175	2,126
	2급	81,638	4,750	4,278	42,022	28,972	135	1,481
	3급	15,958	156	228	7,642	7,870	18	44
치료사	550	132	336	82	-	-	-	
영양사	706	85	91	450	1	3	76	
간호사	891	147	117	558	8	-	61	
사무원	934	132	162	509	53	3	75	
취사부	17,457	2,669	1,871	9,278	2,997	51	591	
기타	6,963	1,087	841	4,296	616	11	112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1년 보육통계(조사기준일: 2011.12월).

나. 보육교사 자격기준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최소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다. 보육교사의 자격 부여가 학점 이수를 기준으로 하여, 대학교와 대학의 관련학과 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육교사가 배출된다.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이 되기까지는 1년의 경력만 있으면 된다. 또, 2급에서 1급이 되기까지는 3년의 경력과 80시간의 승급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행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요건과 법적 근거를

<부록 3>에 첨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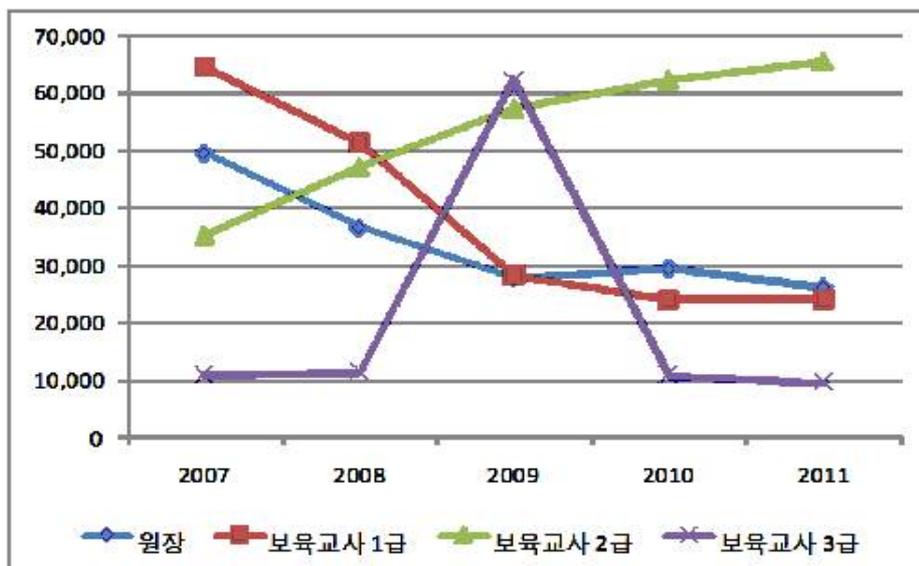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보육교사의 승급과 보육실습, 경력관리를 중심으로 강화된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육아정책연구소·한국보육진흥원·보건복지부, 2010). 보육교사와 원장 자격증의 발급 현황을 <표 III-2-2>에서 살펴보면, 2011년 원장 자격발급은 26,251건, 보육교사 1급이 24,171건, 2급은 65,627건, 3급은 9,664건으로 파악된다. [그림 III-2-1]은 최근 5년간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어린이집 원장과 1급 교사 자격의 발급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면, 2급 교사 자격의 발급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2>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증 발급현황

단위: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60,220	146,677	123,914	126,643	125,713	
어린이집원장	49,636	36,673	27,936	29,520	26,251	
보육교사	1급	64,607	51,359	28,415	24,048	24,171
	2급	35,222	47,087	57,224	62,291	65,627
	3급	10,755	11,558	62,291	10,784	9,664

자료: 보육인력국가자격증(2012). <http://chrd.childcare.go.kr>.



[그림 III-2-1] 보육교사 및 원장의 자격증 발급 추이(2007-2011)

다. 보육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

1) 양성교육

보육교사는 2, 3년제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외에도 1년 과정의 보육교사 교육원 및 사이버 대학을 통한 자격취득과정 등 다양한 양성경로를 통해 배출된다. 일정 학점만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기에, 유아교육·보육 관련 학과뿐 아니라 복지 및 아동 전반에 관련하여 매우 폭넓게 개설되어 있다. 현재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 보유하고 있어, 현직 근무교사보다 훨씬 많은 수의 보육교사가 이미 배출되어있는 상태이다.

보육교사는 1992년 10개 과목 30학점에서 시작하여 2005년 12과목 35학점 이상의 요건으로 강화되었고, 2014년 17개 과목, 51학점으로 대학양성과정의 학점수가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최윤경 외, 2011). <표 III-2-3>은 현재 보육교사의 양성 기준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0개정)을 정리한 표이다. 현시점에서 자격 취득의 최소 학력이 보육교사는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출되는 보육교사는 전문성 측면에서 자격기준 낮은 편으로 보육교사 3급의 경우 자격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표 III-2-3> 보육교사 양성교육

구분	내용
양성기관	- 보육교사 교육원(1년제-고졸 이상 학력) - 2·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교 - 대학원
전공	- 보육과, 지정과목 개설학과
이수학점	- 2급 보육교사 자격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전공 12과목 35학점 보육실습 포함 영역별 필수 5개 과목, 선택 7개 과목 총 12과목 이상. 학과와 상관없이 교과목 이수로 자격 부여함. 2014년부터 51학점 상향 예정 - 3급 보육교사 자격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보육실습 포함 영역별 필수 18과목, 선택 2개 과목 총 25개 과목 이상 65 학점 이수로 자격 부여함.
자격인정	- 학점제: 관련 교과목 이수로 자격증 발급

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0.3.19 개정)을 재구성함.

2) 보수교육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0조~22조에 의거하여 보육교사와 원장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직교육(in-service education)으로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개발하기 위한 교육이다.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상위 등급의 자격 취득을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보육사업안내, 2012). 현재 규정된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실시의 근거와 보수교육 유형, 대상 교육기간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리하여 <부록 3>에 제시한다.

3) 자격 갱신

OECD 회원국 중에는 변화하는 보육환경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위해 자격갱신 기준을 두는 곳이 있다. <표 III-1-6>에서 보듯, 뉴질랜드가 대표적인 나라로 매 4년마다 보육교사는 그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갱신을 해야 한다. 유치원교사에 대해서 자격갱신 기준을 설정하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우리나라 보육교사는 한번 자격을 취득하면 갱신의 필요 없이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라. 근무환경

1) 교사 대 아동 비율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OECD의 국가비교 기준 중 하나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다. 이는 적절한 규모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 교사에게는 근무환경이나 이와 동시에 영유아에게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의 기회 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에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연령별로 규정하고 있다. 12개월 전까지 영아의 경우 1:3, 만 1세는 1:5, 만 2세는 1:7, 만 3세는 1:15, 만 4세는 1:20으로 설정하였다.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의 면적을 감안하여 다소 유동적 운용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국가마다 기준 연령에 차이를 보여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2009년 OECD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0-3세 정규 보육 영유아에 대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1:4로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하다.

2) 교직원 연령 및 성비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근거한 보육교사의 연령은 평균 32.9세에 표준편차 7.6년으로 나타났다. OECD 보고서(2011, 2012)에 의하면, 보육교직원의 평균 연령이 유아교육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그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고령화 추세를 지적한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보육교직원의 연령은 고령화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직원의 연령이 평균 36.8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보육교직원의 남녀비율을 2012 보육통계(2011년 말 기준)에서 원장과 보육교사로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가 <표 III-2-4>이다. 다른 국가에서처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여성편향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표 III-2-4> 원장과 보육교사의 남녀 비율

단위: 명(%)

	원장	보육교사	전체 (보육교직원전체)
남	1,483(3.8)	2,518(1.4)	8,663(3.5)
여	38,063(96.2)	177,729(98.6)	239,972(96.5)
계	39,546(100.0)	180,247(100.0)	248,635(100.0)

자료: 보육통계(2012).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재구성함.

3) 보육교사 처우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보육교사는 1일 평균 9.5시간 일하며, 토요일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한 달 평균 5.8시간의 일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월평균 급여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약 126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육교사의 평균 호봉인 4.2호봉이고 보육시설에 근무한 총 경력이 평균 4년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최윤경 외, 2011). 현재의 호봉체계에 대해 교육기간과 훈련수준에 차이가 있는 보육교사 1급, 2급, 3급에 대해 자격급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1호봉에서 시작하는 호봉의 산정 방식이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김은설 외, 2009)이 있다.

마. 소결

우리나라 보육교직원 관련 현황을 OECD 회원국의 경향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보육교사 자격기준은 OECD 여러 국가의 일반적인 기준과 유사한 ISCED 3수준 이상이라는 기준에 상응한다. 그러나 2011년 기준으로 보육교사의 90% 이상이 보육교사 1급과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는 결과는 우리나라 교사의 실질적 수준은 그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OECD 국가 중 많은 나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여전히 보육과 유아교육 교사의 양성과정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현직 보육교직원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 비용만을 지원한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위해 부분급여의 지급이나, 교육을 위한 시간확보를 위한 지원, 급여의 인상이나 승진 기회부여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넷째, 우리나라는 보육교사의 자격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는 한번 보육교사로 공인된 자격이 중간 점검 없이 계속 효력을 유지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으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사의 평균 연령 또한 지나친 고령화를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처럼 교사의 여성편향성은 우려할 만하다.

3. 영국 보육교직원 자격과 관리

가. 보육정책 개요

1) 보육정책의 변화

영국 보육정책은 1997년 노동당 집권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보인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확대 지원하고 체제 개편을 위해 EYDP(Early Year Department Partnership)을 출범시키고(신운정·박세경·최성은·김필숙·최은영,2007)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산하에 아동국(Minister for Children)을 두어 이전까지 복지사업과 교육으로 분리되었던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를 통합 총괄하게 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을 부모의 책임으로

고려해오던 영국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우선 과제로 정하고 정부가 부모의 양육 지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노력이었다.

이후 이에 수반되는 많은 정책이 마련되어 1998년에는 3, 4세 무상교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점차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 기관의 일원화와 무상공교육 체제도 구축하였으며, 국가 수준의 아동보육전략(The National Childcare Strategy Green Paper: Meeting the Childcare Challenge)을 수립하여 보육시설 확충에 주력하였다. 1999년에 교육고용부 산하 교육표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에서 그간 사회사업부가 총괄하였던 보육기관 등록 및 실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교육고용부는 2001년 교육기술부로 바뀌었다. 2004년에 아동법(Children Act)이 개정되고, 2006년에는 아동보육법(Childcare Act)을 개정하여, 보육과 유아교육을 위한 법적 기준을 정비하였다. 2004년에는 보육개혁 10개년 계획(A Ten Year Strategy for Childcare)을 수립하였다. 2006년에는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그 실행계획(Action Plan for the Ten Year Childcare Strategy)을 마련하여 영유아 무료 교육기간 및 주당 교육시간 확대, 전국에 800개 이상의 슈어스타트 아동센터건립 등을 추진하였다. 2007년부터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를 대신하여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가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또한 2007년에는 영국을 아동과 청소년 성장에 최상의 장소로 만든다는 데 목적으로 아동계획(Children's Plan)을 발표하였다. 이 개혁안에는 빈곤 소외지역 아동에 보육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 특수아동을 위한 투자, 개별 지도 필요 아동을 위한 지원, 학교와 부모 연계 강화, 교사 전문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선거(General Election)를 통해 정부 내각이 교체되고, 아동학교가족부라는 명칭을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로 변경하였다.

2) 행정전달체계

영국의 영유아 대상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한다. 중앙의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는 보육시설 기준과 보육의 질을 위한 기초로서 14개 영역으로 된 국가기준(National Standard)을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질적인 향상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설 운영자의 조건, 인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1999년 이후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한 독립기관으로 교육표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을 두어, 아동의 보육과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표준을 설정하고, 인준하고, 조사하여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교육표준청(Ofsted)은 보육서비스 시설과 아동가족 서비스, 학교, 평생교육 기관까지 포함하여 설정된 표준에 부합 여부를 관찰자가 3년 주기로 방문하여 평가한다. 이 검사기준은 이런 모든 유형의 서비스 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Ofsted, 2012).

3)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현황

가) 보육서비스 유형

영국에서 영유아를 위해 제공되는 보육과 교육관련 서비스의 유형은 <표 III-3-1>과 같이 다양하다(문무경, 2007).

<표 III-3-1> 영국의 보육서비스 유형

보육서비스 유형	특성
유아학교 (Nursery School)	- 2세 이상 5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반일제 교육 서비스 제공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음.
유아학급 (Nusery Class)	- 초등학교 내에 위치함.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 우리나라의 병설유치원과 유사함.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음.
초등예비학급 (Reception Class)	- 초등학교 내에 위치함. 4~5세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학기 중에 종일제(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로 운영됨.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음.
종일제 보육시설 (Full Daycare)	- 8세 미만의 아동에게 하루에 연속적으로 4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제공
기간제 보육시설 (Sessional Daycare)	- 8세 미만의 아동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1일 4시간 이하, 주당 5회 이하) 보육서비스를 제공
방과 전·후 클럽 (Before/After School Club)	- 3세 이상의 아동에게 학교 일과 전후로 다양한 활동과 보육서비스를 제공
휴일 클럽 (Holiday clubs)	- 3세 이상의 아동에게 휴일에 다양한 활동과 보육서비스를 제공
놀이집단 (Playgroup)	- 부모나 비영리단체, 또는 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며 종일제, 기간제 등의 형태로 보육서비스를 제공.

(표 III-3-1 계속)

보육서비스 유형	특성
지방 공립 보육시설 (Local Authority Day Nursery)	- 빈곤 소외계층의 0~5세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 -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음.
가정보육(Childminder)	- 보육교직원의 가정에서 시간제 및 종일제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종일제 아동센터 (Full-day Children's Centre)	- 0~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한 포괄적, 통합적인 서비스를 종일제로 제공함. - 슈어스타트 아동센터가 대부분 이 유형에 해당함.

자료: 문무경(2007). 영국의 육아정책(pp.13~15)의 내용을 수정, 재구성함.

나) 보육서비스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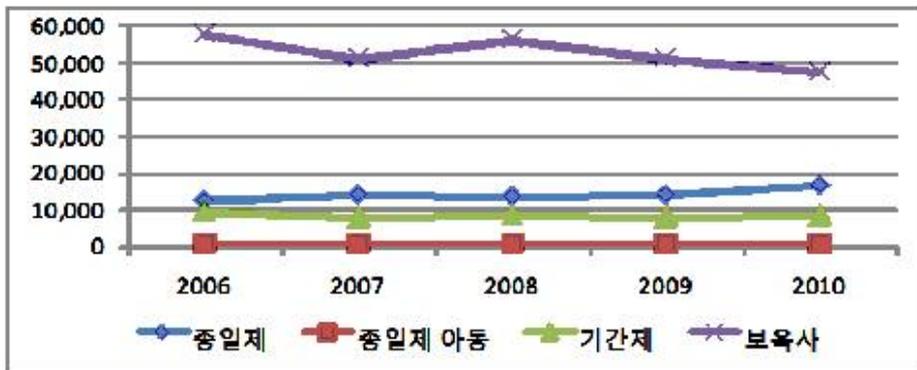
영국 교육부에서는 보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1년부터 거의 해마다 (2001, 2003, 2005, 2006, 2007, 2009, 2010) 진행하고 그 자료와 보고서를 공개, 발간하고 있다. 이는 영국 영유아 보육의 다양한 현황을 파악하고 변화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누적 자료이다. 가장 최근 자료로 2011년 9월 공개된 2010년 보육과 유아교육통계(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0)를 중심으로 영국의 보육현황과 보육교직원 관련 변화를 고찰하였다.

영국 영유아 서비스는 종일제 보육, 종일제 아동센터, 방과 후 보육, 기간제 보육, 휴일클럽, 보육사가 돌보는 가정보육을 중심으로 한 보육서비스와 유아학교, 유아학급(nursery classes), 초등 예비학급(reception classes) 등의 유아교육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표 III-3-2>는 영국의 유형별 보육시설의 수에 대한 자료이다. 2010년 기준 수적으로 가장 많은 유형은 가정보육시설로 47,400명의 보육사(childminder)가 근무하고 있다. 다음으로 종일제 보육시설의 수는 기간제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16,700개소 운영 중이다. [그림 III-3-1]은 2006년부터 2010까지의 보육시설의 수적 변화를 보여준다. 가정보육시설은 200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종일제(full day care providers) 보육기관의 수는 증가함을 보인다. 이는 영국에서 가정보육보다는 시설 중심의 보육형태로 변화하는 경향과 종일제로 보육시간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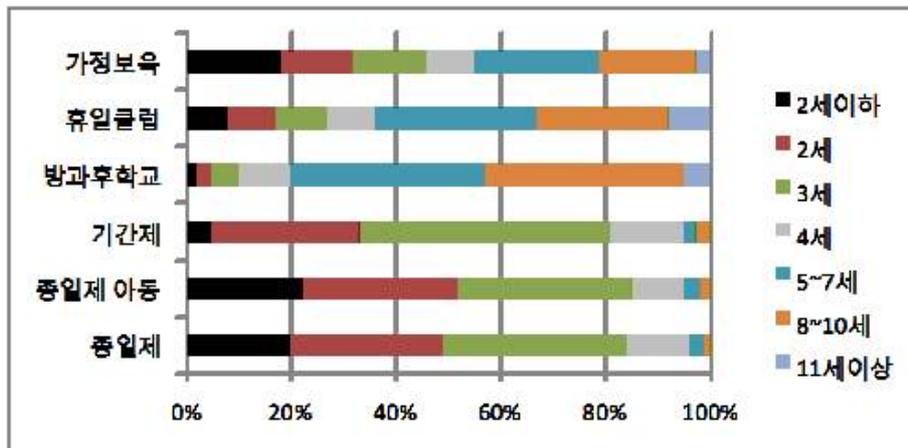
〈표 III-3-2〉 영국의 유형별 보육시설 수

유형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89,500	87,200	93,800	87,200	89,500
종일제 보육시설	12,700	14,100	13,800	14,100	16,700
종일제 아동센터	800	1,000	1,000	1,000	800
기간제 보육시설	9,700	7,800	8,500	7,800	8,300
방과 전·후 클럽	7,700	7,900	8,800	7,900	9,500
휴일 클럽	6,400	6,400	6,500	6,400	7,700
보육사(현재근무)	57,900	51,000	56,100	51,000	47,400

자료: UK Department for education(2011).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0.



[그림 III-3-1] 영국 유형별 보육시설 수 변화 추이(2006~2010)



[그림 III-3-2] 영국의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연령별 이용률 분포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이용 아동의 연령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III-3-2]이다. 연령별로 주이용 보육시설 유형에 차이를 보여, 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종일제 아동센터를 포함하는 종일제 보육시설 이용이 50%를 상회하며,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다. 이는 이용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필요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선호하고 이용하는 보육유형이 차별화됨을 보여준다.

나. 보육교직원 자격과 관리

“최적의 자격을 갖춘 숙련된 교사가 영유아 부모와 가족 지원에 진정한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Supporting Families in the Foundation Years Cross-Government Policy Statement, 2011).” 영국은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로 영유아 담당 교사의 질적 수준 중요성을 강조한다.

영국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책과 현황을 2010년 보육과 유아교육통계(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0)와 그 자료를 토대로 진행한 교직원의 질 향상 위한 연구결과인 Nutbrown Review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과 경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결과로 Cathy Nutbrown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2012년 5월 그 최종보고가 발표되었다.

1) 보육교직원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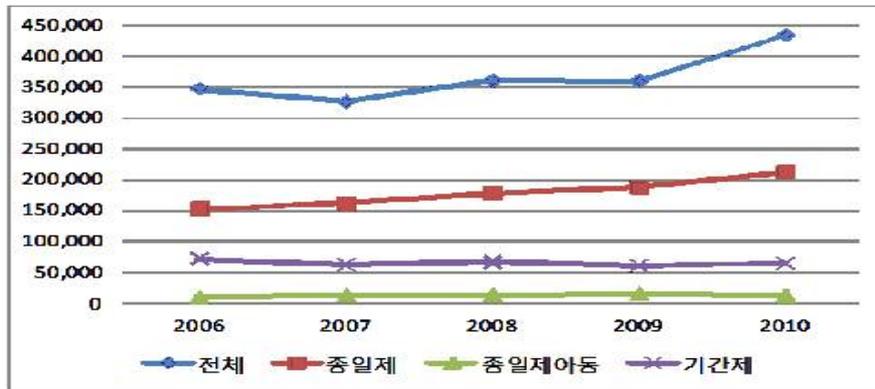
영국의 보육 서비스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수(무급 포함)는 2006년 347,300명에서 2010년 434,100명으로 약 24% 증가하였다. 이 중 종일제 근무교사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영국의 보육 서비스 시설 유형별로 유급 교직원의 수와 무급교직원의 수를 포함하는 상세한 자료는 <표 III-3-3>과 같다. 종일제 교직원은 213,300명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고, 또 다른 특징은 2009년과 2010년 사이 무급 교직원이 급증함이다.

교사의 성비를 살펴보면, 보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남성의 비율이 1~2%로 98% 이상 대부분이 여성이다.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 대상 서비스 교직원의 여성 편향성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표 III-3-3〉 영국의 보육시설 유형별 교직원 수

구분	보육시설 교직원전체(유급+무급)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347,300	326,500	360,900	360,300	434,100
종일제 보육시설	152,400	161,800	178,500	187,600	213,300
종일제 아동센터	10,000	13,700	13,900	15,800	12,900
기간제 보육시설	72,200	63,100	66,500	60,800	65,400
방과후 클럽	54,500	50,400	53,100	51,400	72,100
휴일 클럽	68,200	51,200	62,800	60,500	83,300

자료: UK Department for education(2011).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0.



[그림 III-3-3] 영국의 보육시설 유형별 교직원 수의 변화(2006~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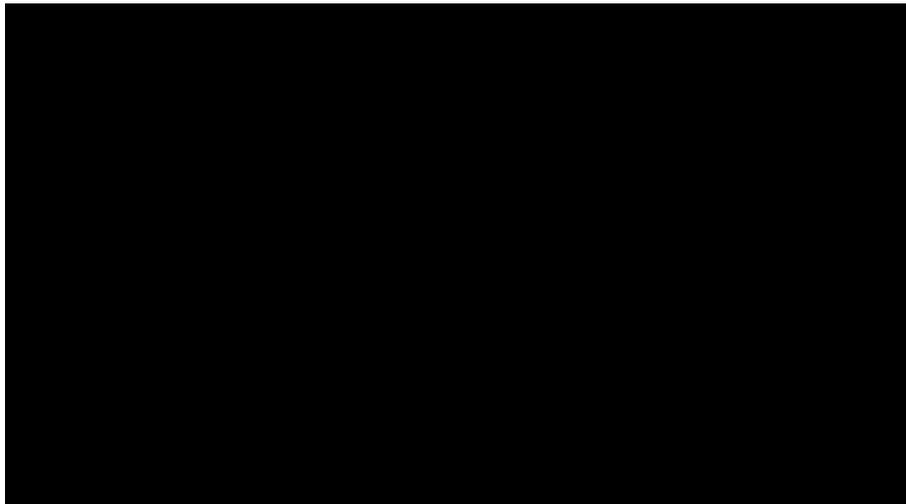
영국의 보육서비스 교직원의 연령 분포는 <표 III-3-4>와 같다. 모든 유형의 보육서비스 유형에서 19세 이하는 극히 소수이며, 20대 후반과 30대, 40대가 주류를 이룬다. 종일제 아동센터를 포함한 종일제 서비스 시설에서 상대적으로 24세 이하의 비중이 높다. 기간제 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의 연령이 높은 경향을 보여 가정보육시설 교직원의 66%, 기간제의 경우는 58%가 40세 이상이다. 특히 가정보육시설은 2006년 25세~39세까지의 비율이 42%이었으나, 2010년 33%로 감소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그 감소가 상대적으로 나이 든 보육사보다는 젊은 보육사들이 그만두어 나타나는 결과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Cathy, 2012). [그림 III-3-4]는 영국 보육시설 유형별 교직원 연령분포의 비율을 보여준다.

〈표 III-3-4〉 영국의 보육교직원 연령 분포

단위: %

연령	종일제 보육시설				종일제 아동센터			
	2006	2007	2008	2010	2006	2007	2008	2010
16~19	5%	6%	5%	3%	4%	3%	2%	2%
20~24	24%	25%	25%	20%	19%	22%	18%	18%
25~39	43%	43%	43%	42%	45%	44%	45%	45%
40~49	18%	17%	16%	20%	21%	22%	21%	19%
50+	10%	8%	9%	12%	8%	7%	12%	13%
연령	기간제				가정보육 시설			
	2006	2007	2008	2010	2006	2007	2008	2010
16~19	1%	1%	2%	2%	0%			
20~24	3%	4%	5%	7%	1%	1%	-	1%
25~39	36%	35%	35%	31%	42%	39%	35%	33%
40~49	40%	39%	38%	37%	35%	36%	41%	38%
50+	19%	18%	18%	21%	22%	24%	24%	28%

자료: UK Department for education(2011).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0.



[그림 III-3-4] 영국의 보육시설 유형별 교직원 연령 분포(2010)

2) 자격기준

가) 영국 보육과 유아교육 교직원의 자격 유형

영국의 보육과 유아교육 교직원의 자격 기준은 자격과 교육과정 관리국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QCA)에 의해 인정되는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8등급으로 구분된다(문무경, 2007).

〈표 III-3-5〉 보육과 유아교육 교직원의 자격 기준

급수	자격 기준
1급(초급)	GCSE 등급 D-G, 초급 GNVQ, 1등급 NVQ
2급(중급)	GCSE A-C, 중급 GNVQ, 2등급 NVQ
3급(고급)	A등급, 고급 GNVQ, 3급 NVQ
4급(고급)	높은 수준의 자격, BTEC Higher National, 4급 NVQ
5급(고급)	높은 수준의 자격, BTEC Higher National, 5급 NVQ
6급(고급)	우등 등급
7급(고급)	석사급
8급(고급)	박사급

자료: 문무경(2007). 영국의 육아정책(p.50).

나) 영국 보육과 유아교육 교직원의 유형

교사의 자격 수준과 유형은 교사가 근무하는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 기관과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다양하다. 영국은 종일제 보육 서비스 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책임 관리자와 관리자급 교직원은 최소한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도록 규정하며, 모든 교직원의 절반 이상은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표 III-3-6〉 영국의 보육과 유아교육 교직원의 유형

명칭	내용
보육사 (Childminder)	-보육사의 자격은 지방정부가 승인한 양성교육기관에서 6개월의 과정을 마치면 취득 가능함. -본인의 가정에서 시간제 및 종일제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사립보육시설 교사	-전문학사 과정 및 단기 과정으로 보육 관련 교육과정 이수함. -놀이집단(playgroup) 교사는 3~4세 유아를 담당하며 200시간 연수로 가능함.

(표 III-3-6 계속)

명칭	내용
공립학교 교사	-2002년 이후 QIS 시험에 합격하고 교사자격증(Qualified Teacher Status)을 획득해야 함.
책임 관리자 (Senior Manager)	-국가자격 기준에 의해, 3급 자격을 소지하고 2년의 보육시설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관리자급 교직원 (Supervisory Staff)	-국가자격 기준에 의해, 종일제 보육시설 교직원은 모두 3급 자격을 소지하여야 함(그렇지 않은 경우 3급 자격취득 예정시기와 취득방법에 대한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기간제 및 방과 후 보육시설 교직원은 모두 3급 자격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교직원의 절반이 2급 자격을 소지하여야 함.
영유아기 전문가 지위 (Early Years Professional Status)	-육아지원인력전략(Children's Workforce Strategy)에 따라 2006년 2월에 새롭게 개발되어 2007년 1월부터 부여되기 시작한 지위임. -EYPS는 영유아(0~5세) 보육과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가의 지위로 6급에 해당하는 것임(이는 자격은 아니나 기준으로 설정된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제시하고 그를 인정받아야 주어지는 것임). -2010년 현재 9,365명이 EYPS 지위를 부여받았고, 2,000명 정도가 준비 중이다(Cathy, 2012).
영유아 신지도자 (New Leaders in Early Years)	-영유아 신지도자는 대학 졸업 이후 3년 수련과정을 통해 영유아 관련 분야에서 전략적 실무적 지도자가 된다. 그 과정에 석사 이수와 EYPS를 획득함.

자료: 문무경(2007). 영국의 육아정책(pp.13-15)과 Cathy(2012). Nutbrown Review 자료를 재구성함.

<표 III-3-7>은 2010년 영국의 보육, 유아교육, 가정보육사의 자격 분포이다. 자격소지비율을 보면, 종일제, 종일제 아동, 기간제, 방과후, 휴일 아동센터를 포함하는 전체 보육시설 교직원의 90%는 자격을 갖고 있다. 그에 비해 가정보육사(childminder)의 경우는 67% 정도가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75% 정도의 인력이 최소한 3급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으나 그 분포는 시설 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시설 중심 보육서비스 교직원의 76%가 최소한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가정보육사의 경우는 54%가 3급 이상 소지자이다. 또 6급 이상의 자격소지자 비율도 시설 중심 보육서비스 교직원은 5%, 가정보육사는 3%이다. 이는 가정보육사의 보유자격이 시설교직원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를 보여준다. 또한 유아교육분야와 보육분야를 자격 등급으로 비교해보면 보육분야 교직원의 보유자격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최근 3급과 6급 소지자가 증가하였고, 자격 무소지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다(Cathy, 2012).

〈표 III-3-7〉 유급 육아지원인력 소지 자격

자격 수준	전체 보육교직원	보육사	유아교육교직원	전체
1급	1%	6%	1%	1%
2급	13%	8%	8%	11%
3급	55%	47%	31%	50%
4급	9%	3%	2%	7%
5급	4%	1%	4%	4%
6급	7%	2%	31%	11%
7급	1%	1%	11%	3%
8급	*	0%	*	*
무자격	8%	22%	5%	8%
자격소지	90%	69%	89%	88%
기타	*	3%	1%	1%
모름	2%	5%	6%	3%
최소 3급 이상	76%	54%	80%	75%
최소 6급 이상	8%	3%	42%	14%

자료: UK Department for education(2011).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0.

3) 교사 교육 및 전문성 강화

영국 보육교사의 교육과 훈련은 교원교육개발원(Training and Development Agency for schools: TDA)에서 교사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대학 및 학교 기관들과 협력하여 보육교사를 양성한다. 영유아 대상 서비스 교직원 질관리와 자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 관련 인력개발위원회(Children's Workforce Development Council: CWDC)를 운용한다. 아동 관련 인력개발위원회(CWDC)는 교사를 위한 보수교육과 워크숍,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검토 및 개발, 보육 관련 전문지식 제공하는 등 보육 인적 역량강화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4) 교사 근무여건

가)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에게 근무환경으로, 영유아에게는 보육환경의 기준이 되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확인하면, 가정보육시설에서 1:6, 기관 보육시설 2세 미만은 1:3, 2세

는 1:4, 3~7세는 1:8, 유아학교의 경우는 1:13으로 연령별 OECD 평균보다 낮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나) 교사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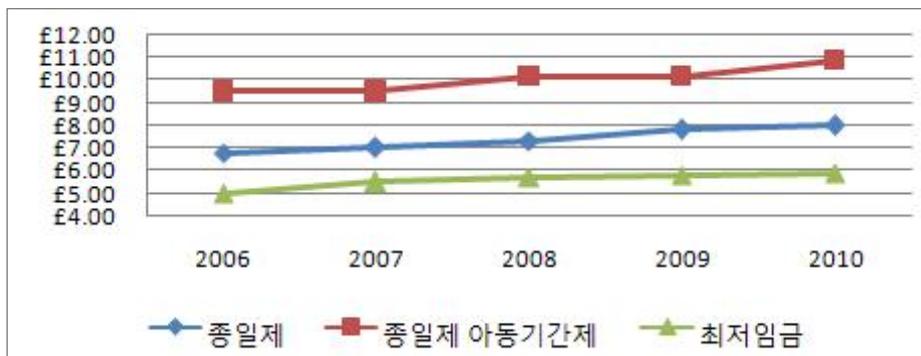
<표 III-3-8>에 나타난 것처럼 영국의 보육 교직원 시간당 평균임금은 직위와 기관에 따른 편차가 크다.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2010년 보육 교직원의 임금은 약 5% 정도 인상되었는데 이는 2010년 영국의 평균 임금상승률이 2%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종일제 아동센터 교직원의 경우가 시간당 평균 £10.9(약 2만 원)로 최저임금의 대략 2배에 달하여 보육시설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종일제 교직원이 평균 £8.00, 기간제의 경우는 £7.8로 나타났다. 가정보육시설의 임금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 III-3-8> 보육 교직원의 시간당 평균 임금

단위: £,%

구분	종일제		종일제 아동센터		기간제	
	2010 £	증가비율 2009~2010	2010 £	증가비율 2009~2010	2010 £	증가비율 2009~2010
전체	£8.00	5%	£10.90	5%	£7.8	5%
책임 관리자	£10.80	2%	£16.30	4%	£9.6	7%
관리자급교직원	£8.30	5%	£11.50	6%	£8.00	7%
기타유급교직원	£6.60	3%	£8.40	6%	£6.70	3%

자료: UK Department for education(2011).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0.



[그림 III-3-5] 영국의 보육 교직원 시간당 평균 임금 변화(2006~2010)

다) 근무시간

영국 보육시설 교직원의 근무시간을 보육 유형별로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가 <표 III-3-9>이다. 종일제 아동센터 근무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34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직책이 높아지면서 근무시간도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III-3-9> 영국의 보육 교직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2010)

	종일제 아동보육	종일제 아동센터	기간제	방과후	휴일제
전체	32	34	22	22	30
책임 관리자	35	36	25	27	34
관리자급 교직원	34	35	23	23	32
기타 유급 교직원	30	32	18	18	26

자료: UK Department for education(2011).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0.

다. 보육 교직원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보육 교직원의 임용과 이직률에 대한 자료가 <표 III-3-10>이다. 2010년 임용률은 휴일과 방과 후 클럽 유형에서 30%를 상회하였고 종일제가 27%로 높았다. 이직률 또한 휴일과 방과 후 클럽 유형에서 가장 높았다. 종일제 아동센터의 이직률이 가장 낮은 8%이다. 2009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2008년과 2010년 자료를 중심으로 그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08년에 비해 2010년에는 임용률과 이직률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한다. 떠난 만큼 보충해야 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보육 교직원이 이직을 고려하는 요소들이 감소하고, 직업 만족 정도가 향상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표 III-3-10> 영국의 보육 유형별 보육 교직원 임용률, 이직률, 임용증가율

	임용률		이직률		임용증가율	
	2008	2010	2008	2010	2008	2010
종일제 보육시설	42%	27%	16%	12%	27%	15%
종일제 아동센터	42%	24%	13%	8%	33%	16%
기간제	24%	19%	11%	11%	14%	9%
방과 후 클럽	40%	30%	15%	13%	25%	18%
휴일클럽	49%	36%	23%	14%	26%	23%

자료: UK Department for education(2011).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0.

라. 소결

다른 OECD 회원국의 사례와 같이 영국의 영유아 관련 정책도 최근 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저출산 극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면적 노력의 결과라 이해될 수 있다. 영국의 보육교직원 관련 정책의 현황과 변화를 다음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영국은 영유아 대상 교직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그 질적 수준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아동 관련 인력개발 위원회(CWDC)는 영유아 대상 교직원의 초기 양성교육만이 아닌 지속적 교육으로의 교직원의 보수교육 내용과 방향을 모색한다.

둘째, 영국은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육과 유아교육을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전문제도를 마련하였다. 육아지원 인력전략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영유아기 전문가지위를 부여하여 2010년에 9천 명이 넘는 인원이 현장에 활동하고 있다. 또 대학졸업 이후 3년 수련과정을 통해 영유아 관련 분야에서 전략적 실무적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영유아 신지도자 제도를 새로이 운용 중이다.

셋째, 영국 아동 관련 인력개발 위원회(CWDC)는 영유아 대상 서비스 교직원의 자격기준에 단 하나 최고의 방법(one-size-fits-all)은 없음을 강조한다. 영유아와 함께 일하는 보육 현장에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이런 다면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자격구조가 세분되어 전문화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는다.

넷째, 양질의 보육과 교육은 모든 아동의 학습과 발달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다문화 배경을 지닌 가정의 영유아나 장애 영유아 보육 등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전문 교직원 육성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라고 통칭하나 영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 발달의 시기로 연령에 따른 보육 필요 부분에 차이가 있다. 연령별 전문보육교직원 제도가 마련되고 그 내용이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영국은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체계화된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자료화하고 있다. 이는 현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이면서 동시에 그에 기반을 둔 연구의 기초자료가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과 경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Nutbrown Review)도 이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함을 보면서 누적적 자료수집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4. 핀란드 보육교직원 자격과 관리

핀란드는 2012년 OECD에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보고서를 영유아 대상 서비스 교직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여 제출하였다. 핀란드 국가보고서와 핀란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이윤진·송신영, 2009; Eeva-Leena & Marjatta, 2010; Maritt, 2010; Niels, 2012)을 중심으로 핀란드의 보육정책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책의 변화와 현황을 고찰함으로 우리의 보육교직원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보육정책 개요

1) 보육정책의 변화

핀란드의 보육제도와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연구들(Eeva-Leena & Marjatta, 2010; Maritt, 2010)에서 핀란드 보육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핀란드는 1927년 유치원보조법, 1936년 아동복지법을 마련하고, 1973년 핀란드 보육사업의 기초가 된 영유아보육법 등 일련의 법제정을 통해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국가지원 보장을 확고하게 정립하였다. 영유아보육법(Children's Day Care Act)에 따라 핀란드의 지방정부는 보육을 희망하는 모든 가정에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1990년부터 양육지원에의 선택권이 생겨, 만 3세까지의 모든 부모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또는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면서 'cash-for-care'의 의미를 지니는 양육수당을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1996년에는 취학전 아동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립보육시설과 유아학교(preschool)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재정을 투입하였고, 이들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규정을 만들어 나갔다. 1997년 8월부터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수당을 받게 되면서 공립과 민간에서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에는 의무교육을 위한 기본교육법(the Basic Education Act)을 제정하였다. 2001년 교육에 대한 개혁 이후에 전체 취학 직전 연령인 6세 아동의 유아교육은 교육문화부(the Ministry for Education and Culture)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2003년 0~6세 아동을 포괄하는 국가 수준의 영유아 보육·교육과정(The N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on ECEC in Finland)을 제정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가 배우고 습득해야 할 기본 내용의 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2) 행정전달체계

현재 0~6세까지 아동의 보육과 교육은 주로 사회보건사업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서 관장한다. 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수당, 서비스 공급자, 출산보조금, 건강, 가족상담, 아동복지와 가정 지원 서비스 등 유아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결정한다. 2001년 유아교육에 대한 개혁 이후에 취학전 6세 아동의 유아교육은 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가 담당한다. 2002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 '국립보건복지연구센터(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Welfare and Health, STAKES)가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며, 국가 수준의 보육통계, 정기간행물, 각종 관련 연구물, 조사자료 등의 정보를 생성하여 육아지원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에서 6세 아동의 취학전 유아학교(pre-school) 교육과정과 방과 후 활동에 관한 규정 등을 개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를 이행하고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업무, 즉 보육시설 공급의 책임을 지닌다. 지방사무국(The Provincial State Offices)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지원업무를 관리감독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3) 보육 서비스 유형 및 이용현황

핀란드는 육아를 위한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옴을 알 수 있다. 부모는 48주 동안의 육아휴직 이후 자녀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세 가지 선택권을 가진다. 첫째,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부모 중 한 사람이 가정에서 아동양육수당(child home care allowance) 받으면서 양육하는 경우이다. 둘째,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민간보육수당(private child care allowances)을 받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립보육시설(municipal day care)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이외에도 육아를 위해 시간제로 이용 가능한 놀이집단, 놀이터, 개방형 어린이집, 가족공원 같은 다양한 공사립 서비스들이 있다. 핀란드에서는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는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한다.

2011년 OECD의 통계자료(Family Database)에 만 3세 이하 정규보육 등록율은 28.3%(부표 III-4-1)로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며 [그림 III-4-1]의 추이를 확인하여도 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육아에 대한 가치관과 보육정책의 차이로 나타난 결과로 스웨덴과 덴마크는 보육시설중심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시설의 확충과 이를 이용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족중심적 전통을 지닌 핀란드는 시설 중심의 육아지원보다는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부모가 직접 키우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료: NOSOSCO(2006~2007) and NOMESCO (<http://nom-nos-indicators.skl.se/sif/start/>), OECD(2011), Family Database

[그림 III-4-1] 북유럽 국가의 만 3세 이하 정규보육 등록율 추이

핀란드의 6세를 위한 유아학교(pre-school)는 교육문화부(the Ministry for Education and Culture)에서 관장한다. 비록 모든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책임을 교육문화부로 이전하려는 준비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현재 0~6세를 위한 서비스는 최근까지 사회보건사업부(the Ministry for Social and Health Affairs)에서 관장한다. 핀란드의 의무교육은 7세에 시작된다. 핀란드는 행정적 수준에서 형식적인 학교 교육이 시작되기 직전인 6세아에 대해 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과 보육과 구분한다. 핀란드의 보육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립보육서비스와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민간보육서비스가 있다.

〈표 III-4-1〉 핀란드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서비스 기관 유형

유형	특징
지방자치단체 제공 보육서비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어린이집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원하는 경우 모두 이용 가능하며, 어린이집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종일제를 원칙으로 함. 필요에 따라서는 시간제 보육 이용도 가능하고 야간에 근무하는 부모를 위한 24시간 보육서비스도 제공됨. -공립어린이집(päiväkotit)과 가정보육서비스(family day care)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됨. 공립어린이집을 종일제로 이용하는 비율이 70%를 상회함. 가정보육서비스보다는 시설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선호함. -핀란드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보육서비스(open daycare centre)를 통해 놀이 활동을 제공하기도 함.
민간 제공 보육서비스	-민간보육서비스는 두 가지 유형으로 대표됨. -100%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설 서비스 -전체 보육서비스 시설 중 약 7% 정도를 차지함. -부모가 이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경우 민간 아동 양육수당(prillatäite child care allowance)을 받을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를 제공하거나 공급자를 선정, 질관리 등의 행정에 관여하는 중간 형태의 보육서비스
유아학교 (pre-school education, Pre-primary)	-의무교육이 시작되기 직전인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함. -반일제로 운영되므로 유아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약 70%는 어린이집을 중복으로 이용함.

자료: OECD(2011). Starting Strong III, 이윤진·송신영(2009). 핀란드의 육아정책(pp.26~30) 내용을 재구성함.

나. 보육교직원 자격과 관리

일반적으로 핀란드 보육 현장에서는 12명의 아동을 3명의 교사가 팀으로 협력하여 보육한다. 한 명의 유치원교사(kindergarten teacher) 또는 사회교육가(social pedagogue)와 두 명의 보육교사(day care nurse)가 한 팀으로 근무한다(Maritt, 2010). 1995년 이후 유아교육 교사는 대학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자격을 강화하였으나, 사회복지전문인법(Social Welfare Professionals Act)에 명시된 보육교사(nurse)의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와 건강 보육 분야에서 최소한 3년의 실무교육위주 중등직업교육이다. 가정보육사(family childminder)는 별도의 학위 기준은 없으나, 교육과정을 통한 일정 수준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핀란드는 2000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가정보육모의 자질과 능력을 강화하는 권

고안을 발표하여, OECD 회원국 중 엄격한 요건을 지닌 나라 중 하나이다.

핀란드 보육과 유아교육의 실무 및 조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나 공립과 사립에 공히 적용되는 교육과정이나 교사자격, 성인 대 아동 비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보육과 유아교육 분야에 일하는 모든 교직원을 핀란드에서 '교육자'로 여긴다. '교육자'라는 용어는 교사에게 돌봄, 교육, 교수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1) 자격기준

핀란드 유아교육교사는 최소한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5수준에 상응하는 학위를 지녀야 하며, 보육교사는 다른 OECD 회원국에서처럼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3수준의 최소 자격기준을 갖고 있다. 핀란드처럼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된' 전달체계로 하려는 뉴질랜드,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보육 부분의 교직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위해 핀란드는 보육분야에서 실무 간호사(nurse)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자격시험의 관리를 일원화하였다. 핀란드에서 1990년대 보육의 업무를 현장에서 담당하는 실무간호사(practical nurse)를 위한 시험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childminder, day care nurse, rehabilitation nurse 등 몇 가지 유형의 시험으로 구분되어 시행되었다. 이제는 이를 하나의 시험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또한,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6세를 담당하는 유아학교(pre-primary)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자격을 연계하여 조정하였다. 핀란드에서는 유아교육 교사의 교육수준을 초등학교 교사의 수준에 가깝도록 강화하였다. 이는 아동의 발달과 아동의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로의 전이 과정에 교사의 협력이 더 원활하게 하고 있다.

2) 교사 교육 및 전문성 강화

가) 양성교육과정

양성교육과정은 자격기준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의 경우 보육과 유아교육 교사는 동일 연령 집단의 아동들과 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자격수준을 지닌 평행적인 교사양성과정을 가지고 있었다. 핀란드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현재 통합되지는 않았으나 교사의 양성과정은 통합 또는 협력 운영한다. 보육분야의 교사의 질적 수준의 강화를 위해 실무간호사(practical

nurse)와 가정보육사(family childminder)를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개편되었다. 핀란드의 교사 양성교육의 장점은 교육기관이 다양하게 준비되어있어 교사가 상황에 맞게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사가 되려는 경우 공사립 교육프로그램에 full-time이나 part-time으로 이수할 수 있고, 교육기관도 다양하다(표 III-1-4 참조). 핀란드는 보육교사와 가정보육사 양성과정도 full-time과 part-time으로 선택이 가능하게 하여, 이직을 원하는 경우나 학업과 가사를 병행하며 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에 도움이 된다. 양성과정 운영주체의 측면에서는 사립기관보다는 비용 부담이 적은 국공립 기관이 더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사립기관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 보수교육과정

핀란드의 보육교사는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이다. 핀란드에서는 보수교육의 비용을 정부와 고용주, 고용자 간에 분담한다. 교사 개인이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다. 핀란드에서 가정보육모의 의무적 전문성 훈련에 대한 거의 모든 비용을 정부와 고용주가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보수교육을 시행하나 핀란드는 온라인을 통한 보수교육은 제공하지 않으나 보육교사를 위한 현장방문지도와 정규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OECD 회원국은 다양한 지원을 한다. 앞서 기술한 <표 III-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핀란드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비용지원, 이수 시 생길 수 있는 보수의 손실 보상, 더 상위 자격을 얻을 기회부여, 이수 참여 위한 시간 제공 등의 지원을 한다. 그러나 보수교육에 참여했다고 직접적으로 급여를 인상하지는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핀란드는 교사교육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 교사의 양성교육 과정을 정비와 통합하였고, 현장 교사의 보수교육 의무화하였으며,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선택 가능한 폭넓은 교육 기관에서 다양한 유형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이수에 따른 다양한 가산점 부여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사 근무여건

핀란드는 0~3세 기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1:4로 OECD 평균인 1:7보다 낮

은 수준으로 교사에게 우수한 근무환경으로 볼 수 있다. 사회의 변화가 보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기도 한다. 세계화로 국가 간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 현장에서도 다문화 배경을 지닌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핀란드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 사이에 읽기 능력에 큰 격차가 있음에 주목하고 어린 연령에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보육교사로서 다문화 수용력을 기르고 다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보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보육교직원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교직원의 고령화와 여성 편향성의 문제가 심각하다. 핀란드의 경우 30세 이하가 15%, 50세 이상은 40%를 넘는다. 젊은 교직원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초중등 교육 분야보다 유아교육과 보육에서 특히 교사의 여성 편향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핀란드의 여교사 비율도 높아 98.6%에 달한다.

다. 보육 교직원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핀란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특히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보육교직원의 질을 향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핀란드 국가보고서(OECD, 2012)를 기초로 자격 강화를 위한 노력, 양질의 인력공급을 위한 노력, 이직률을 줄이려는 노력, 교직원의 리더십 기술 개발, 유아교육과 보육 기관 교직원의 질관리 등 다섯 가지로 유목화하여 고찰한다.

1) 자격강화를 위한 노력

무엇보다 보육 분야 교직원의 다양한 시험을 통합하였다. 핀란드에서는 실무교사(practical nurse)를 위한 교육이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는 노동시장이 훨씬 유동적이어서 직업 간 이동이 수월했다. 핀란드는 보육현장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가정보육사(childminder), 보육교사(day care nurse), 복직교사(rehabilitation nurse), 장애아동교사(nurse for the disabled) 등으로 구분하여 치르던 여러 시험을 하나의 시험제도 안에서 선택하는 형식으로 개선하여 그 자격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둘째, 실무교사(practical nurse)와 가정보육사(childminder)의 양성과 보수교육을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그 이전 교육과정보다 훨씬 심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2) 양질의 교직원공급을 위한 노력

첫째, 보육 교직원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였다. 핀란드 보육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기관 교사 중 최소 3분의 1은 ISCED 수준 5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지녀야 하며 나머지는 교사는 ISCED 수준 3에 해당하는 상위중등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자격과 탁월한 관리 능력을 지니거나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유아교육에 대한 지식과 관리능력을 지녀야 한다. 둘째, 다양한 교육적 배경을 가진 교직원을 둬으로써 인력의 다양화하였다. 핀란드 보육과 유아교육 교사의 교육배경은 학사학위부터 전문대학, 상위중등교육과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모든 양성과정에서 아동발달 과목은 다루어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교육배경에 따른 업무의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3) 교직원의 이직을 줄이려는 노력

첫째, 가정어린이집의 지위를 다른 유아교육과 보육기관과 동일하게 대우한다. 핀란드에서 1973년 보육법(Day Care Act)이 시행되면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이 보육유형을 합법화하였다. 이는 가정보육사가 개별 시설의 교사가 아닌 지방정부에 고용된 교사가 되어, 연수와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승진과 이직을 위한 경력개발기회를 마련하였다. 경력개발기회는 기본적으로 교사의 교육수준과 관련되나, 관리자의 수준에서는 경력에 따른 승진의 기회도 있다. 예를 들어 유치원 교사는 기관장으로 또는 기관장은 지방정부 단위의 관리자로 승진 가능하다.

4) 교직원의 리더십 기술 개발

보육교사의 지속적 연수 의무화하였다. 2005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법 개정령(the Act on amending the Social Welfare Act)에 따라 보육교사를 포함하는 사회복지분야 근무자는 교육 또는 자격 기준에 따라 연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이 정해져있다. 이 법에는 지방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교사의 전문적 능력을 유지·함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연간 보수교육 시간은 근무자의 교육 또는 자격 기준, 직업 특성에 따라

3일에서 10일까지 다양하다. 둘째, 교사의 질적 강화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핀란드에서는 2005년 8월부터 사회복지법 개정령에 따라 보육교사를 포함하는 사회복지분야 근무자에게 지방정부가 적절한 보수교육을 제공하도록 했다. 지방정부는 교사 개인의 요구와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연수 내용을 개발한다. 이를 토대로 개인 또는 근무특성, 직업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내용을 구성하고 제공한다. 셋째, 보육교사의 지속적 교육을 위한 중앙정부 수준의 노력을 지속한다. 보육에 대한 국가 교육과정안내에는 교사가 자신의 직무에 대해 기록하고 평가하고 계속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정부가 매 4년마다 수립하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개발 계획’에 기초하여 교사교육과 교육체계의 정책적 목표가 결정된다. 2011~2016년의 계획에는 교사의 보수교육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과 연수 기회를 마련한다. 핀란드는 지방정부가 보육 부분의 연수 내용을 구성한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보육 부분의 요구를 정확하게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2002년 사회복지우수센터를 만들어 지방정부에 그 연수 주제와 내용을 전달한다. 이 센터는 대학이나 다른 교육기관 등 관련 학계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제와 내용을 구성한다. 다섯째, 핀란드에서는 국가에서 교사를 위한 현장연수와 지속적 전문성개발(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을 지원한다. 2010년 이후 교육문화부는 교사 현장연수와 지속적 전문성개발(CPD)에 거의 두 배에 달하는 2,100만 EUR를 지원한다. 보육분야를 포함하는 사회복지 근로자의 현장연수에는 국가가 33%를 지원한다. 국가로부터의 지원은 지방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 유지하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연수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5) 교직원의 질관리

첫째, 사립과 공립기관을 동등하게 규제한다. 핀란드에서 보육과 유아교육 기관으로 신규 등록하기위한 기준을 공립의 수준으로 사립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교사 자격, 교사 대 아동의 비율 등 공립이나 사립 기관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등록 요건을 엄격하고 분명하게 정해 두었다. 교사와 관련해서도 역할에 맞는 최소한의 ISCED 수준을 규제함으로써, 핀란드는 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보육과 유아교육 기관에서 균등한 교직원의 질을 보장하려 한다. 둘째, 교사의 교육과 전문성 향상에 대한 요구를 파악한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교육자로서

의 교사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라. 소결

핀란드는 OECD에서 선정된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 지표에 비추어 볼 때 거의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에 가깝거나 상회한다. 핀란드의 강점은 보육 분야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의 수준이 높으며, 연령별, 서비스 유형별로 다양한 공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3세~5세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한다. 핀란드의 육아지원정책은 부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양육수당지급,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보육비 지원과 공립보육시설 공급 등 부모의 자녀양육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게 구성되어 왔다. 그와 동시에 핀란드 보육의 현황과 교직원 관련 정책을 고찰하면서 교사의 질 향상에 국가적 수준의 관심을 쏟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2년 3월에 OECD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별 보고서의 주제를 교사의 자격기준, 교육 및 근무여건의 개선으로 잡고 그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출간함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핀란드가 OECD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는 핀란드 보육 정책이 당면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유능한 보육 교직원의 유입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역량을 갖춘 교사의 존재가 보육의 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 핀란드에서 최근의 경향은 교육학을 전공한 보육교사의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 핀란드 지방정부의 보육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어린이집 수가 증가하는 점도 질 관리에 압력요인이 됨을 지적한다. 양적 증가에 따른 질적 강화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셋째, 핀란드 보육 기관 간 질적 편차가 기관별로 지역별로 크다.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 중 하나는 핀란드 어느 지역에서든지 동일한 보육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보증하는 국가수준의 질적 수준에의 기준 설정과 평가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5. 요약 및 시사점

보육교직원의 질적 수준 향상은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중

요한 수단이다. 본 장은 OECD 회원국의 보육교직원 관련 정책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OECD 회원국가들은 보육교직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자격기준을 강화하려는 노력, 특히 유아교육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보육교직원에게는 보통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인 ISCED 3수준을 요구한다. 이 기준은 우리의 보육교사 3급 기준과 유사하고, 실제 보육 현장에는 이보다 더 높은 자격을 지닌 1급과 2급 교사가 90%이상 이어서 그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교사 3급이 2급과 1급 교사로 승급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보이는 수치만으로 교사 수준을 판단함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5세 누리과정의 시행 이후 같은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역량에 대한 논의가 분분함을 고려할 때, 온라인 교육을 통한 3급 보육교사 배출과 교사 자격기준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최근 연구들(김은설 외, 2009; 김은설, 최윤경, 2011; 최윤경 외, 2011)에서도 보육교직원의 자격에 대한 강화를 요구한다.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과 승급이 요건이 다른 유아교육이나 사회복지 등 유사 업무 유형과 비교할 때 수월함을 지적하면서 3급 보육교사의 승급을 위한 필요 경력 기간의 연장과 양성교육 기준 강화를 제언한다. 또한 원장의 자격에 대한 부분으로 보육 현장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원장의 능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장 자격취득과정에 장기 자격연수 실시, 취득 필요 요건 강화 등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영국은 영유아 대상 서비스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육과 유아교육을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전문제도를 마련하였다. 영국의 영유아기 전문가 지위(Early Years Professional Status), 영유아 신지도자(New Leaders in Early Years) 제도가 그것이다. 또한 영국은 모든 상황에 맞는 단 하나의 자격은 보육 현장에서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다면화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보육현장에서도 영아, 다문화 가정 영유아, 장애아 보육 등 전문 분야 특성을 살린 보육 교직원의 자격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핀란드에서도 보육교직원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관련 시험 관리를 일원화 하고, 가정보육모의 교육내용을 강화하였다. 보육교직원의 자격증 제도를 검토 하고 있다. 보육은 영유아를 위한 돌봄과 교육 제공의 서비스로 보육교직원의 교육에는 무엇보다 현장의 실습이 강조되어야 한다. 온라인 교육보다 현장 실습 을 강조하는 핀란드의 보육교사 교육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 보육교사를 기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록에 소개하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보육과 유아교육이 이원화되어 있으나, 교사의 양성과 자격은 두 부처의 합의 기구를 통해 관리, 운영한다. 이런 싱가포르의 정책에 대해 Marjory와 Yvonne(2011)는 보육과 유아교육을 아우르는 유아교사의 기준이 분명해짐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갖춘 교사가 증가하여 교사의 질적 수준의 균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사의 급여수준도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하였다.

영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는 교사 자격기준의 재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한 국가 안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에 대한 자격을 유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싱가포르의 사례는 통합 이전 보육교사와 유아교사의 다양한 양성경로를 구체화하고,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향상된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구비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전문성 강화

급격한 사회 변화는 보육교직원의 지속적 전문성을 요구한다.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포함하는 보수교육은 교직원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을 위한 주요 도구이다. 핀란드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책 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다. 정부는 교사의 지식과 기술을 새롭게 하고 능력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수를 필수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서 질적 향상에 초점을 두고, 보육과 유아교육 교직원과 관리자의 지속적인 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수요에 기초한 연수를 디자인하고, 다양한 연수를 위한 필요를 파악하고,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고, 연수비용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발달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 부모와 교사 사이 협력을 강조하여, 이를 위한 교사의 기술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과 자격갱신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직원 전문성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할 만하다. 영국의 경우 보육교직원과 유아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관련 인력개발 위원회(Children's Workforce Development Council: CWDC)는 영유아 대상 교직원의 초기 양성교육만이 아닌 지속적 교육으로 교직원 보수교육을 담당한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참여를 증진할 동기의 부여가 필요하다. OECD의 많은 국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교사를 위한 전문성 개발의 기회를 마련하나 그 이수 비율은 높지 않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홍보가 부족하여 교사들이 그 기회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참여 후의 혜택이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비용지원과, 대체교사 파견 등의 교육을 위한 시간확보 지원, 참여를 반영한 급여의 인상이나 승진 기회부여 등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보수교육의 내용은 사회의 변화와 교직원의 필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핀란드의 경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혁 노력으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용, 이민 아동을 위한 언어교육 등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선행연구(OECD, 2012)는 보수 교육이나 연수의 참여가 저조함은 그 내용이 교사들이 원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어 참여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의 보수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 김은설(2011)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 대한 연구에서도 보수교육 내용과 교과목을 다양화할 것을 강조한다.

넷째, 부모와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기능하는 보육교사의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영국은 2012년 OECD에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국가보고서(OECD, 2012)를 제출하였다. 이는 영국의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 정책이 서비스의 대상이며, 정책 수요자인 영유아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과 지역사회라는 생태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고, 모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유아 대상 교직원에 대한 정책에도 반영되어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책무성이 부각되면서, 영유아 보육현장에서 교직원은 부모와 그 가족과 함께 일하는 역량을 길러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 교직원은 가장 중요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보육현장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보육교직원의 지속적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갱신 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OECD 회원국 자료에 의하면, 뉴질랜드와 영국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는 보육교사 자격 갱신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있다.

다. 근무여건

OECD 자료에서는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으로 교사 대 아동의 비율, 교사의 평균연령 및 성비 구성 등을 고려한다. 이를 중심으로 OECD 자료, 사례국가의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다음을 고려하게 된다.

첫째,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은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 우리는 보육사업안내에 연령별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교사의 평균 연령 또한 지나친 고령화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처럼 우리 보육현장의 교사 여성 편향성은 우려할 만하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2012년 5세 누리과정 시행 이후 연수받은 보육교사의 이직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셋째, 보육교사 근무여건의 지역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읍면지역이나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보육교직원 부족이 심각하다. 또 보육교사 1, 2, 3급 소지자의 비율을 확인하면 지역 간 보육교사 자격의 편차 또한 크다.

넷째,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질관리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교직원의 질에 대한 관리를 고려할 때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질관리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준으로 교사의 급여나 혜택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연수 기회 부여 등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IV. 보육비용의 지원

4장에서는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보육비용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OECD 회원국 중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보육비용 지원제도를 고찰함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 고자 한다. 그러나 국가별로 보육·유아교육의 행정체계가 다르므로 제시된 자료 는 보육, 유아교육, 또는 보육 및 유아교육으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음을 밝 힌다.

1. OECD 회원국 보육비용 지원

가. 보육비용 예산

만 5세 미만 아동들을 위한 OECD 회원국들의 공적 보육비용 예산을 각 국 가의 GDP비용과 비교하여 그 비율로 나타내면 <표 IV-1-1>과 같다. OECD 회 원국의 공적 보육비용 예산 평균은 GDP 대비 0.6%이다. 스웨덴(1.1%), 영국 (1.1%), 프랑스(1.0%), 핀란드(0.9%)의 정부 보육비용 예산은 OECD 국가 평균 (0.6%)보다 높았으며, 이탈리아(0.6%)는 평균과 동일하였다. 반면, 스페인(0.5%), 독일(0.4%), 호주(0.4%), 한국(0.4%), 일본(0.3%)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자료는 2011년에 발간된 OECD Family database에 기재된 데이터로 조사의 시점은 2007년이다. 그러므로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들의 공적 보육비용 예산에 대한 최신 데이터가 부재한 상태이고, 특히 보육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우리나라를 해석할 시에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표 IV-1-1> OECD 회원국의 보육비용 및 국내 총생산(GDP) 대비 비중(2007)

구분	국내 총생산(GDP) 대비 비중
스웨덴	1.1 %
영국	1.1 %
프랑스	1.0 %
핀란드	0.9 %

(표 IV-1-1 계속)

구분	국내 총생산(GDP) 대비 비중
이탈리아	0.6 %
스페인	0.5 %
독일	0.4 %
호주	0.4 %
한국	0.4 %
일본	0.3 %
OECD 평균	0.6 %

자료: OECD(2011). Family Database (PF3.1.A). 자료 축소 편집 함. 원자료 부록에 수록함.

OECD 회원국들의 아동 1인당 정부의 보육비용을 살펴보면 <표 IV-1-2>와 같다. 10개의 국가 중에 핀란드(9,838 달러)가 제일 많은 공적 보육비용을 지급하였고, 그 다음으로 스웨덴(9,555 달러), 영국(7,818 달러), 프랑스(7,537 달러) 차례로 높게 나타났다. OECD 평균은 6,111 달러이며, 호주(6,835 달러)와 이탈리아(6,184 달러)는 OECD 평균과 비슷한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독일(4,398 달러), 일본(3,890 달러), 한국(1,129 달러)로 OECD 평균보다 낮은 비용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OECD(2011)자료는 2007년에 연구된 자료를 담은 것으로, 해석 시 최근의 변화 내용을 수렴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연령 군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표 IV-1-2>와 같다.

<표 IV-1-2> OECD 회원국의 아동 1인당 공적 보육비용

단위: 달러

구분	총계	만0~2세	만3~5세	차이 (만3~5세 ~ 만0~2세)
핀란드	9,838	7,118	2,420	-4,698
스웨덴	9,555	5,928	3,627	-2,301
영국	7,818	3,563	4,255	692
프랑스	7,537	2,858	4,679	1,821
호주	6,835	1,726	5,709	3,983
이탈리아	6,184	1,558	4,626	3,068
독일	4,398	860	3,538	2,678
일본	3,890	2,683	1,207	-1,476
한국	1,129	754	1,375	637
OECD-24개국 평균	6,110	2,549	3,591	1,042

주: 1) 자료를 축소 편집 함. 원자료는 부록에 수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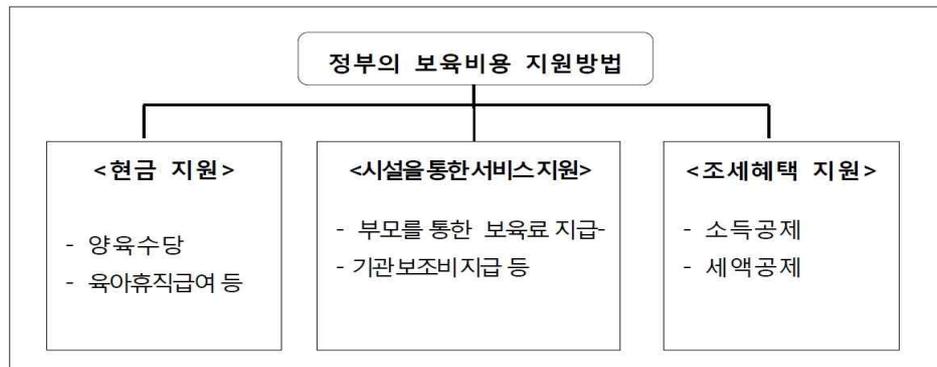
2) 원자료에 스페인 국가의 보육서비스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자료: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OECD 국가들은 만 3~5세 아동 1인당 평균 3,591달러, 만 0~2세는 2,549달러의 정부 보육비용이 지급되었다. 즉, 만 3~5세 아동 1인당 1,042달러가 더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9개국 중, 핀란드, 스웨덴, 일본은 만 0~2세 아동의 정부 보육비용이 만 3~5세보다 높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영국,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독일, 한국은 반대로 만 3~5세 아동의 정부 보육비용이 더 높았다. 연령군에 따른 정부 보육지원비용 차이를 살펴보면, 핀란드(4,968달러)가 가장 높은 차이를 보였으며, 우리나라(637달러)가 가장 낮은 차이를 보였다.

나. 보육비용 지원제도

2011년 OECD 보고서(Family database)에 의하면 가족을 위한 국가의 보육비용 지원제도는 [그림 IV-1-1]에 보는 바와 같이 크게 3가지, 현금 지원(child-related cash transfers to families with children), 시설을 통한 서비스 지원(public spending on servic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조세혜택 지원(financial support for families provided through the tax system)으로 분류된다.



자료: OECD. Family Database(PF1.1) 내용을 그림으로 구성함.

[그림 IV-1-1] OECD 회원국의 보육비용 지원방법 종류

각 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금 지원은 양육수당 혹은 자녀수당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자녀 연령, 가족 총소득, 가족 유형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육아휴직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의 가구 소득을 지원해주는 것과, 한 부모 가

정을 위한 가구 소득지원제도 역시 현금지원에 포함되나, 본 보고서에서는 현금 지원 중 양육·아동·가족수당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시설을 통한 서비스 지원이란, 만 0~5세 아동을 위한 보육·유아교육 기관을 위한 직접적 재정지원, 부모에게 주는 보육료 지원, 아동과 시설을 위한 보조비 지원, 가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 가정을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본 보고서는 부모를 통한 보육료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루었다.

조세혜택 지원이란 가구의 소득액 일부를 제하여 줌으로써 과세적용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지불해야 하는 과세에서 근로 유무와 같은 조건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직접 제하여 주는 세액공제를 의미한다(OECD Family database, 2011).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혹은 선진국가들의 현황에 따른 소득 내지 세액공제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OECD 회원국의 보육비용 지원의 유형에 따른, 각각의 지원 비용을 GDP 대비 비율로 전환한 결과는 <표 IV-1-3>과 같고,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IV-1-2]와 같다. 2007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보육비용 지원제도 중 현금 지원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22%이었으며, 시설 서비스 지원은 0.78%, 조세혜택지원은 0.25%로 나타났다. 즉, 현금 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 서비스 지원, 조세혜택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OECD 국내 총생산(GDP) 대비 보육비용 지원 비율(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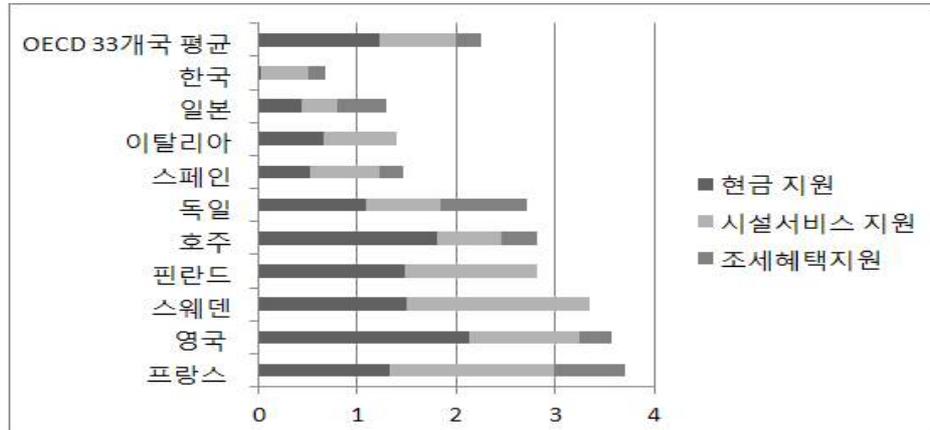
단위: %

	보육비용 지원 유형			총계
	현금 지원	시설서비스 지원	조세혜택지원	
프랑스	1.33	1.66	0.72	3.71
영국	2.13	1.11	0.33	3.58
스웨덴	1.49	1.86	0.00	3.35
핀란드	1.48	1.34	0.00	2.83
호주	1.80	0.65	0.36	2.81
독일	1.09	0.75	0.88	2.71
스페인	0.52	0.71	0.24	1.47
이탈리아	0.65	0.75	0.00	1.40
일본	0.43	0.36	0.51	1.30
한국	0.02	0.48	0.17	0.66
OECD 33개국 평균	1.22	0.78	0.25	2.20

주: 자료를 축소 편집 함. 원자료는 부록에 수록함.

자료: OECD(2011). Family Database (PF1.1A).

각 유형 보육비용 지원금액을 모두 합하였을 경우, 프랑스, 영국, 스웨덴은 각 국가 GDP의 3%를 넘었으며, 핀란드, 호주, 독일은 OECD 국가 평균(2.20%)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페인(1.47%), 이탈리아(1.40%), 뉴질랜드(1.30%), 일본(1.30%), 한국(0.66%)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OECD(2011). Family Database (PF1.1A). 자료 축소 편집 함. 원자료는 부록에 수록함.

[그림 IV-1-2] OECD 국내 총생산(GDP) 대비 보육비용 지원 비율(2007)

국가별 보육비용 지원 유형 비율을 살펴보면, 영국, 핀란드, 호주, 독일은 현금지원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며,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은 시설서비스 지원의 비중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독일과 일본은 조세혜택 지원의 비중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소결

OECD 회원국의 정부의 보육비용 평균은 GDP 대비 0.6%이며, 아동 1인당 6,111달러가 지급되었다. 연령 군으로 살펴보면, 만 3~5세 아동 1인당 평균 3,591달러, 만 0~2세는 2,549달러의 정부 보육비용이 지급되었다. 2011년 OECD Family database에 의하면 가족을 위한 국가의 보육비용 지원제도는 현금 지원, 시설을 통한 서비스 지원, 조세혜택 지원으로 분류되며, 2007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현금지원은 GDP 대비 1.22%, 시설서비스지원은 0.78%, 조세혜택 지원은 0.25%로 나타났다.

2. 우리나라 보육비용 지원

가. 보육비용 예산

우리나라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보육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IV-2-1>은 2005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의 총 보육예산을 GDP 대비 비율로 환산한 것으로, 2009년의 경우 3조 5천7백억 원, 2010년은 5조 6천1백억 원, 2011년은 6조 5천9백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보육 예산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7년 동안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2005년(0.15%)부터 2009년(0.34%)까지 예산은 약 두 배로 크게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0년(0.48%)에는 2005년 대비 3배, 2011년(0.53%)에는 약 3.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GDP 대비 보육 서비스 예산 변화(2005~2011)

단위: 십억 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GDP	865,241	908,744	975,013	1,026,452	1,065,037	1,173,274	1,237,128
보육 예산	1,324	1,724	2,287	2,992	3,573	5,612	6,592
GDP 대비 보육 예산 비율	0.15%	0.18%	0.23%	0.29%	0.34%	0.48%	0.53%

주: 1) GDP는 16개 시·도 취합자료임

2) 보육예산은 국고 지원 사업 예산임. 특별사업 예산은 제외됨.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및 내부자료(제인용, 서문희 외 2009).

보육사업에 대한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일반회계)로 이루어진다. 2010년의 경우, 총 보육 예산은 약 5조 6,121억 원이었으며, 2011년에는 약 6조 5,923억 원으로 약 9천8백억 원(17.4%) 증가하였다. 2007년 아동 1인당 정부의 공적 보육비용은 1,129달러(약 125만원)에 비하면 2011년은 아동 1인당 약 400만원으로 비용이 현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예산 부담률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정부가 78.6%, 지자체가 21.4%를 담당하였고, 2011년에는 정부가 76.1%, 지자체가 23.9%를 담당하였다. 정부 보육예산 부담이 2.5% 감소한 반면, 지자체는 2.5% 부담률이 증가하였다.

〈표 IV-2-2〉 GDP 대비 보육사업 예산 비율(2010, 2011)

단위: 억 원(%), 명

구분		2010년		2011년	
보육사업 예산	계	56,121	(100.0%)	65,923	(100.0%)
	정부사업	44,114	(78.6%)	50,192	(76.1%)
	지자체특수시책	12,007	(21.4%)	15,731	(23.9%)
GDP		11,732,749		12,371,282	
GDP 대비 보육사업 예산 비율		0.48 %		0.53 %	
만 0~5세 아동 수 (명)		1,556,808 명		1,621,948 명	
아동 1인당 보육비용 (원)		3,617,478 원		4,064,443 원	

주: 1) GDP는 16개 시·도 취합자료임

2) 한국은행, 국내총생산(명목) : 2010년, 2011년 모두 확정치.

자료: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자료.

최근 2년간 보육서비스 예산 항목별 비율을 살펴보면 <표 IV-2-3>과 같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부분이 전체 보육예산의 약 80%로 다른 사업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종사자 인건비 사업 부분으로 나타났다. 연간 보육예산은 7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도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연간 보육사업안내서에 따르면 보육예산 지원을 크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보육료 지원과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를 중심으로 지급하는 어린이집별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IV-2-3〉 전체 보육서비스 예산 하위 항목별 비율(2011, 2012)

단위: %

구분	사업내용	2011년	2012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 -3~4세 보육료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 -장애아 보육료 전액 지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정 보육료 추가 지원	78.1	79.0
보육 돌봄 서비스 (종사자인건비)	-국공립·법인, 영아 전담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15.9	14.0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차상위 36개월 미만 영유아 양육수당 (20~10만원/월) 지급	3.6	3.4
어린이집지원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우수어린이집 규모별 운영비 지원	0.9	2.6
보육인프라구축	-보육사업 행정지원 및 홍보 등 -중앙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0.7	0.5

(표 IV-2-3 계속)

구분	사업내용	2011년	2012년
보육인프라구축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육아 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원장, 보육교사 자격관리업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우수 보육프로그램 발굴·보급 -보육전자바우처 운영 및 시스템기능개선 -전국적 차원의 보육실태조사 -농림부 이관	0.7	0.5
어린이집기능보강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증·개축, 시설환경개선 지원	0.6	0.4
어린이집평가인증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지원	0.2	0.2
계		100.0	100.0

주: 1) 보육인프라구축 사업은 총 10개의 하위 사업(보육사업관리, 중앙보육정보센터운영, 육아종합지원서비스제공, 어린이집 교원 자격관리,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보육실태조사, 농어촌소규모보육서비스제공)으로 구성됨.

2) 어린이집 사업은 총 2개의 하위 사업(어린이집지원,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구성됨.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1 보육통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위한 국가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살펴보면 <표 IV-2-4>와 같다. 2011년의 경우, 만 0세는 매달 394,000원, 만 1세는 437,000원, 만 2세는 286,000원, 만 3세는 197,000원, 만 4세 이상은 177,000원이 국가로부터 지급되었다. 이는 2007년과 비교하여 비용측면에서 해마다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4> 보육료지원 단가(2007~2011)

단위: 천원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2007	361	317	262	180	162
2008	372	327	270	185	167
2009	383	337	278	191	172
2010	383	337	278	191	172
2011	394	347	286	197	177

자료: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우리나라의 '보육비용'은 아동 1명당 정부로부터 기관에 보조되는 '기본보조'와 더불어 기관 이용 아동의 가정에서 아이사랑카드 제도를 통해 기관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보육료' 금액을 모두 합산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표

IV-2-5>에 제시되어 있다. 기본보조의 경우, 2012년 3월부터는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아전담 어린이집(단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은 제외)에도 지원된다. 만 0세의 경우 361,000원, 만1세는 174,000원, 만2세는 115,000원의 기본보조가 지원되고 있다.

〈표 IV-2-5〉 만 0~2세 연령별 보육비용 구성

단위: 천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2010년			2011년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기본 보조	292	134	86	340	164	109	350	169	112	361	174	115
보육료	361	317	262	372	327	270	383	337	278	394	347	286
보육비용	653	451	328	712	491	379	733	506	390	755	521	401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재인용, 서문희 외, 2011).

나. 보육비용 지원제도

2011년 보육통계 자료에 의하면, 보육사업 예산의 약 80%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 지원비 항목이었으며, 다음으로 국공립 및 법인, 영아 전담 등의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항목(약 1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료 지원과 인건비 지원은 보육서비스 기관을 통한 지원제도이기에, OECD 보고서(Family database, 2011)에서 구분한 분류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시설을 통한 서비스 지원'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금 지원(양육수당)' 및 '조세혜택 지원'의 비중은 그보다 작지만, 어떠한 세부 항목이 있으며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011년 OECD 보고서(Family database)에 의하면 각 보육비용 지원제도마다 여러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나, 현금 지원은 '양육수당'을, 시설을 통한 서비스 지원은 '보육료 지원' 중심으로, 조세혜택 지원은 '소득 및 세액공제'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현금 지원 (양육수당)

우리나라의 현금지원 즉, 양육수당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3인 147만원; 4인 180만원; 5인 213만원; 6인 246만원)에만 연령별로 지원 금액

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의 경우 월 20만원, 13~24개월은 월 15만원, 25~36개월은 월 10만원을 제공한다.

2) 시설을 통한 서비스 지원(보육료 지원)

우리나라는 2012년 3월부터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에게는 연령별로 차등적 현금 지원을 하고 있다. 만 3~4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하위 70%의 가구에만 정부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소득 합산액의 75%를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만 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정책 시행으로 부모의 소득수준 및 아동의 기관 유형(유치원, 어린이집)과 무관하게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의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월 5만 9천원을 유아학비로 지원받는다. 즉, 만 0~2, 5세 아동은 모의 취업 여부· 아동의 출생순서·가구 소득수준·아동의 양육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른 금액의 현금 지원을 받는 반면, 만 3~4세 아동의 경우 소득하위 70% 가구에만 지급되며 기관을 이용하였을 시에만 연령에 따라서 교육 및 보육료 지원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표 IV-2-6〉 보육료 지원(2012)

단위: 천원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보육료	394	347	286	197	177	200	
비고	소득수준 무관			소득하위 70%		소득수준 무관 (만5세 누리과정)	
미이용 아동	200	150	100				
비고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			-			
맞벌이 가구 보육비 지원				보육료·유아학비와 동일			
비고	-			부부합산 소득의 75% 으로 소득액 재선정		-	
장애아 보육비	394(종일), 394(야간), 591(24시간), 방과 후 장애(197)						
비고	가구 소득·재산과 무관						
다문화 가정 보육비	종일	394	347	286	197	177	200
	야간	24	591	520.5	429	295.5	265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보육사업안내.

2011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의 규모를 살펴보면 <표 IV-2-7>과 같다. 총 991,310명의 아동이 보육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보육료 지원 아동 규모(2011)

단위: 명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이상	총계
112,933	188,198	244,469	196,531	133,908	115,271	991,310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1 보육통계.

3) 조세혜택 지원

우리나라의 조세혜택 지원에 대한 기준은 <표 IV-2-8>과 같다. 부양가족인 자녀와 관련한 소득공제를 살펴보면,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구분된다. 직계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며, 추가공제는 6세 이하의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자녀가 2명이면 연 100만원이 추가 공제되는데, 자녀의 수가 2명을 넘을 시에는 자녀 1명당 2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정유석, 2012). 특별공제는 교육비 공제가 있으며,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는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 지원 한도액은 900만원이다. 최근 수년 동안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자녀에 대한 추가적 세제지원이 많아졌으며,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지원제도는 소득공제가 많은 반면, 외국은 소득공제보다는 수당과 보조금 및 세액공제 관련 조세혜택 지원이 많다(정유석, 2012).

<표 IV-2-8> 자녀양육에 대한 조세혜택 지원(2009~2010)

단위: 만원

지원 항목	2009	2010
기본공제 (1인당)	150	150
추가공제 (6세 이하) -교육비 공제와 선택	100	100
다자녀 공제 (2인 이상)	2인 50	2인 100
	3인 150	3인 300
	4인 250	4인 500
출산 및 입양 공제 (1인당)	200	200

(표 IV-2-8 계속)

지원 항목	2009	2010
영유아 교육비	300	300
초·중·고 교육비 한도	300	300
대학생 교육비 한도	900	900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20	120
육아 휴직급여, 출산 후 휴가급여	육아 휴직급여: 50(월) 출산 후 휴가급여: 최대 135(월)	
소득공제(근로장려세제)	소득, 재산 자녀요건 충족시 80~120	

주: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의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3인 147만원; 4인 180만원)에만 연령별로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분석」, 2010, 12. (재인용, 정유석, 2012)

다. 소결

우리나라의 보육사업 예산은 최근 7년간 꾸준히 증가한 결과, 2005년에는 GDP 대비 0.15%였으나, 2011년에는 0.53%로 약 3.5배가 증가하였다. 보육 예산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80%를 차지하며, 이는 ‘시설을 통한 서비스 지원’ 제도의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2012년 3월부터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에게는 연령별로 차등 지원을 하며, 만 3~4세의 자녀의 경우, 소득하위 70%의 가구에만 정부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금 지원(양육수당)의 경우 36개월 미만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일 때, 연령별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조세혜택 지원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있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된다.

3. 프랑스 보육비용 지원

OECD 회원국의 여성 취업률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출산과 관련이 깊은 25~54세 연령의 프랑스 여성 중 76.6%는 사회 노동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70.9%)보다 높은 수치(Doing better for Families, 2011)다. 프랑스 여성의 취업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파트타임은 21.1%이며 임시직종은 11.6%로, 이는 OECD 평균(파트타임: 21.7%, 임시직종: 11.0%)과 비

슷하다. 25~54세 여성의 취업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 라고 해석할 수 있음과 동시에 육아에 대한 프랑스 국가의 든든한 보육 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 양육을 위한 보육비용 지원제도를 사회가 제공해 줌으로써,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다(정미라·조희연·안재진, 2009). 프랑스는 연령별 분리이원체제이므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행정체계와 아동 연령에 따른 보육 및 교육 유형을 먼저 살펴본 후, 만 0~5세 아동을 위한 프랑스 보육정책의 개요와 보육비용의 예산과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보육정책 개요

1) 보육정책의 변화

프랑스는 초기부터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을 강조하는 복지의 성격을 많이 지녔다. 그러나 1981년의 범령의 탄생되면서 아동의 발달에 기초한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정미라 외, 2009). 이때부터 교육부를 통해 만 2~6세 아동들을 위한 재정지원이 시작되었다. 1986년 5월 학생시민운동으로 여성이 해방되면서, 취업모의 사회진출 증가현상이 돋보이게 되었고, 그 결과 가사와 육아를 위한 사회적 지원, 즉, 공공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생겨났으며, 보육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 투자가 시작되었다(정미라 외, 2009). 1980년 이전까지는 공공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1980년 경제 위기와 복지 국가 재편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개별지원 및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전환되었다(홍승아, 2005). 1994년 이후부터 자유주의 경제원리가 도입되어, 보육기관도 역시 개별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고,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 가정 내 보육수당 등 혜택이 지원되고 있다(정미라 외, 2009). 즉, 초기에는 빈민층 구제를 위한 복지성격에서, 추후 부모의 조화로운 일과 가정생활을 돕기 위한 지원의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2) 행정전달체계

프랑스는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3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사회사업부(Ministere de Social Affaire), 모자보건국(PMI-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가족수당지급처(CNAF-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지방자치단체(commune)로부터 관리와 지원을 받는다(이화도, 2007). 프랑스 보육 서비스 기관은 가족수당지급처(CNAF)의 가족수당기금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되어, 이를 이용하여 시설건립과 유지 및 비용을 사용한다. 만 3~5세 유아는 교육부(Ministere de Education Nationale), 지방자치단체(commune)를 주요 축으로 관리와 지원을 받으며(이화도, 2007), 기업과 기타행정부서로부터도 지원을 받는다. 만 3~5세를 위한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부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종사자 인건비, 학교 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건립이나 유지비용을 전달받는다.

3)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현황

만 0~2세 아동의 경우 63%가 부모양육을 통해 보육되고 있으며, 그 외 37%는 보육서비스를 통해 보육되고 있다.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37%)을 살펴보면, 18%는 가정 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를 통해, 10%는 집단보육시설(Creche collective)이나 유치원(Jardin d'enfant) 및 시간제 보육(Halte-Garderie)을 통해 보육되고 있다(정미라 외, 2009). 반면, 만 3~5세 아동 대다수는 공공시설인 유아학교(Ecole maternelle)를 이용한다.

〈표 IV-3-1〉 프랑스의 보육 및 교육시설 유형

구분	기관	대상연령	서비스 적용범위
영·유아 보육	집단보육시설 (Creche collective)	3개월~만3세	10%
	시간제 보육 (Halte-Garderie)	0~6세	
	유치원 (Jardin d'enfant)	2년 3개월~6세	
	가정보육모 (Assistante maternelle)	0~6세	18%
	부모양육	0~6세	63%
	조부모 양육 및 기타	0~6세	9%
유아학교	유아학교 (Ecole maternelle)	2년 3개월~6세	2세 20.9% 3세 이상 100%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프랑스의 육아정책」, (정미라·조희연·안재진, 2009)을 축소 편집함.

나. 보육비용 지원제도

1) 보육비용 예산

프랑스의 최근 4년 동안의 보육비용 예산금액을 살펴보면 <표 IV-3-2>와 같다. 2008년의 경우, 1,995,782천 유로(약 2조 7,747억원)가, 2011년의 경우 2,421,299천 유로(약 3조 3,663억원)가 사용되었다. 전년도 대비 보육비용 예산금액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최근 4년 동안 프랑스의 보육비용 예산은 해마다 상승하여, 2008년도는 3.21%, 2009년에는 3.35%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전년도 대비 7.47%, 2011년에는 전년대비 9.24%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프랑스 보육비용 예산(2008~2011)

단위: 천 유로(원), %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보육비용 예산	1,995,782 (약 2조 7,747억원)	2,062,602 (약 2조 8,676억원)	2,216,578 (약 3조 817억원)	2,421,299 (약 3조 3,663조 원)
전년도 대비 변화율	△ 3.21%	△ 3.35%	△ 7.47%	△ 9.24%

주: 1) 원자료의 보육비용 예산을 이용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을 계산하여 제시함.

2) 2007년도 보육비용 예산은 1,933,673 천 유로 임.

3) △는 상승률을 의미함.

자료: 프랑스 교육부(CNAF-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Action sociale Ventilation fonctionnelle des dépenses Exercice(2011).

2) 보육비용 지원제도

가) 현금 지원(가족 수당)

프랑스는 가족수당이 가장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기금 징수처(URSSAF: Unions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에서 징수한 것으로, 가족의 생계를 국가가 일정 정도 부담해 주는 보조금 지급 제도다. 지원 대상 자격은 국적에 상관없이 부모가 0세 이상 21세 미만인 자녀와 함께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계소득과 자녀수에 따라서 수당의 유형을 결정 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수당 유형의 결정은 CAF 책임으로 매년 국민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신고서 자료를 토

대로 검토한 후 각 개인에게 지급할 수당의 유형(category)을 결정한다. CAF를 통해서 지급되는 수당 중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영·유아혜택(Early childhood benefits)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IV-3-3>과 같다.

<표 IV-3-3> 프랑스의 영유아 대상 혜택(2012)

단위: 유로(만원)

구분	대상	지급액	
출생 및 입양수당 (Birth/Adoption grant)	(가구 소득 제한)	916.70 (약 130만원)	
	자녀 출생가정/입양가정	1,833.41 (약 270만원)	
기초수당 (Basic allowance)	(가구 소득 제한) 2자녀 이상 가정	월 183.34 (약 27만원)	
취업 자유선택 보조수당 (Supplement for free choice of working time) & (Optional supplement for free choice of working)	자녀 1명 이상 가구(만3세 미만) 및 육이로 부모가 직장 그만두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기초수당 수급	기초수당 비수급
		무직	385.51 (약 56만원) / 568.85 (약 83만원)
		반일제 근무	249.22 (약 36만원) / 432.56 (약 63만원)
		50~80% 근무	143.76 (약 21만원) / 327.10 (약 48만원)
보육기관 자유선택 보조수당 (Supplement for free choice of childcare)	만6세 미만 자녀 및 자격 갖춘 보육모 고용시	최대 832.03 (약 120만원)	

주: 2012년 1월 1일부터 표의 내용과 같이 적용됨.
 자료: 유럽 및 국제 사회 보장제도 협회(CLEISS, 2012) 홈페이지
http://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a1.html .원 자료를 편집함.

출생 및 입양수당의 경우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자녀가 1명인 경우 가족 연간 소득이 34,103유로(약 5,000만원)를 넘지 않아야 하며, 편부모 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간 소득이 45,068유로(약 6,600만원)를 넘으면 안 된다.

기초수당의 경우 2자녀 이상 가정이 대상이며 출산의 경우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입양의 경우 만 20세가 될 때까지 월 183.34 유로(약 16만원)가 지급된다. 가족 소득액 기준은 출생 및 입양수당과 동일하다.

자녀 양육을 취하여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시간제로 일해야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지급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관련 수당은 6개월간 지급되며, 자녀가 2명인 경우만 3세까지 지원된다. 만 3세 이상의 자녀를 입양하였을 경우에도 자녀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최소 1년간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표 IV-3-4>와 같이 차등으로 지급된다.

〈표 IV-3-4〉 프랑스의 영유아 대상 혜택

단위: 유로

구분	직장을 그만둔 경우	근무시간	
		반일제 미만	50~80% 시간제
기초수당 수급 가정	385.51 (약 56 만원)	249.22 (약 36 만원)	143.76 (약 21 만원)
기초수당 비수급 가정	568.85 (약 83 만원)	432.56 (약 63 만원)	327.10 (약 48 만원)

주: 원 자료를 편집함.

자료: 유럽 및 국제 사회 보장제도 협회(CLEISS, 2012) 홈페이지

http://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a1.html

나) 시설을 통한 서비스 지원(보육료 지원)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보육기관의 자유선택에 따른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보육기관 자유선택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보육료 지원을 의미한다. 자녀의 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라 3수준으로 나뉘어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자녀를 위해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경우(Care hired by family), 단체나 회사 고용보육 보육모를 이용하는 경우(Childminder), 가정보육 제공자나 소규모 보육시설(Home child carer)에 대해서도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그 내용은 <표 IV-3-5>와 같다.

〈표 IV-3-5〉 보육기관 자유선택 보조수당 차등 지원

단위: 유로 (만원)

구분	가구 소득 정도		
	20.281 미만	20.281~45.068	45.068 이상
가정 고용 보육보조금 (Care hired by family)	455.02 (약 67 만원)	285.92 (약 42 만원)	182.09 (약 27 만원)
단체나 회사 고용보육 보육모 (Childminder)	688.55 (약 100 만원)	573.80 (약 84 만원)	459.05 (약 67 만원)
시설/가정 보육자 (Home child carer)	832.03 (약 120 만원)	717.24 (약 105 만원)	602.49 (약 88 만원)

주: 1) 모두 만0~3세 기준임.

2) 원 자료를 편집함.

자료: 유럽 및 국제 사회 보장제도 협회(CLEISS, 2012) 홈페이지

http://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a1.html

다) 조세혜택 지원

프랑스의 경우, 가족의 상황(자녀 수, 자녀 연령 등)에 따라 조세 지원을 받는다(정유석, 2012). 이전에는 피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무조건적인 복지혜택 및 조세 지원을 제공하였으나, 현재에는 조세혜택 수혜자로 하여금 근로참여를 유도하는 근로장려세제로의 조세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프랑스의 PPE(Prime pour l'Emploi)로,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프랑스 전체 가구의 22.8%가 PPE 근로장려세제를 신청하였고, 국세청을 통해 관리된다(정유석, 2012). <표 IV-3-6>은 가족유형별, 근로장려세제 신청과 관련된 가구 소득액 제한선이 명시되어 있다.

<표 IV-3-6> 프랑스 PPE 근로장려세제 소득액 제한선(2012)

단위: 유로 (만원)

가족유형	가구 소득액 제한선
미혼, 이혼 (자녀 없거나, 양육하지 않는 경우)	17,451 (약 2,550 만원)
사별	17,451 (약 2,550 만원)
결혼 혹은 부부 모두 최소 3,747 유로 소득	17,451 (약 2,550 만원)
결혼 혹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최소 3,743유로 소득	26,572 (약 3,880 만원)
미혼, 이혼, 편모 (자녀 1명 이상)	26,572 (약 3,880 만원)

자료: 프랑스 행정부 홈페이지 방문 <http://vosdroits.service-public.fr/F2882.xhtml>.

2012년의 경우 미혼, 이혼, 사별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액이 17,451유로(약 2,550만원)를 넘지 않아야 하며, 그 외의 가구는 26,572유로(약 3,880만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결혼을 한 경우에도 부부가 모두 저소득 근로자인 경우 가구 소득액 제한선이 미혼, 이혼, 사별 가구와 비교하여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저소득 근로자인 경우 소득 제한선이 그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다. 소결

프랑스는 1980년 경제위기와 복지 국가 개편에 힘입어 보편적인 보육 서비스에서, 개별화된 보육서비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좀 더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자녀가 만 21세가 될 때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가족 수당을 공급하여, 부모가 자녀를 낳아, 그 자녀를 독립시키기 전까지 요구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녀양육부담을 국가가 이해하고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가족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에서도, 자녀수와 가족의 전체 소득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나친 보편 주의식 현금지원이 아닌 제한된 재원을 이용하여 필요한 가정에 알맞게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녀출생수당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하는 기초수당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출산을 독려하는 기제들이 설치되어 있다. 부모의 직업 유무 내지 근로시간의 정도에 따라서 기초수당의 지급률을 조정하며, 가구 소득액의 제한선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육모를 고용하는 경우 자녀가 머무르는 곳과 보육모의 특성에 따라, 또한 부모의 소득 레벨을 3단계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의 다양한 가족수당 제도는 국적을 초월한 보편성을 질게 띄고 있는 보편적 보육비용 정책임과 동시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의 다양한 가족 배경과, 부모들의 여러 근로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최대한으로 효율성을 높여 자녀양육부담을 장기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4. 영국 보육비용 지원

영국의 '보육정책의 개요'는 III장에서 이미 설명되었으므로, 본 장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보육비용 지원' 부분부터 알아보려고 한다.

가. 보육비용 지원

1) 보육비용 예산

2007년의 경우, 영국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정부의 비용은 GDP의 1.1%로(OECD, Family database, 2011), 만 0~2세의 경우, 아동 1인당 연간 3,563 파운드(약 646만원), 만 3~5세 아동의 경우 4,255파운드(약 772만원)의 보육비용이 지출되었다. 영국의 교육과학부 통계자료(A summary of the NAO's Department for Education 2010~2011)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약 579억 4,500만 파운드(약 105조 원)가 교육부로 지원되었으며, 이 중 영·유아 양육을 위한 103,000개의 보육·교육기관을 통해 20억 8,800만 파운드(약 3조 7,715억

원)가 지원되었다. 이는 전체 보육·교육 예산의 3.6%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008~2009년도의 예산비용을 살펴보면, 약 510억 5,600만 파운드(약 92조 원)가 교육부로 지원되었으며, 이 중 영·유아 양육을 위하여 113,000개의 보육·교육기관에 15억 6,500만 파운드(약 2조 8,400억 원), 즉 교육부 전체 비용의 3.0%가 지원되었다. 2008년~2009년 대비 2010~2011년에 영·유아 보육·교육을 위하여 5억 2,300만 파운드(약 9,492억 원)가 더 많이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1〉 영국의 보육 및 교육 서비스 비용(2008~2011)

단위: 백만 파운드(원)

	2008~2009	2010~2011
교육부 지출비용	51,056(약 92조 원)	57,945(약 105조 원)
보육·교육비용	1,650(약 2조 8400억원)	2,088 (약 3조 7715억원)

주: 보육·교육비용은 Sure Start, Early Years and Childcare 대상지출비용임.

자료: 영국 교육부 발간 보고서, A Summary of the NAO's work on the Department for Education 2010-11(Figure 1을 편집함).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설립 유형별 기준으로 종일제 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정부 비용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06년의 경우 종일제 보육시설이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았으나, 2010년에는 휴일클럽이 두 번째로 높은 지원을 받았다.

〈표 IV-4-2〉 영국의 보육·교육 기관 1개소 당 정부 지원비용(2006~2010)

단위: 파운드(원)

구분	2006	2007	2008	2010
종일제보육시설 (Full day care)	40,100 (약 7240만원)	39,900 (약 7200만원)	41,900 (약 7570만원)	56,000 (약 1억)
종일제 아동센터 (Full day care in children's centers)	159,600 (약 2억 8800만원)	128,200 (약 2억 3천만원)	181,500 (약 3억 3천 원)	197,600 (약 3억 5700만원)
기간제 보육시설 (Sessional)	34,800 (약 6289만원)	29,100 (약 5250만원)	33,800 (약 6100만원)	47,500 (약 8580만원)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3,700 (약 4280만원)	17,800 (약 3210만원)	16,100 (약 2900만원)	45,500 (약 8220만원)
휴일 클럽 (Holiday/clubs)	33,000 (약 5900만원)	49,000 (약 8850만원)	59,900 (약 1억)	72,200 (약 1억 3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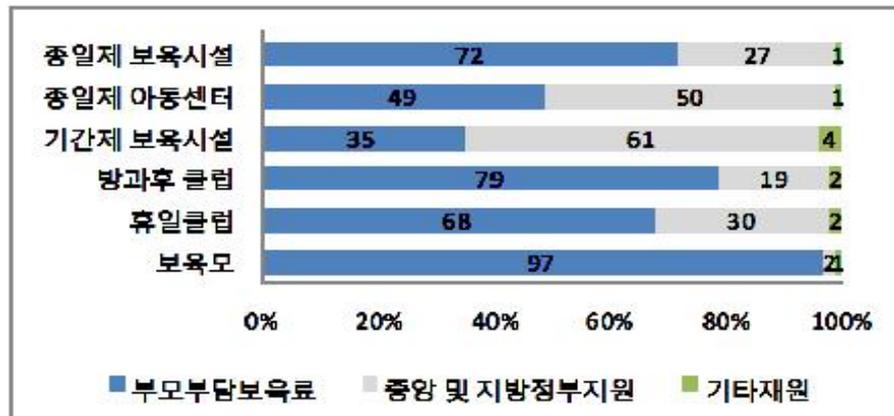
(표 IV-4-2 계속)

구분	2006	2007	2008	2010
보육모 (Childminders)	3,600 (약 650만원)	2,200 (약 400만원)	2,800 (약 500만원)	3,800 (약 680만원)

주: 1) 최대 빈도치(Median)를 나타내는 비용이 아닌 평균비용(mean)을 뜻함.
 2) 원자료를 편집함.

자료: 영국 교육부, UK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1(Table 9.16).

연도별 전체 지원금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2007년에 모든 보육·교육기관에서 정부지원금이 줄어들었고, 2008년에는 2006년 기준으로 회복하였으며, 2010년에는 더 많이 회복하여 2006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재원의 부담률을 살펴보면 [그림 IV-4-1]과 같다.



자료: 영국 교육부, UK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0) (Chart 9.1).

[그림 IV-4-1] 영국의 보육재원 및 부담

2) 보육비용 지원제도

가) 현금지원(아동 수당)

1946년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의 명칭으로 시작되었으나, 1977년 첫 번째 자녀를 대상으로만 제공되던 대상제한을 모든 자녀에게 확대하며 아동수당(Child benefit)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현재의 아동수당은 부모소득과 저축 등에 상관없이 만 1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부모가 영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일

주일 기준으로 12시간의 교육을 받는 기관에 있어야 하며, 높은 수준의 교육 (Advanced education)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 학위(Diploma of Higher Education-DHE)나 교사자격증 프로그램 등의 기관에 다니는 경우, 아동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2011년 4월부터, 첫 번째 자녀에게는 매주 20.30 파운드(약 3만 6천 원), 그 외에 자녀에게는 매주 13.40 파운드(약 2만 4천 원)를 지급한다 (HM Revenue & Customs). 또한 부모가 없어서 대리인에 의하여 양육되는 아동의 경우에도 아동 당 매주 15.55 파운드(약 2만 8천 원)가 지급된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고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기존 제공되었던 아동수당혜택이 없어지므로(BBC News, 2010), 전체 아동의 약 80%에 아동수당이 제공될 것이다.

〈표 IV-4-3〉 영국 아동수당 금액

단위: 파운드 (원)

	2011년 4월부터		2013년부터	
	대상기준	매주	대상기준	매주
첫째 자녀	가족소득 내지 저축과 상관없음 (전체 아동 100%)	20.30 (약 3만6천원)	고소득 가정 제외	-
두 번째 자녀부터		13.40 (약 2만 4천원)	(전체 아동의 80%)	-
보호자		15.55 (약 2만 8천원)		-

주: ‘-’는 2013년 아동수당 금액이 아직 제시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HM Revenue & Customs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관련 지불표를 편집함. (2012년 6월)
 (<http://www.hmrc.gov.uk/childbenefit/payments-entitlements/payments/rates.htm>)

나) 시설을 통한 서비스 지원(보육료 지원)

(1) 보육료 지원- 무상교육(Free Entitlement)

만 3~4세 아동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스코틀랜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경우 매주 12.5시간, 웨일즈의 경우 매주 10시간, 그 외에 영국 전 지역에서는 15시간을 무상교육 받는다(Childcare costs survey, 2012). 대상 서비스는 유치원, 유아원, 가정보육이며, 장기적으로 주당 무상교육 시간을 2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서문희 외, 2009).

(2) 기반시설 및 교육과정 지원

정부의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비용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이고, 2010~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4배가 높은 비용이 투입되었다. 2011~

2012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과정 지원 비용을 살펴보면, 기반시설 지원비용의 추세와는 반대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8~2009년에는 정부에서 7천7백만 파운드(약 1,390억 원)를 지원했으나, 2011~2012년에는 약 절반 비용인 3천7백만 파운드(약 668억 원)를 지원하였다.

〈표 IV-4-4〉 영국의 보육·교육 기반시설 및 교육과정을 위한 비용

단위: 백만 파운드(원)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기반시설	17 (약 307억원)	20 (약 361억원)	80 (약 1,445억원)	71 (약 1,264억원)
교육과정	77 (약 1,390억원)	76 (약 1,372억원)	64 (약 1,156억원)	37 (약 668억원)

주: 1) 2011~2012년 비용은 계획비용임. 그 이전 년도의 비용은 실제 지출 비용임

2) 원자료를 편집함.

자료: Department for Education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0-2011(2011. 3. 31)(Table 4).

다) 조세혜택 지원

(1) 기업 바우처 제도

영국의 초기 바우처 제도는, 보육비용 지원제도 중 현금지원의 한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바우처는 이미 1997년에 종결된 유아교육 바우처 제도가 아닌, 일부 기업을 통한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 바우처 제도이다. 초기 바우처 제도는 1995년 보수당 정권 말기에,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에 의해 만 4세아 아동을 위한 전국 확대 정책을 기점으로 1996년 유아교육과 학교교육 확대 법령(Nursery Education and Grant-Maintained School Education Act)에 의하여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그러나 1995년에 제안되어 시행되었지만, 1997년 7월 노동당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세금 환불법으로 전환되어 시행 6개월 만에 서비스가 종결되었다. 만 4세의 의무교육을 시행하려면 공립기관만으로는 부족하여, 민간 보육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였지만, 당시 민간시설이 너무 다양하여 일시에 일반화하거나, 규격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학부모에게 유아 1명당 1,100 파운드(한화 약 20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한 후, 학부모가 자유롭게 공·사립 기관을 선택하여 바우처를 이용하도록 지원하였다. 즉 학부모에게 기관의 선택권을 줌으로 인하여, 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고자 한 정책이

다. 그러나 영국의 바우처 제도는 정권 교체, 정액 바우처 금액 외에 발생하는 보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 지역별 시설 편차로 인한 학부모 선택권 제약, 만 4세 아동 가족에게만 유리한 소득 재분배의 왜곡 등의 문제로 종결되었다.

영국의 Childcare Costs 조사(2012)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의 보육 바우처 제도는, 근로자들의 예비세금감면의 일종으로 기업 종사하는 부모가 보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서문희 외, 2009). 고용인과 고용주 간에 계약을 통해 급여명세표와 함께 보육바우처가 제공하게 되고, 고용주는 급여에서 바우처 금액을 삭감하여 제시하거나, 급여는 그대로 두면서 추가로 바우처를 발행하기도 한다. 이는 과세 대상인 가구 소득액을 줄이는 효과로, 일종의 소득공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제시한 금액의 두 배가 절감 가능하다.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가 바우처를 위한 금액을 저장할 수 있으며 고비용이 발생하는 시기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방학과 같이 자녀양육기관이 쉬는 기간을 위하여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아동세액공제 및 근로세액공제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와 저소득층 가정에 제공하는 근로세액공제(WTC: Working Tax Credit)가 있다. 영국은 개인단위의 조세지원방식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가족단위의 공제혜택으로 확대되고 있다(정유석, 2012). 근로세액공제(WTC)는 2003년 4월 중간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2016년부터 Universal Credit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되거나 통합될 것이라고 밝혀졌다.

아동세액공제(CTC)는 대상 아동이 16세 생일 이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전일제로 교육을 받을 경우 아동이 20세가 될 때까지 적용되지만, 교육기관을 다니지 않으면 19세까지만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또한, 16세 이상 17세 미만의 아동이, 전일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그만두게 될 경우, 20주 동안 이내에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16세 이상이며 매주 24시간을 일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전일제 프로그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동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HM Revenue & Customs: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2012).

근로세액공제(WTC)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조세 지원제도로, 자녀가 없는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도 혜택대상이 된다. 근로세액공제(WTC)는 근로자의 연령,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아동세액공제(CTC)와 근로세액공제(WTC)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 두 조세혜택을 합쳤을 때 조세혜택 범위가 너무 높거나, 부모가 근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아동세액공제(CTC)만 지원받게 된다.

근로자가 16세 이상이며 배우자는 없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주 최소 16시간 이상을 근로하여야 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매주 최소 24시간을 일하여야 하며 배우자는 매주 최소 16시간을 일해야 한다. 근로자가 25세 이상인 경우, 자녀가 없다면 매주 최소 30시간의 근로가 요구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매주 최소 16시간, 다른 배우자는 매주 30시간을 일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다(HM Revenue & Customs: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2012).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될, 아동세액공제(CTC) 수치, 아동세액공제와 근로세액공제(CTC & WTC)가 합쳐진 수치를 살펴보면 <표 IV-4-5>와 같다.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조세 혜택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총소득액이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근로에 참가함으로써 근로세액공제(WTC)와 아동세액공제(CTC)를 모두 적용받는 것이, 아동세액공제(CTC)만 단독으로 받는 경우보다 더 높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5> 자녀수에 따른 아동 및 근로세액공제 금액(2012~2013)

단위: 파운드(만원)

구분	아동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 + 아동세액공제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소득 없음	3,240 (590)	5,930 (1,080)	8,620 (1,560)	-	-	-
5,000 (900)	3,240 (590)	5,930 (1,080)	8,620 (1,560)	7,115 (1,300)	9,805 (1,780)	12,495 (2,270)
8,000 (1450)	3,240 (590)	5,930 (1,080)	8,620 (1,560)	관련내용 없음		
9,485 (1,720)	관련내용 없음			6,650 (1,200)	9,340 (1,700)	12,030 (2,200)
10,000 (1,800)	3,240 (590)	5,930 (1,080)	8,620 (1,560)	6,440 (1,170)	9,130 (1,660)	11,820 (2,140)
15,000 (2,700)	3,240 (590)	5,930 (1,080)	8,620 (1,560)	4,390 (800)	7,080 (1,300)	9,770 (1,770)
20,000 (3,600)	1,545 (280)	4,235 (770)	6,925 (1,260)	2,230 (400)	5,030 (910)	7,720 (1,400)

(표 IV-45 계속)

구분	아동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 + 아동세액공제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25,000 (4,500)	0	2,185 (400)	4,875 (880)	290 (53)	2,980 (540)	5,670 (1,030)
30,000 (5,400)	0	135 (24)	2,825 (510)	0	930 (170)	3,620 (660)
35,000 (6,300)	0	0	775	0	0	1,570 (280)
40,000 (7,300)	0	0	0	0	0	0
45,000 (8,200)	0	0	0	0	0	0

자료: HM Revenue & Customs(2012).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나. 소결

영국은 지역에 따라 무상교육의 시간제한 정도는 각각 다르지만, 점차적으로 주당 20시간으로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출생순서를 고려한 아동수당의 차등적 혜택지원으로 프랑스와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전에는 가족의 소득과 저축에 상관없는 자녀가 있는 가족 100%에게 아동수당을 제공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고소득 가정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수혜조건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출산율 독려와 더불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는 직접적 현금지원 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영국의 많은 가족이 혜택을 받았으나, 이제부터는 꼭 필요한 가족을 선별하여 아동수당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가 예산에 대한 효율적 분배를 고려한 것으로, 아동수당의 필요정도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정말로 필요로 하는 가정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려는 취지로, 국가의 보육비용 부담률을 경감하는 동시에 형평성에 맞는 분배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아동세액공제와 더불어 모의 취업률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근로를 장려하는 조세혜택제도를 가지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출산 및 양육으로 소비되는 비용을 공제해 주는 근로세액공제는 일과 육아의 병행을 모두 장려하는 제도로서, 정유석(2012)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는 영국의 출산율을 10.1% 증가시켰으며, 여성들의 노동 공급을 4.9% 증가시킨 실효성이 높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만약 아동세액공제와 근로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받고 그 수혜 정도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에는, 영국정부는 수혜자에게 아동세액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에 맞는 분배를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5. 스웨덴 보육비용 지원

스웨덴은 취학 전 아동의 보육과 교육의 일원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이며,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2009년, 81.9%)이 OECD 국가 평균(2009년 70.9%)과 비교하여 매우 높고, 출산율 또한 안정적이며 높다는 점에서(2009년, 1.94명),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스웨덴의 보육·교육비용 지원제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원화된 체제이기 때문에, 보육과 교육의 단어에 차이를 두고 사용할 수 없으나, 다른 절들과의 통일성을 위하여 항 제목과 내용은 '보육'으로 통일하였다. 그러나 표의 명칭에는 원자료 제목에 의거하여 '교육'으로 명시되기도 하였음을 밝힌다. 스웨덴의 '보육정책의 개요'는 II장에서 이미 설명되었으므로, 본 장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보육비용 지원' 부분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가. 보육비용 지원

1) 보육비용 예산

OECD(2010년)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만 0~5세를 위한 보육비용 재정은 GDP의 1.1%로 OECD 국가 평균(0.6%)보다 높다. 2011년 스웨덴 통계청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의 경우 만 0~5세 아동을 위한 스웨덴의 보육지원 재정 총비용은 GDP의 1.63%로 나타났다.

〈표 IV-5-1〉 스웨덴 연간 교육비(2005~2010)

	연도						총	2009년 GDP 대비
	2005	2007	2007	2008	2009	2010	교육예산 중 비율	
만 0~5세	375 억 (6조2천억)	409 억 (6조7천억)	446 억 (7조4천억)	482 억 (8조억)	506 억 (8조4천억)	532억 (8조6천억)	18.6 %	1.63

자료: Statistical Yearbook of Sweden 2012. (Table 22.7). 원자료를 축소 편집함.

2010년의 경우, 총 2,026억 SEK(약 33조 원)가 취학전 아동교육, 학령기 아동교육, 성인교육(preschools, school age childcare, schools, and adult education)

을 위해 사용되었으며(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Facts and figures 2011), 이 중 34%인 683억 SEK(약 11조 원)이 취학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 중 만 1~5세 아동의 약 83%가 다니는 피르스콜라(Preschool)에 532억 SEK(약 8조 6천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레저타임센터(Leisure-time center)에 123억 SEK(약 2조 원)가 사용되었다. 스웨덴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중앙정부보조금, 지방세 및 부모 부담으로 충당된다(문무경, 2006).

2008년 기준으로, 기관별 보육비용을 살펴보면 <표 IV-5-2>와 같다. 피르스콜라가 제일 많은 보육비용을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레저타임센터, 가정보육, 개방형 프리스쿨 차례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살펴보면, 피르스콜라는 연간 112,500 SEK(약 1,800만원), 가정보육은 93,900 SEK(약 1,500만원), 레저타임센터는 33,200 SEK(약 54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2> 스웨덴 기관별 보육비용(2008)

단위: 크로나(원)

기관 유형	총 보육비용	아동 1인당 보육비용
피르스콜라(Preschool)	48,217,038(약 78억원)	112,500(약 1,800만원)
가정보육	2,496,248(약 4억원)	93,900(약 1,500만원)
레저타임센터	11,332,048(약 18억원)	33,200(약 540만원)
개방형 프리스쿨	290,432(약 4,700만원)	-

주: 개방형 학교인 경우 아동 1인당 보육비용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자료: The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Expenditure for pre-school class 2008.

2) 보육비용 지원제도

가) 현금지원(가족수당)

결혼 상태나 자녀의 유무에 따른 세제혜택을 지원해주지는 않지만, 보편적인 가족수당, 사회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지원, 가정 내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수당이 있다(이채정, 2009). 보편적 가족수당은 정액수당으로 매달 약 130 SEK(약 19만원)가 제공되며, 가족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국가보조가 부가적으로 제공된다. 가족지원으로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매년 소득 이외에 약 2,400 SEK(약 360만원)를 제공하며, 가정 총소득이 하위층에 속하는 경우 약 5,580

SEK(약 810만원)를 제공한다.

나) 시설을 통한 서비스 지원(보육료 지원)

가정 내 총소득과 양육시설의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 보육비용 부담금을 책정하고 그 비율의 차이가 커서 비용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1999년 정액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한 가정 당 첫 번째 자녀에게 매달 700 크로나(11만 5천 원)를 넘는 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 번째 자녀의 경우 매달 500 크로나(약 8만원), 세 번째 자녀는 매달 300(약 5만원) 이상의 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문무경, 2006). 2011년 9월 기준으로, 모든 기관의 보육료는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자녀의 출생 순서에 따라서 부모의 보육료 부담 비율은 달라진다. 자녀가 만 1~5세 보육료의 경우 첫 번째 자녀는 월 소득의 3%, 두 번째 자녀는 2%, 세 번째 자녀는 1%를 넘지 않아야 하면, 네 번째 자녀부터는 무료다. 만 6~12세 아동의 경우, 첫 번째 자녀는 월 소득의 2%, 두 번째 자녀는 1%, 세 번째 자녀 또한 월 소득의 1%를 넘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 자녀는 역시 무료로 보육료가 제공된다. 그 이외의 보육비용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금액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급되는데, 정액제의 큰 틀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부모의 보육료는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기도 한다.

〈표 IV-5-3〉 스웨덴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보육료 비용(2011)

단위: 크로나 (원)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	네 번째 자녀
만 1~5세	1,260 (약 20만원) 또는 월 소득의 3%	840 (약 14만원) 또는 월 소득의 2%	420(약 6만 8천 원) 또는 월 소득의 1%	무료
만 6~12세	840 (약 14만원) 또는 월 소득의 2%	420 (약 6만 8천 원) 또는 월 소득의 1%	420 (약 6만 8천 원) 또는 월 소득의 1%	무료

자료: 서문희 외 2011 자료에서 인용 및 재편집.

유아학급(preschool class)의 경우 2008년을 기준으로, 총비용의 65.9%는 교사 인건비 지원항목으로 소요되며, 20.3%는 시설 유지비와 같은 항목에 소요되었다(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 2008).

〈표 IV-5-4〉 스웨덴의 유아학급 비용(2008)

단위: 크로나(원), %

		총비용	시설비용	교사 인건비
총계	총비용	4,548,459 (약 7조 4천억원)	921,637 (1억5천만원)	2,995,863 (약 4억 8천만원)
	비율	100.0%	20.3%	65.9 %
	아동 1인당 비용	48,100 (약 780만원)	9,700 (약 190만원)	31,700 (약 520만원)
지방자치 비용	총비용	4,147,589 (약 6억 7천억원)	829,781 (약 1억 3500만원)	2,737,848 (약 4억 4700만원)
	비율	100.0%	20.0 %	66.0%
	아동 1인당 비용	47,400 (약 7,700만원)	9,500 (약 150만원)	31,300 (약 510만원)
학교자체 비용	총비용	400,870 (약 6,500만원)	91,855 (약 1,500만원)	258,016 (약 4,200만원)
	비율	100.0%	22.9%	64.4%
	아동 1인당 비용	56,800 (약 9,300만원)	13,000 (약 2,100만원)	36,500 (약 6,000만원)

자료: 서문희 외 2011 자료에서 인용 및 재편집.

유아학급(preschool class)의 경우 2008년을 기준으로, 총비용의 65.9%는 교사 인건비(2,995,863 SEK)항목으로 소요되었으며, 20.3%는 시설 유지비(921,637 SEK)항목으로 소요되었다(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 2008). 유아학급 비용의 부담률을 살펴보면, 지방자치 단체가 91.2%, 학교자체는 8.8%를 부담한다.

다) 조세혜택 지원

스웨덴은 자녀지원 제도로서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시스템은 없으며, 다만 자녀 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있다(정유석, 2012).

나. 소결

스웨덴은 1998년 학교법(School Act)에 따라서 보육과 유아교육의 구분이 없어졌다. 보육과 유아교육은 모든 아동의 권리이며, 가정의 역할을 보완하며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졌다. 아동 보육·교육비용측면에서 살펴보면, 2011년 만 0~5세 아동을 위한 비용이 GDP의 1.63%로 2007년

1.1%에 비해 상승하였다.

자녀 보육비용 부담금과 관련하여, 공정성이 문제되어, 1999년부터 자녀의 출생순서에 따라 정액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기관의 보육료는 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스웨덴의 경기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부모의 보육료 부담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부모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이는 특히 저소득층 가정과 한 부모 가정들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

스웨덴은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양수당, 장애아동 수당, 보조인 수당, 아동 연금, 주택 수당 등의 다양한 수당제도가 있으며, 조세혜택 지원을 위한 시스템은 없다.

6. 요약 및 시사점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보육비용 관련 정책과 지원 제도 중에 출산율 제고 효과를 얼마나 가져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작업이다. 출산율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진단받고 있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보육비용 지원제도를 간단히 요약하면, 선정 국가 모두 보편적 보육비용 지원 서비스 체제보다는 개인 맞춤형 체제의 모습이 강하며, 양육·아동·가족 수당의 기한이 우리나라에 비해 길고, 자녀수와 출생순서, 가정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근로를 장려하는 조세혜택제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선정 국가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보육시설 이용 시 기관 이용에 대한 운영시간의 제한선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원화된 행정체제 배경을 고려하면 운영시간에 대한 제한선을 선정하는 것은 현재로는 어려운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무상교육의 정도와 범위 기준이 없는 것은, 오히려 무상교육의 본래 취지와 의미에 대한 역질문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므로, 기준에 대한 설정 고려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두 번째, 개인 맞춤형의 보육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좀 더 자세히 언급하며, 부모의 근로시간과 자녀 수, 가족의 소득수준에 맞게 보육료 지원제도의 차등적 지급 원칙을 세워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라의 경우, 시설 미이용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액보다는 현저히 낮은 액수다. 부모의 선택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보다는 보육시설 이용의 긍정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는, 근로세액공제와 같은 모의 취업률을 상승시키면서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의 확대운영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일하는 어머니의 고용과 소득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 대한 권고를 하여야 하며, 원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병행시켜 줌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출산을 제고만을 고려한 지출 정책 보다는, 아동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질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보육비용 지출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육 선진국들의 사례를 도입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고, 정책으로 도입 시 이로 인한 파급효과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V. 맺는 말

본 연구는 OECD의 보육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최근 보육현황 자료를 비교 검토함을 통해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관련 정책에의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육서비스를 보육시설의 유형과 이용, 보육교직원의 자격과 관리, 보육비용의 지원으로 구분하여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최근 보육과 유아교육정책을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국가를 분야별로 선정하여 심층 조망하였다.

세계적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전사회적인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5세 누리과정과 추후 계획 중인 3, 4세 누리를 포함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공통과정의 시행으로 인해 영유아대상 서비스 두 영역의 공통분모와 차이점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 질적 측면의 강화로 귀결됨을 확인한다.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이용은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행정전달체계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물론 단일 지표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비교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OECD가 최근 제안한 질에 대한 목표와 규정 설정, 교육과정과 학습수준 개발 및 실행, 교사 자격 기준, 교육 및 근무여건 개선,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 마지막으로 자료수집, 연구 및 모니터링 등은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질에 대한 목표와 규정이 설정되고 이에 대한 지도, 점검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와 규정과 동시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학습 내용의 개발은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실천에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평가인증제도와 누리과정의 개발 등은 이러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가 될 것이다.

보육의 질관리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주 양육지원자로서 보육교직원의 자격과 관리문제가 위치한다. 정리된 수치가 많은 것을 설명하지는 못하나 상대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강점을 지닌다. 최소한 여러 지표를 통해 볼 때, 우리의 보육교직원과 관련된 부분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나쁘지 않다. 교사의 평

균 연령도 높지 않고, 교사 대 아동의 비율 등의 여러 지표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과 승급요건의 강화, 자격갱신 제도의 도입,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부분에는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양성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많은 나라는 여전히 보육과 유아교육 교사의 양성과정을 별도로 운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영유아 대상 서비스 통합 관리의 장점을 인식하고 그를 통한 질적 강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 속에 교사의 양성과정을 공통으로 운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육비용 지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의 만 0~5세를 위한 공적 보육비용 지출 금액의 평균에 아직은 못 도달하지만, 최근 보육정책의 확대에 해마다 지원비가 빠르게 상승하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의 보육시설을 통한 비용 지원은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양육의 부담감을 줄여주고 이는 결국 출산율 상승과 같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 안정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OECD 몇 국가들의 보육비용 정책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보육비용 지원제도의 재정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오랜 기간을 보장하는 아동(양육)수당에 대한 체계적 도입과 더불어, 가구 소득·자녀 수·부모들의 근로시간을 고려한 차등적 보육료 지급은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하는 통로이므로 향후 이 점에 대하여 논의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모의 취업률도 동시에 상승시킬 수 있도록 근로세액공제 확대적용과 출산·육아휴직 후 부모의 고용과 소득의 안정화를 보장할 수 있는 근로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를 위해 OECD 최근 자료와 우리나라의 보육교직원 관련 자료를 수합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의 보육 관련 통계와 자료가 OECD의 여러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업데이트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다면적 노력의 한 성과로 여겨진다. 신속한 자료의 구축과 공유는 보육현장을 반영한 정책의 입안과 연구를 위한 기초적 지원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영국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통계를 해마다 유사한 지표로 누적적으로 구성하고 그를 정책연구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보육통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과 주관으로 해마다 수집되어 훌륭한 기반자료로 구축되고 있다. 이런 통계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의 확대를 통해 보육현장을 반영한 정책 입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장 최근 자료의 결과를 담으려 노력하였다. OECD와 사례 국가의 최근 자료를 정리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국제적으로 보고되는 자료가 현재 우리의 보육과 유아교육의 상황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다. 다른 국가들은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거나, 분리되어 있더라도 공통의 자료를 구성함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요구하는 분야에 따라 보육과 유아교육이 서로 다른 통계를 제공하거나, 어느 한 쪽의 자료만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성과에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여러 지표들이 정확하게 국제 지표로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의 채널을 통일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권정윤·한유미(2005). 스웨덴 보육의 배경과 현황. 아동학회지, 26(2), 1-17, 175-191.
- 김은설·안재진·최윤경·김의향·양성은·김문정(2009).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2011). 보육교직원의 효율적인 보수교육 추진 체계 구축 방안. 2011 제 6차 육아지원정책 포럼.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김진경·최경숙·조운주·조혜주·안진(2009). 유치원과 보육시설 시설·설비 기준 개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나정(2001). OECD의 성공적인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요인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한국교육개발원.
- 문무경(2006). 스웨덴의 육아정책: 유아교육과 보육, 학교교육의 통합을 중심으로. 육아정책개발센터.
- 문무경(2007). 영국의 육아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세계육아정책동향 4.
- 박창현·박선영·김영주·윤경옥(2010). 스웨덴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이 한국 영유아정책에 주는 함의: 스웨덴 유아학교의 정치학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4(4), 69-90.
- 배화옥(2007). OECD 국가간 아동복지수준 비교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73-8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자료.
-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 서문희·안재진·최혜선·소마 나오코·안진(2009).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송신영(2011). 우리나라의 보육실태와 외국사례-공립보육시설, 보육비용 지원,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1~21.
- 신나리·김은설(2006). 일본과 싱가포르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사례. 육아정책포럼 제2호, 36~44.
- 신윤정·박세경·최성은·김필숙·최은영(2007). 양육 지원 정책의 향후발전방향-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싱가포르교육부홈페이지 <http://www.moe.gov.sg/education/preschool/teachers>.
- 싱가포르교육부(2012).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Kindergarten Principles & Teachers.
- 유은영, 김지현, 현화동, 이예숙, 김승희(2010). 싱가포르 유아교육-보육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고찰. 유아교육학논집, 14(1). 375~397.
- 유해미·유희정·장경희(2011). 일본의 보육정책 동향(II). 육아정책연구소.
- 윤혜경(2008). 일본의 보육시설 제 3차 평가사업에 대한 연구. 육아지원연구, 3(1), 105-124.
- 이윤진·송신영(2009). 핀란드의 육아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세계육아정책동향 7.
- 이채정(2009). 스웨덴, 일본, 한국 일가족양립지원정책 비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 이화도(2007). 프랑스 유아교육 및 보육 행정체계 연구. 유아교육연구, 27(5), 5-31.
- 이화도·Vergnaud. G.(2006). 유아교육 학제 개편 방향성 정립을 위한 프랑스 유아교육제도 이해, 유아교육연구, 26(4), 5-29.
- 장명림·김은영·박수연·김온기·이일주(2009). 육아지원기관의 질적 수준 관리 방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정미라·조희연·안재진(2009). 프랑스의 육아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 정유석(2012). 자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형태와 여성 경제활동 및 출산을 제고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42, 161-180.
- 최윤경·문무경·원종욱·김재원(2011). 육아지원인력 체계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1-07.
- 한국보육진흥원(2012). 2012.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 홍금자(2006). 일본의 보육 및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 영유아보육학, 46, 117-145.
- 홍승아(2005).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한국여성개발원.
- Bennette, J. (2008). Benchmarks for early childhood services in OECD countries. Innocenti working paper. Florence, UNICEF.
- Cathy Nutbrown(2012). Nutbrown Review on 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qualifications. <http://www.education.gov.uk>.
- Choo, K. K.(2004). Inter-ministerial collaboration in early childhood training in Singapore. UNESCO Policy Brief on Early Childhood, 24.
- CLEISS(2012). Summary of family benefits provided under Section L511-1 of the French Social Security Code.
- CNAF(2011). Action sociale Ventilation fonctionnelle des dépenses Exercice(2011).
- Eeva H., Elina F., & Janniina E.(2012). Evaluating the quality of the child care in Finland.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2:3-4, 299~314.
- Eeva-Leena O. & Marjatta, K.(2010). Finnish ECEC policy: interpretations, implementations and implications.
- Fukkink, R. G., & Lont. A.(2007). Dose training matter? A meta-analysis and review of care-giver training studie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 290~311.
- HM Revenue & Customs(2012).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UK Department for Education (2011). A summary of the NAO's Department for Education 2010~2011.
- Landale. J (2010. 10. 4). Child benefit to be scrapped for higher taxpayers. BBC News UK politics. <http://www.bbc.co.uk/news/uk-politics-11464300>
- Leseman, P(2009). The impact of high quality education and care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Review of literature. 17~49.

- Le site officiel de l'administration française (2012). Prime pour l'emploi (PPE).
<http://vosdroits.service-public.fr/F2882.xhtml>
- Lokteff, M., & Piercy, K. W. (2012). "Who cares for the children?" Lessons from a global perspective of child care policy.
- Mahon, R. (2009). Canada'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still a laggard?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3(1), 27-42.
- Marjory, E. & Yvonne, Y. Y. C.(2011). Instituting Chang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cent Developments in Singapore.
- Maritt Hännikäinen(2010). 1 to 3 year-old children in day care centers in Finland: An overview of eight doctoral dissertations.
- Niels, P.(2012). The Nordic child care regime- History, development and challeng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 517~522.
- OECD(2004). Teachers matter: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 France, Paris.
- OECD(2005).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4.
- OECD(2007).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OECD publishing.
- OECD(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 OECD(2011).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 OECD(2012).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 OECD(2011).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 OECD(2012). Quality Matt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inland 2012, OECD publishing.
- OECD(2012). Quality Matt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United Kingdom(England) 2012, OECD publishing.

- Offi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2009). Child Care News issues, 22, 1-11.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Australian Government.
- Offi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2010). Report on the State of Child Care in Australia, 1-12.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Australian Government.
- Offi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2012). Child Care update, 1-8.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Australian Government.
- Ofsted(2012).<http://www.ofsted.gov.uk/early-years-and-childcare><http://www.education.gov>.
-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2009). Accreditation standards for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course. <http://www.moe.gov.sg/education/preschool/teachers>.
- Skolverket(2009). Children, pupils and staff National level. Official Statistics of Sweden.
- Skolverket(2012). Facts and figures 2011.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 Statistics Sweden(2012). Statistical Yearbook of Sweden 2012.
- Statistics Sweden(2012). The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Expenditure for pre-school class 2008.
- Statistiska centralbyrån(2012). Statistical Yearbook of Sweden 2012.
- Supporting Families in the Foundation Years Cross-Government Policy Statement(2011). [uk/childrenandyoungpeople/earlylearningandchildcare](http://www.gov.uk/childrenandyoungpeople/earlylearningandchildcare).
- Ting, C.(2007). Policy developments in Pre-school education in Singapore: A focus on the key reforms of kindergarten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1, 35~43.
- Training and Development Agency for School(2007). professional standards for teachers in England from September. UK, London; Training and Development Agency.

UK Department for Education.(2011).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0-2011.

UK Department for Education(2011).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부 록

부록 1. 싱가포르 보육교직원 자격과 관리

부록 2.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관련 자료

부록 3. 보육교직원 관련 자료

부록 4. 보육비용 관련 자료

부록 1. 싱가포르 보육교직원의 자격과 관리

가. 보육정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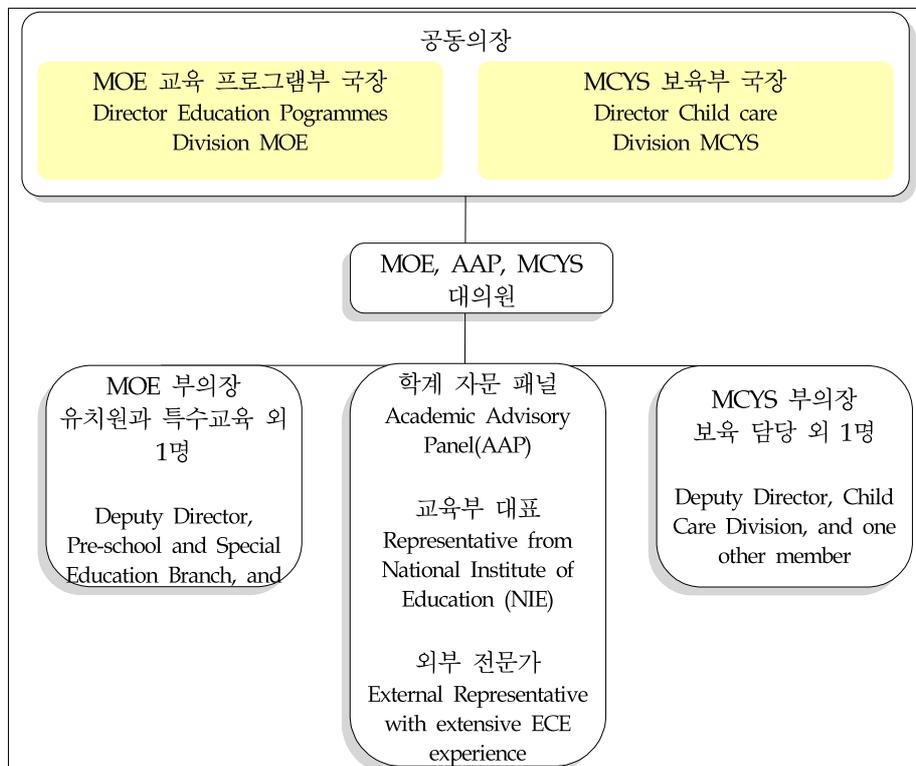
1) 보육정책의 변화

싱가포르 교육부는 영유아기 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있는 세계의 교육 개혁 흐름에 맞게 1999년 보육업무의 주관부처인 지역개발·청소년·체육부와 함께 취학전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두 부처의 고위직 관료들로 협력위원회 SCPE (Steering Committee on Preschool Education)를 구성하였고, SCPE는 교사의 질 제고를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과정, 자격을 통일하였다. 또한, 산하기관으로 PQAC (Preschool Qualification Accreditation Committee)라는 영유아교사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사의 자격과 교육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통합 영유아교사에 대한 자격규정, 교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양성기관 인증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배경에는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겪으며 지식위주의 교육을 강조했던 점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반성과 'Manpower 21'을 근거로 한 교육개혁(1998)이 있었고, 좁게는 만 5세아 조기취학(1979~1993년까지)으로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를 강조한 학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영유아 대상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유은영, 김지현, 현화동, 이예숙, 김승희, 2010; Ting, 2007).

2) 행정전달체계

싱가포르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은 상황이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지원은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우리나라처럼 이원화되어있다. 유아교육은 MOE(Ministry of Education)가 주무부처로 3세에서 6세를 대상으로 유치원(kindergarten)에서 교육중심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영유아 보육은 생후 2개월부터 6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청소년·체육부 MCYS(Ministry of Community, Youth and Sports)에서 관장한다. MOE와 MCYS에 의해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각각 운영됨으로 인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1999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SCPE(Steering Committee on Preschool Education)를 구

성하고 초등학교 입학 이전 영유아기 교육 발전을 위한 기초 틀을 다듬고, 기대 효과를 명확히 설정 제시하고, 교사교육 체계와 구조를 정비하며, 적절한 교사 양성과정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그 산하에 교사의 자격 강화를 위한 영유아 교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었다. 영유아교사 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 중 특이한 것은 수장이 MOE와 MCYS에서 수장이 각각 1인씩 선정하여 부처 간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현장의 전문가들 또한 포함되도록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고려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로써 2001년 1월 설립된 영유아교사 자격관리위원회(PQAC)가 싱가포르의 보육과 유아교육 분야의 교사교육 기준을 설정하고 질을 관리한다. 영유아교사 자격관리위원회는 교육부 MOE와 지역개발·청소년·체육부인 MCYS가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그 구성은 [부록 그림 1-1]과 같다.



자료: 싱가포르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v.sg/education/preschool/teachers>

[부록 그림 1-1] 싱가포르 영유아 교사자격관리위원회 구성

3) 보육 서비스 유형 및 이용현황

유치원은 유아원(Nursery), 유치원 1(Kindergarten1), 유치원 2(Kindergarten2)로 구성된 3년 과정의 '학교(schools)'이다. 유치원은 주 5일로 매일 3~4시간 동안 운영된다. 어린이집(Childcare centres)은 7세 이하 아동에게 종일 또는 반일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부는 부모의 근로시간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융통성 있는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싱가포르 지역개발·청소년·체육부 통계에 의하면, 2009년 12월 기준 785개 어린이집이 등록되었고, 등록 영유아의 수는 57,870명이다. 또한 152개소의 영아 전담어린이집도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일반적으로 아침반, 오후반, 종일반 등으로 구분하여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정도를 운영되고 방학이 없다. 또한 사립기관에 대한 의존율이 우리나라와 같이 높다. 영유아의 교육은 부모의 의사에 달려있으나 대부분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진학한다. 싱가포르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취학전 유아의 99% 정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닌 경험이 있을 정도로 유아교육기관의 이용이 보편화되었다(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2009).

나. 보육인력 관련 정책의 현황과 주요지표

1) 교사의 자격기준

싱가포르는 교육의 질이 교사의 역량과 관련 있음을 고려하여 그 역량의 강화에 주력하여 왔다. 1999년 보육과 유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위원회(SCPE)가 생기면서 교사와 원장에 대한 통합된 기준이 제시되었다. 협력위원회(SCPE) 산하 영유아교사자격관리위원회(PQAC)는 보육과 유아교육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교사의 교육을 강화하는 다음과 같은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싱가포르는 교사자격을 영유아교사자격(CECCE), 영유아교사학위-교사(DECCE-T), 영유아교사학위-리더(DECCE-L), 영유아교사 전문학위(SDECCE)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기존의 교사들을 포함하는 자격요건과 교육 시간을 설정하였다.

〈부록 표 1-1〉 싱가포르의 영유아 교사자격

자격	교사 자격		교육시간 (2009년 1월부터 적용)	자격
	기존 교사 (2013년 적용)	자격 요건 (2009년부터 적용)		
영유아 교사 자격 (CECCE) Certificate in Early Childhood Care & Education	'O' level 최소 3개 과목 이상(영어포함) 의 'O'level	-최소 5개 과목 이상 (영 어 포 함) 의 'O'level(영어 과목에 서 C5/ C6 받은 자 는 2년 이내에 B4/IELTS에서 6.5 이상 점수) -4년 이내 Diploma level 수준의 훈련을 받아야 함.	-총 교육시간 800시간 · 수업 560시간 · 실습 240시간 -소요기간 · part-time 24개월 · full-time 12개월	교사
K1/K2 학년 지도	2013년까지 Diploma level 수준의 훈련을 받아야 함.			
영유아 교사 학위-교사 (DECCE-T) Diploma in Early Childhood Care & Education- Teaching	-최소 5개 과목 이상(영어포함)의 'O'level (영어과목에서 C5/C6 받은 자는 2년 이 내에 B4/IELTS에서 6.5 이상의 점수) -Early Childhood Care & intermediate course를 수료한 자		-총 교육시간 1,200시간 · 수업: 900시간 · 실습: 300시간 -소요기간 · part-time 30개월 · full-time 18개월	주 임 교 사
영유아 교사 학위-리더 (DECCE-L) Diploma in Early Childhood Care & Education - Leadership	Diploma in Preschool Education- Teaching의 소유자로 경력 2년 이상 인 자		-총 교육시간 850시간 · 수업: 650시간 · 실습: 200시간 -소요기간 · part-time 24개월 · full-time 12개월	원 장
영유아 교사 전문 학위 (SDECCE) Specialist Diploma in Early Childhood Care & Education	최소 5개 과목 이상(영어포함)의 'O'level/ preschool Education (Teaching) 자격이 있는 자 또는 Early Childhood Care & Education intermediate course를 수료한 자		-총 교육시간 1,600시간 · 수업: 1,100시간 · 실습: 500시간 -소요기간 · part-time 36개월 · full-time 24개월	원 장

자료: 1)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2012).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Kindergarten Principles & Teachers. p.9~20.

2) 최윤경 외(2011). 육아지원인력 체계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p.20) 재구성.

이러한 교사자격의 통합은 자격을 갖춘 교사들의 취업 기회를 다양하게 열어 주고 있다. 2001년 교사 양성과정의 개편 이후 이전에는 교육부 승인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교사는 어린이집(childcare centres)과 유치원(kindergarten) 모두에서 일할 수 있고, 지역개발·청소년·체육부 승인기관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어린이집에서만 근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사양성과정 일원화 이후에는 영유아 교사자격관리위원회(PQAC)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교사는 보육과 유아 교육분야 모두에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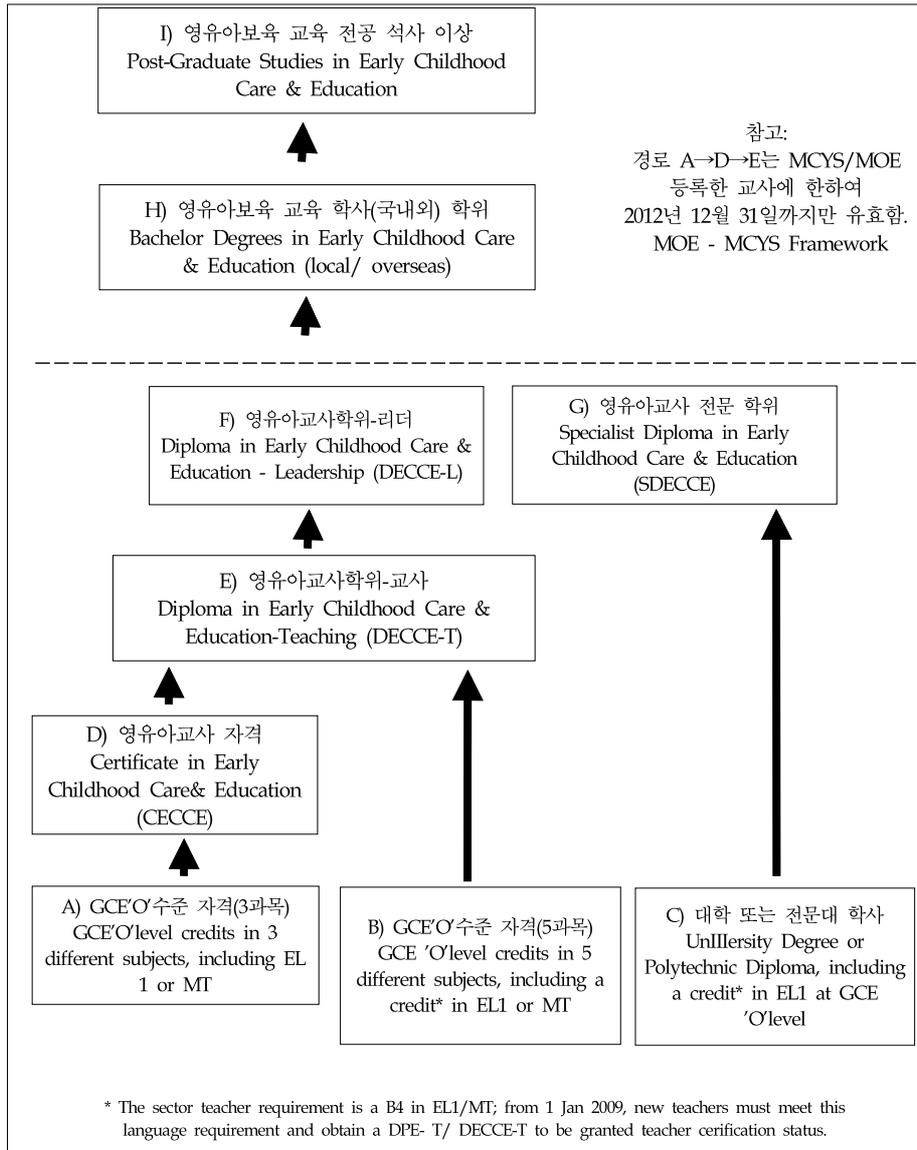
2) 교사 교육 및 전문성 강화

가) 양성과정

[부록 그림 1-2]는 싱가포르 영유아교사의 양성 경로이다(싱가포르 교육부). 현재 싱가포르는 영유아교사자격, 영유아교사학위-교사, 영유아교사학위-리더, 영유아교사 전문학위의 네 가지 교사자격기준으로 구분하고, 차별적인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학력 연한을 기준으로 선행 학습과 경력을 반영한 다양한 경로를 구비하였다. 싱가포르는 고졸 학력을 영유아교사의 최저 자격요건으로 제시하였으나 2013년까지 영유아교사의 훈련연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영유아 교사 자격 개정을 통해 신규교사와 기존교사의 자격인정 적용시점을 달리하는 한시적 유예기간을 마련하여 점진적인 자격의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나) 보수교육

교사 자격기준의 강화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을 적용받아왔던 보육교사에게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승급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 보수교육을 위한 인터넷 원격 교육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내용과 교과목은 교육부와 지역개발·청소년·체육부의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장의 변화와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기위한 보수교육과 더불어 승급교육도 준비되어있다. 보조교사, 유아교사, 주임교사, 원장의 순으로 직급이 향상에 따른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자료: 싱가포르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v.sg/education/preschool/teachers>

[부록 그림 1-2] 싱가포르 영유아교사 양성 경로(2009년 1월~ 2012년 12월 31일)

다. 소결

싱가포르 일원화된 교사교육을 통해 양 부처가 교사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생산, 축적, 공유함을 통해 교사의 양성을 위한 계획과 조정, 교육의 수요와 관련행정에 대한 효율성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한다(Choo, 2004). 보육과 유아교육을 아우르는 유아교사의 기준이 분명해짐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갖춘 교사가 증가하여 교사의 질적 수준의 균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사의 급여수준도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Marjory & Yvonne, 2011). 싱가포르의 유아교육과 보육 교직원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와 대부분 OECD 국가와는 다르게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서로 다른 행정부처에서 관리하되 교사의 양성과 자격은 두 부처의 합의 기구를 통해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일원화된 교사교육을 통해 양 부처가 교사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생산, 축적, 공유함을 통해 교사의 양성을 위한 계획과 조정, 교육의 수요와 관련행정에 대한 효율성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한다(Choo, 2004). 둘째, 보육교사와 유아교육교사를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으로 인정하고 교사의 양성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득권을 지닌 현장 보육교사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나 공통과정으로의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보육의 질적 역량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셋째, 구체적 현안을 중심으로 두 부처의 통합과 협력을 위한 공동목표를 발견하고 순차적 접근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교사 역량강화라는 합의를 찾고 그 목표를 향해 체계적이며 순차적인 대안을 마련함이 돋보인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통합 이전 보육교사와 유아교사의 다양한 교직원의 양성경로를 구체화하고,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향상된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구비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넷째, 싱가포르의 교원 정책은 대립하는 두 부처의 갈등을 조정할 통합위원회의 설립으로 부처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 결과를 도출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사례는 교사의 질적 수준 제고라는 공동목표의 성취를 위해 그 양성과 교육과정의 통합 방법으로 이루어낸 관련부처 간 협력의 성과를 보여준다.

부록 2.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관련 자료

〈부록 표 2-1〉 만 6세 미만 아동의 정규 보육 및 유치원 등록률(2008)*

국가	3세 미만	3 세	4 세	5 세	3 - 5 세
호주	29.0	12.1	52.6	99.8	54.6
오스트리아	12.1	52.4	85.6	94.8	77.6
벨기에	48.4	99.3	99.6	99.5	99.4
불가리아	14.6	64.3	71.7	76.1	70.7
캐나다	24.0	15.7	41.7	99.2	56.8
칠레 ²	9.8	23.2	80.7	83.9	62.6
사이프러스 ^{4, 5}	32.7	45.1	75.2	100.0	73.4
체코공화국	2.2	58.3	86.8	95.0	79.7
덴마크	65.7	94.1	95.3	85.1	91.5
에스토니아	17.5	85.3	91.2	90.4	89.0
핀란드	28.6	68.5	75.4	78.9	74.2
프랑스	42.0	99.0	100.0	100.6	99.9
독일	17.8	86.9	95.4	95.8	92.7
그리스	15.7	0.0	52.4	88.0	46.6
헝가리	8.8	72.1	92.5	96.6	87.1
아일랜드	55.0	95.4	95.6	96.8	95.9
아일랜드	30.8	13.1	54.8	101.5	56.4
이스라엘	23.0	79.6	86.3	94.7	86.8
이태리	29.2	94.8	98.6	99.0	97.4
일본	28.3	75.4	95.7	98.2	90.0
한국	37.7	73.3	79.3	86.3	79.8
라트비아	16.1	71.0	78.6	92.1	80.6
리투아니아	13.7	61.4	65	70.0	65.5
룩셈부르크	38.6	69.3	95.2	93.4	85.9
몰타	6.8	83.0	97.6	100.0	93.5
멕시코 ³	5.8	34.3	93.2	117.9	82.8
네덜란드	55.9	0.1	99.5	99.3	67.1
뉴질랜드	37.9	87.5	95.1	99.9	94.1
노르웨이	51.3	92.3	95.3	95.9	94.5
폴란드	7.9	36.1	48.1	57.7	47.3
포르투갈	47.4	63.0	81.3	92.6	79.2
루마니아	14.3	55.3	75.8	86.4	72.5
슬라브공화국	3.0	62.9	74.8	83.5	73.5
슬로베니아	33.8	69.5	79.3	83.7	77.5
스페인	37.5	97.6	98.7	99.3	98.5

(부록 표 2-1 계속)

국가	3세 미만	3 세	4 세	5 세	3 - 5 세
스웨덴	46.7	88.6	91.8	93.0	91.1
스위스	..	9.6	39.5	93.1	47.5
터키	..	2.8	13.0	55.4	23.8
영국	40.8	82.4	97.3	98.8	92.7
미국 ¹	31.4	36.3	57.5	73.3	55.7
OECD 평균	30.1	59.7	80.0	91.8	77.3
EU 27 평균	28.2	68.8	85.6	91.1	81.8

주: 1) 0-2세 아동 자료, 2005; 2) 0-2 세 아동 자료, 2006; 3) 0-2 세 아동 자료, 2009.
4)와 5) *와 같음.

자료: OECD(2012) family database-indicators

0-2세: 호주, ABS Childcare service (2008); 캐나다,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 (2006); 칠레, CASEN (2006); 뉴질랜드, Education Counts' statistics (2008); 유럽, EU-SILC (2008); 독일, administrative data; 북유럽, NOSOSCO (2007-08); 미국, Early Childhood Program Participation Survey (2005)

3-5세: 비 OECD 국가들, OECD Education database and Eurostat (2008)* 또는 최근 수집 가능한 경우

〈부록 표 2-2〉 만 3세 미만 아동의 종일제 프로그램 등록율과 주당 참여시간

	정규보육 프로그램 등록율	종일제	주당 참여시간
덴마크	66	74	34
네덜란드	56	34	19
아이슬란드	55	65	36
노르웨이	51	55	32
벨기에	48	47	29
포르투갈	47	60	38
스웨덴	47	51	33
프랑스	42	43	31
영국	41	22	16
룩셈부르크	39	38	30
뉴질랜드	38	25	20
한국 ¹	38	-	-
스페인	37	35	28
사이프러스 ^{4, 5}	33	38	35
미국 ²	31	32	31
아이랜드	31	26	25
이태리	29	29	29
호주 ⁶	29	18	18
핀란드	29	33	34
일본	28	-	-
캐나다	24	26	32
이스라엘	23	39	51
독일	18	14	23
에스토니아	18	22	37
라트비아	16	20	37
그리스	16	16	30
불가리아	15	16	33
루마니아	14	15	31
리투아니아	14	19	41
오스트리아	12	8	19
칠레	10	10	30
헝가리	9	9	30
폴란드	8	9	35
멕시코 ³	6	8	40
슬라브 공화국	3	3	29
체코공화국	2	1	16

주: 1) 0-2 아동, 2008; 2) 0-2 아동, 2005; 3) 0-2 아동, 2009 4) 사이프러스의 정보는 섬의 남쪽 사람들에 관한 것임. 터키와 사이프러스의 단일지표가 없음. 5) 정보는 사이프러스 공화국의 통제에 있는 영역과 관련된 서류의 정보임. 6) 주된 자료는 2005.

자료: 유럽 EU-SILC (2008), 독일 administrative data; 북유럽, NOSOSCO (2007-08); 미국, Early Childhood Program Participation Survey (2005); 캐나다,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 (2006); 다른 국가, National Authorities.

부록 3. 보육교직원 관련 자료

〈부록 표 3-1〉 OECD 회원국 유아교육과 보육 교직원의 필수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수준

보육 교직원	유아교육 또는 유아교육과 보육통합 교직원						의무교육
국가	유아 연령						
	0	1	2	3	4	5	6
호주	보육교사(4)/ 어린이집 원장(5)						
오스트리아	유치원 교사(5A) Pre-school/Kindergarten Teacher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	유치원교사(4A) Kindergarten Pedagogue						
벨기에 (프랑스 지역)	보육분야 보육교사 Childcare Worker in the care section						
	2.5세 교육 분야의 보육교사(3)						
	2.5세 유치원교사/교사(5B)						
벨기에 (프랑스 지역)	보육교직원(3) Childcare Worker						
	2.5세 유치원교사(5) Pre-Primary Teacher						
캐나다(브리티시 컬럼비아)	유아교육 교사(3) Early childhood educator						
	유치원교사(5A)						
캐나다 (매니토바)	유아교육 교사(5B) Early childhood educator						
	유치원교사(5) Kindergarten Teacher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	가정보육사(3)/ 시설근무 보육교직원(4)						
	유치원교사(4)						
체코	보육교직원(3) Childcare Worker						
	교사(3) Pedagogue						
덴마크	교사(5) Pedagogue						
에스토니아	1.5세 유치원교사 Pre-school Pedagogue						
핀란드	유치원의 보육교사(직원의 2/3는 최소 3수준을 갖추어야함)						
	유치원교사(5B) Kindergarten Teacher						유치원 교사(5B) pre- primary
독일	보육교사(3) Childcare Worker						
	교사(4A) Pedagogue						
	유아교사 또는 사회 교사 Pedagogue for childhood or social pedagogue(5)						
헝가리	보육교사(3) Child care Worker						
아일랜드	교사(5) Pedagogue						
	유치원교사(5) Pre-primary Teacher						
이스라엘	보육교사(5) Childcare teacher						
	유치원교사(5)						

(부록 표 3-1 계속)

국가	유아 연령							
	0	1	2	3	4	5	6	7
이탈리아	교육자(어린이집)(5B) Educator			유치원교사(6) Pre-primary Teacher				
일본	보육교사(5B) Nursery Teacher			유치원교사(5B) Kindergarten Teacher				
한국	보육교사(3) Child care Worker			유치원교사(5) Pre-primary Teacher				
룩셈부르크				유치원교사/교육자(5B) Pre-primary Teacher/Educator				
멕시코	원주민 ECEC 교사(3) ECE / 유치원 교사(5)			원주민유치원교사(3) Pre-school Teacher				
네덜란드	보육교사 (시설근무) / 공인보육사(3) Official Childminder			놀이집단리더(3) 유치원/초등교사(4)			12세 까지	
뉴질랜드	놀이센터지도자(3) Playcentre Leader			공인 교육 및 보육교사/유치원교사(5B) Qualified Education and Care Teacher/ Kindergarten T				
	원주민 아동을 위한 교사 (kaiako)(5B)							
노르웨이	아동/ 청소년 교직원(3) Child/Youth Worker			교육지도자 Pedagogue leade /수석교사 Head Teacher(5A)				
폴란드	보육교사(3) Child care Worker			유치원교사(5) Kindergarten Teacher				
포르투갈	유치원교사(5B) Pre-school Teacher							
슬로바키아	보육교사(3B) Nursery School Worker			유치원교사(3) Kindergarten Teacher				
슬로베니아	가정보육사(3) Family Day Carer			유치원교사(5B) Preschool Teacher				
스페인	유아교사(5B) Early education teacher			유치원교사(5A) Pre-school Teacher				
스웨덴	보육교사(3) Childminder			유치원교사(5A) Pre-school Teacher				
터키				유치원교사(5A) Pre-primary teacher				
영국(스코틀랜드)	보육 종사자(5) Childcare Practitioner			유치원교사(5)				
미국				유치원교사(5) Pre-school Teacher				

자료: OECD Network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s "Survey for the Quality Toolbox and ECEC Portal", June, 2011.

〈부록 표 3-2〉 OECD 회원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교사 양성교육의 운용

		교사유형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가정보육사
교육주체	국공립	호주, 오스트리아, 브리티시컬럼비아(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플랑드르 지역(벨기에), 프랑스지역(벨기에), 조지아(미국),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매니토바(캐나다), 매사추세츠(미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스캐롤라이나(미국), 노르웨이, 오클라호마(미국), 폴란드, 포르투갈, 프린스 에드워드 섬(캐나다), 스코틀랜드(UK),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호주, 브리티시컬럼비아(캐나다), 덴마크, 플랑드르지역(벨기에), 프랑스지역(벨기에), 독일, 헝가리, 일본, 이탈리아, 한국, 매니토바(캐나다),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프린스 에드워드 섬(캐나다), 스코틀랜드(UK),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매니토바(캐나다), 폴란드, 포르투갈, 프랑스지역(캐나다)
	사립	오스트리아, 브리티시컬럼비아(캐나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플랑드르지역(벨기에), 조지아(미국), 독일, 이탈리아, 한국, 매사추세츠(미국), 뉴질랜드, 노스캐롤라이나(미국), 노르웨이, 오클라호마(미국), 폴란드, 포르투갈, 프린스 에드워드 섬(캐나다), 스코틀랜드(UK), 슬로바키아, 스페인	호주, 브리티시컬럼비아(캐나다), 핀란드, 프랑스지역(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프린스 에드워드 섬(캐나다), 스코틀랜드(UK), 스페인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매니토바,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프린스 에드워드 섬
교육시간	종일	호주, 오스트리아, 브리티시컬럼비아(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플랑드르 지역(벨기에), 프랑스지역(벨기에),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매니토바(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프린스 에드워드 섬(캐나다), 스코틀랜드(UK), 슬로베니아, 남호주(호주), 스페인, 스웨덴, 터키	호주, 브리티시컬럼비아(캐나다), 덴마크, 플랑드르 지역(벨기에),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매니토바(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프린스 에드워드 섬(캐나다), 스코틀랜드, 스페인	호주, 핀란드, 독일, 매니토바(캐나다),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프린스 에드워드 섬(캐나다), 스웨덴
	반일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플랑드르 지역(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매니토바(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프린스 에드워드 섬(캐나다), 스코틀랜드(UK),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호주, 브리티시컬럼비아(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플랑드르 지역(벨기에), 프랑스 지역(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매니토바(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프린스 에드워드 섬, 스코틀랜드(UK), 스페인	호주, 덴마크, 핀란드, 독일, 매니토바(캐나다),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프린스 에드워드 섬(캐나다),

자료: OECD Network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s "Survey for the Quality Toolbox and ECEC Portal", June, 2011.

〈부록 표 3-3〉 OECD 회원국 교직원 보수교육 유형 및 구조

		직원유형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훈련 프로그램 형태 및 구조	세미나/ 워크숍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플랑드르 지역(벨기에), 프랑스 지역(벨기에),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매사추세츠(미국), 매니토바(캐나다),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스캐롤라이나(미국), 노르웨이, 오클라호마(미국), 폴란드, 포르투갈, 프린스 에드워드 섬(캐나다), 스코틀랜드(UK),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호주, 오스트리아, 브리티시컬럼비아(캐나다), 체코, 핀란드, 플랑드르 지역(벨기에), 프랑스 지역(벨기에),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매니토바(캐나다), 매사추세츠(미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클라호마(미국), 폴란드, 프린스 에드워드 섬(캐나다), 스코틀랜드(UK), 스페인
	현장 멘토링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플랑드르 지역(벨기에), 조지아(미국), 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매니토바(캐나다), 매사추세츠(미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스캐롤라이나(미국), 노르웨이, 오클라호마(미국), 폴란드, 포르투갈, 프린스 에드워드 섬(캐나다), 스코틀랜드(UK),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호주, 오스트리아, 브리티시컬럼비아(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플랑드르 지역(벨기에), 조지아(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매니토바(캐나다), 매사추세츠(미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클라호마(미국), 폴란드, 프린스 에드워드 섬(캐나다), 스코틀랜드(UK), 스페인
	온라인 교육	호주,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조지아(미국), 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매니토바(캐나다), 매사추세츠(미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스캐롤라이나(미국),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프린스 에드워드 섬(캐나다), 슬로바키아, 스페인	호주, 브리티시컬럼비아(캐나다), 체코, 조지아(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매니토바(캐나다), 매사추세츠(미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클라호마(미국), 폴란드, 프린스 에드워드 섬(캐나다), 스코틀랜드(UK), 스페인
	정식 교육 과정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영국(UK), 에스토니아, 핀란드, 플랑드르 지역(벨기에), 프랑스 지역(벨기에), 조지아(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매니토바(캐나다), 매사추세츠(미국), 멕시코, 네덜란드, 노스캐롤라이나(미국),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프린스 에드워드 섬(캐나다), 스코틀랜드(UK), 슬로베니아, 스웨덴	호주, 오스트리아, 브리티시컬럼비아(캐나다), 체코, 영국(UK), 핀란드, 플랑드르 지역(벨기에), 조지아(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매니토바(캐나다), 매사추세츠(미국),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클라호마(미국), 폴란드, 포르투갈, 프린스 에드워드 섬(캐나다), 스코틀랜드(UK), 스웨덴

자료: OECD Network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s "Survey for the Quality Toolbox and ECEC Portal", June, 2011.

〈부록 표 3-4〉 보수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대상 서비스 교직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종류

	교육비용 지원		부분급여 지급		상위 자격 통로		학업 휴직		급여 인상 / 승진	
	보육	유아 교육	보육	유아 교육	보육	유아 교육	보육	유아 교육	보육	유아 교육
호주	●	●								
오스트리아	●	●					●	●		
브리티시 컬럼비아(캐나다)	●	●	●				●	●	●	●
체코	●	●				●		●		
덴마크						●		●		●
영국(UK)	●	●								●
에스토니아		●						●		
핀란드	●	●	●	●	●	●	●	●		
플랑드르 지역(벨기에)		●				●		●		
프랑스 지역(벨기에)	●	●		●	●			●		
조지아(미국)		●			●					
독일							●	●	●	●
헝가리	●	●								
이탈리아							●	●		
일본	●	●		●		●		●		
한국	●	●								●
매니토바(캐나다)	●	●	●		●	●	●		●	●
매사추세츠(미국)		●					●			
멕시코	●	●								●
네덜란드	●	●	●	●	●	●	●	●	●	●
뉴질랜드	●	●			●	●				
노스캐롤라이나		●								
노르웨이	●	●			●	●				
오克拉호마(미국)										
폴란드	●	●			●	●	●	●	●	●
포르투갈		●		●		●		●		●
프린스 에드워드		●				●				●
스코틀랜드(UK)					●					
슬로바키아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스페인	●	●			●	●	●	●	●	●
스웨덴	●	●	●	●	●	●	●	●		
터키						●				●

자료: OECD Network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s "Survey for the Quality Toolbox and ECEC Portal", June, 2011.

〈부록 표 3-5〉 보육분야 교사의 자격기준과 주 근무처(Qualifications of certified childcare workers and main place of work)

국가	주 교사 유형	양성교육기준	연령 범위	주근무처	보수교육	아동-교사비율
호주	Child care worker	2~3년 고등교육 (또는 4년 tertiary programme).	0~5	Kindergarten; long day care	보육의 특정 분야	5.0 (0~2 세) 10.0 (2~3세)
오스트리아	Erzieherinnen Kindergarten-pädagogin nen	5년 중등직업교육	0~5	Krippen and Hort Kindergarten	지방에서 매년 3~5일의 교육 비용부담	8.7
벨기에	Kinderverzorgste/ Puericultrice	3년 16 이후 중등직업교육	0~3	Kinderdagverblijf/ Creches(or assistant in ecole maternelle)		7.0
캐나다	Early childhood educator	2년 ECE	0~12	Child care, nursery school, pre-school		5.5 (0~1 세) 8.5 (2~3 세)
덴마크	paedagog	3-5년 고등직업교육 (이전 경력에 따라)	0~5	Educational, social care, special needs institutions	지자체 비용부담	3.3 (0~2 세) 7.2 (3~5 세)
핀란드	Sosionomi(social pedagogues) Lahihoitaja(practical nurses)	3년 중등직업교육	0~6	Päiällakoti(children's day care centre) Avoim päiällakoti	지자체가 매년 3~10 일 제공을 의무화함	4.0 (0~3 세) 7.0 (3세 이상)
프랑스	Puericultrices Educateurs de jeunes enfants	간호/산과학+1년 전문과정 학사학위후 27개월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0~3 0~6	Creches/assistant in ecole maternelle		5.0 (0~2 세) 8.0 (2~3 세)
독일	Kinderpflegerinnen	2년 중등직업교육	0~6	Kindergarten		
헝가리	Gondozo(child care worker)	3년 중등 후 직업훈련 전문가 자격증	0~3	Bölcsode(for children<3)		6.0
아일랜드	child carer/ child minder	편차가 심함	0~6	child care centres		3.0 (>1세) 6.0 (2-3 세)

(부록 표 3-5 계속)

국가	주 교사 유형	양성교육기준	연령 범위	주근무지	보수교육	아동-교사비율
이탈리아	Educatrice	중등 직업 훈련	0~3	Asili nido	Municipality or director/ inspector decides	7.0
일본	Nusery teacher	간호학교 졸업		Daycare, creche, nursery		3.0 (0<1세) 6.0 (1~3세)
한국	Child care worker	2년 중등직업교육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교육과정	0~6	child care centre Hakwon (prillate learning academy)	Offered by regional centres to all childcare and kindergarten teacher	3.0 (1세) 5.0 (2세) 15.0 (3세)
네덜란드	Leidster Kinder-centra	18세 이후 2년 훈련과정	0~4	Kinderopvang	Funding decentralised to municipalities	4.0 (1세) 5.0 (2세) 6.0 (3세)
뉴질랜드	Early childhood teacher	교사학위(ECE)3년 과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				4.5 (0~2세) 6.8 (2~3세)
노르웨이	assistents	16세 이후 2년 도제제도	0~7	Barnehager/SFO		8.0 (>3 세)
포르투갈	Educadora de infancia	4년 대학이나 전문대학	0~6	Creches ATL	Offered by regional teacher centres and unllersities to all teachers	11.0
스웨덴	Barnskotare	16세 이후 2년 중등	0~7	Oppen Forskola Fritidshem	Funding decentralised to municipalities	5.5
스위스	Childcare worker	주마다 다름		Creches, nurseries		4~5 (0~2세) 7~8 (2~3세)
영국	Trained nursery teacher Nursery nurse	16세 이후 2년 중등	3~11 0~5	Nurseries (or assistant in adove)	보육교사에게만 기준설정	3.0 (>2 세) 4.0 (2~3세) 8.0 (3~5세)
미국	Child care teacher	1년 과정에서 4년제 대학까지	0~5	Public schools Head Start Child care centre	대부분의 주가 년 간 일정시간의 기준을 갖춤	5.0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12.

〈부록 표 3-6〉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 기준

		내용
자격 기준	보육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법적 근거	영유아 보육법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자료: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1)

〈부록 표 3-7〉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근거

		내용
교육과정		- 보육교사 1급과 2급의 자격기준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라 명시하여 재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원장의 자격기준에는 승급교육에의 요구 기준이 없음. - 원장과 보육교사 모두는 보수교육을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46조, 47조).
교육기관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23조 3항). - 시도지사가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교육훈련시설,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관련 비영리 단체법인 및 단체임.
법적근거		- 제23조(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6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제 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부록 표 3-8〉 보육교사 보수교육 유형과 대상 및 교육기간

교육 구분		교육 대상	교육 시간	비고	
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보육 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신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에 해당하는 자.	40시간	원장 첫해
		원장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특별직무교육	영아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 후보육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 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 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부록 표 3-9〉 북유럽 국가의 만 3세 이하 아동의 정규 보육 이용률 추이(1995~2008)

연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1995	48.0	18.0	22.0	37.0
2000	56.3	24.0	25.3	40.0
2001	57.4	24.5	25.8	41.1
2002	55.5	24.7	27.2	43.9
2003	56.1	24.4	29.5	44.1
2004	58.8	24.9	32.9	45.2
2005	61.7	25.8	37.5	45.5
2006	63.0	26.3	42.3	45.3
2007	65.7	27.0	47.3	46.7
2008	65.7	28.3	51.3	-

자료: NOSOSCO (2006~2007) and NOMESCO

(http://nom-nos-indicators.skl.se/sif/start/ Family database, 2012.)

부록 4. 보육비용 관련 자료

〈부록 표 4-1〉 OECD 회원국 보육비용 국민 총생산(GDP) 대비 비중(2007)

단위: %

구분	만 0~2세	만 3~5세	총계
덴마크	0.8	0.5	1.3
스웨덴	0.6	0.5	1.1
영국	0.4	0.7	1.1
프랑스	0.4	0.6	1.0
노르웨이	0.7	0.3	1.0
핀란드	0.7	0.2	0.9
아이슬란드	0.2	0.7	0.9
벨기에	0.2	0.6	0.8
불가리	-	0.8	0.8
뉴질랜드	0.1	0.7	0.8
이스라엘	0.1	0.7	0.7
네덜란드	0.3	0.4	0.7
라트비아	-	0.6	0.6
헝가리	0.1	0.5	0.6
이탈리아	0.2	0.5	0.6
멕시코	0.1	0.5	0.6
몰타	-	0.6	0.6
리투아니아	-	0.6	0.6
슬로베니아	..	0.5	0.5
스페인	0.5	0.0	0.5
체코 공화국	0.1	0.3	0.4
칠레	0.0	0.4	0.4
독일	0.1	0.3	0.4
호주	0.2	0.2	0.4
슬로바키아	0.1	0.3	0.4
미국	0.1	0.3	0.4
포르투갈	0.0	0.4	0.4
룩셈부르크	0.4	0.0	0.4
한국	0.2	0.1	0.3
키프로스	-	0.3	0.3
일본	0.2	0.1	0.3
오스트리아	0.3	-	0.3
폴란드	0.0	0.3	0.3
에스토니아	0.0	0.3	0.3
아일랜드	0.3	-	0.3
스위스	0.1	0.1	0.2
캐나다	-	0.2	0.2
그리스	0.1	-	0.1
OECD 33개국 평균	0.2	0.4	0.6

자료: OECD(2011). Family Database (PF3.1.A).

〈부록 표 4-2〉 OECD 회원국의 아동 1인당 공적 보육비용

단위: USD

구분	만0~2세	만3~5세
핀란드	7,118	2,420
노르웨이	6,425	4,127
덴마크	6,376	6,376
스웨덴	5,928	3,627
아이슬란드	5,733	4,589
영국	3,563	4,255
프랑스	2,858	4,679
일본	2,683	1,207
벨기에	2,333	4,698
호주	1,726	5,709
이탈리아	1,558	4,626
스위스	1,129	2,515
네덜란드	1,092	5,881
체코공화국	1,073	2,550
독일	860	3,538
미국	794	4,660
한국	754	1,375
헝가리	620	3,204
뉴질랜드	476	6,001
슬로바키아	414	1,909
멕시코	23	1,684
캐나다	-	4,052
폴란드	-	1,830
포르투갈	-	3,293
OECD-24개국 평균	2,549	3,591

자료: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부록 표 4-3〉 OECD 회원국의 연령에 따른 아동 1인당 공적 보육비용(2007)

	보육지원			총계
	현금지원	시설서비스지원	조세혜택지원	
프랑스	1.33	1.66	0.72	3.71
영국	2.13	1.11	0.33	3.58
스웨덴	1.49	1.86	0.00	3.35
헝가리	2.24	1.10	-	3.34
덴마크	1.48	1.80	0.00	3.28
벨기에	1.60	0.95	0.58	3.13
룩셈부르크	2.66	0.47	0.00	3.13
뉴질랜드	2.26	0.79	0.02	3.07
노르웨이	1.36	1.45	0.10	2.91
아이슬란드	1.41	1.45	0.00	2.86
네덜란드	0.61	1.38	0.85	2.84
핀란드	1.48	1.34	0.00	2.83
호주	1.80	0.65	0.36	2.81
독일	1.09	0.75	0.88	2.71
아일랜드	2.32	0.28	0.11	2.70
오스트리아	2.15	0.45	0.04	2.64
체코공화국	1.49	0.50	0.47	2.46
슬로바키아	1.40	0.38	0.41	2.19
이스라엘	1.02	0.97	-	1.99
키프로스	1.63	0.26	-	1.89
슬로베니아	1.29	0.51	-	1.80
에스토니아	1.34	0.33	-	1.67
루마니아	1.03	0.63	-	1.66
폴란드	0.79	0.28	0.50	1.58
스페인	0.52	0.71	0.24	1.47
스위스	0.94	0.32	0.14	1.40
이탈리아	0.65	0.75	0.00	1.40
캐나다	0.80	0.16	0.42	1.38
포르투갈	0.71	0.44	0.17	1.32
일본	0.43	0.36	0.51	1.30
불가리	0.89	0.36	-	1.26
미국	0.10	0.55	0.53	1.19
리투아니아	0.84	0.35	-	1.19
라트비아	0.97	0.20	-	1.17
그리스	0.69	0.39	-	1.09
몰타	0.93	0.09	-	1.02
멕시코	0.32	0.66	0.00	0.99
칠레	0.37	0.44	-	0.81
한국	0.02	0.48	0.17	0.66
OECD 33개국 평균	1.22	0.78	0.25	2.20

자료: Social Expenditure Database(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2010 & ESSPROS, 2010.

연구보고 2012-04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
-보육유형, 보육교직원, 보육비용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2년 7월
발행인 이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05-3 93330